

국제인도법 동향 분석

[최종보고서]

참여연구진: 이운정, 박미경

2025.11.25.

국제법평론회

이 보고서는 2025년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2. 연구의 범위	2
II. 최근 3년간 국제인도법의 동향 및 이슈	4
1. 2023 년	4
2. 2024 년	69
3. 2025 년	139
III. 최근 국제인도법 동향 분석 및 평가	203
1. 새로운 기술 발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204
2. 최근 분쟁 사례에서 국제인도법의 위반	206
3. 국제인도법의 준수와 이행	209
4. ICRC 등 국제기구의 역할	213
IV. 결론	217
[참고] 부록	222

[세부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2. 연구의 범위	2
II. 최근 3년간 국제인도법의 동향 및 이슈	4
1. 2023년	4
(1)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한 유엔총회 결의	5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인권이사회 결의	8
(3) 수단에서 계속되는 무력 충돌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10
(4) 대량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및 기타 국제범죄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협약 채택 (류블랴나-헤이그 사법공조 협약)	13
(5)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16
(6)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분야 신기술 정부 전문가 그룹(GGE) 회의 보고서	18
(7)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20
(8) ICRC, 국내법 및 정책을 통한 국제인도법의 국내화에 관한 보고서 발간	23
(9) ICRC, 법집행 업무 중 무력의 사용	30
(10) ICRC, 전쟁 중 민간인 해커를 위한 8가지 규칙과 이들을 제재하기 위한 국가의 4가지 의무 발표	35
(11) ICRC, 무력 충돌 중 식량안보와 국제인도법의 역할	40
(12) 식량 무기화 금지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및 Human Rights Watch 성명	43
(13) ICRC, 국제인도법에 관한 정부전문가 회의 의장 요약보고서: 무력 충돌 시 자연환경보호	46
(14) ICRC, 자율무기 규제: 카리브해 국가들의 역할 강조	52
(15)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새로운 금지 및 제한 조치 수립을 촉구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ICRC 총재의 공동성명	55

(16) ICRC, 분쟁 중 디지털 위협에 관한 글로벌 자문위원회	58
(1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4
(18)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67
2. 2024 년	69
(1) 국내 법원의 보편관할권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판결 <i>Mustafa A.</i> 사건	70
(2) 가자지구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 - 인도적 위기, 식량 무기화 금지 관련	72
(3) 수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75
(4)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가자지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78
(5) 국제인도법에서 '무력 충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81
(6) ICRC,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로부터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와 보호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발표	85
(7)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사무총장 보고서	91
(8) 무력 충돌 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6
(9) ICRC, 무력 충돌 당사자에 대한 무기 이전 관련 법률	99
(10) ICC 말리 사태: 1심재판부 알 하산에게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판결	105
(11)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제출 및 유엔총회 결의 채택	109
(12) ICRC, 라에타티아 쿠르투아 주 유엔 ICRC 대표, 전시 환경보호는 민간인 보호의 핵심	113
(13)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책 및 실행으로 인한 법적 결과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116
(14) ICRC,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120
(15) ICRC, 제네바협약 75주년: 국제인도법에 대한 약속 재확인 및 정치적 우선순위로 설정	123
(16) ICRC, 중대한 위반 행위의 수사 및 기소: 불처벌 방지 핵심 수단	126
(17) ICC 우크라이나 사태: 전심재판부 II 푸틴의 체포 및 인도에 협조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총회에 회부	128
(18) ICC 팔레스타인 사태: 전심재판부 I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132
(19) 유엔총회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합의 결의 채택	136

3. 2025 년	139
(1) ICC, 필리핀 사태: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 ICC 구금 중	140
(2) ICRC, 법에서 (지역) 행동으로: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지역보고서 공개	142
(3) ICRC: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권고안 제출	148
(4)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총회 결의 및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151
(5) 우크라이나 임시 점령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154
(6) ICRC, 평화증진을 위하여 중재의 중요성 강조: 국제중재기구 설립 요청	157
(7)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160
(8)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 체결	163
(9) 유럽인권재판소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대 러시아 사건 (<i>Ukraine, Netherlands vs. Russia</i>)	166
(10) ICC, 우크라이나 ICC 당사국 환영 행사 개최	169
(11) ICC, 1심재판부 알프레드 예카툼과 파트리스-에두아르 응아이소나에게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판결, 각각 15 년과 12 년의 징역형 선고	173
(12) ICRC, 국제인도법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177
(13) ICRC, 특별 호소 2025 - 기후변화와 분쟁: 가장 취약한 이의 보호	180
(14) 네덜란드 법원 <i>Mustafa A.</i> 사건 항소심 선고	183
(15) ICC, 알리 무함마드 알리 압드-알-라흐만, 수단 다르푸르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판결	185
(16) ICRC, 국제인도법의 신의성실한 해석을 촉구하는 정부들의 요청을 담은 2025 년 진행 보고서 발간	187
(17) ICRC, 신의성실에 따른 민간인 보호: 1949 년 제네바협약 제 4 협약 주석서 개정	190
(18) ICRC, 유엔총회 제 80 차 회기: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제 6 위원회 성명 환영	193
(19) 자율무기체계와 국제인도법에 관한 ICRC 보고서	196
(20)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 200	

Ⅲ. 최근 국제인도법 동향 분석 및 평가	203
1. 새로운 기술 발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204
2. 최근 분쟁 사례에서 국제인도법의 위반	206
3. 국제인도법의 준수와 이행	209
4. ICRC 등 국제기구의 역할	213
Ⅳ. 결론	217
[참고] 부록	22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가 분류한 무력 충돌은 130건 이상이며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무력 충돌 건수는 15년 전 기록된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전쟁규칙은 살상을 막는 것보다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시되거나 왜곡되고 있음
 - 또한 드론,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공격이 전쟁을 지배하는 등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센서와 알고리즘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 이에 기존 국제인도법을 비롯한 국제법 적용의 문제점 및 새로운 분야에서의 법적 공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최근 3년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국제인도법 준수, AI 등 신무기의 사용, 민간인과 환경보호, 인도주의 활동가에 대한 공격, 식량안보 등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음
 - 최근 3년간 무력 충돌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의 증가,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무력 충돌 수행 방식의 등장 등 기존 국제인도법 적용의 어려움 및 법 공백 상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인도법과 그 인접 분야인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의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의 동향을 수집·정리·해제·분석하여 국제인도법의 주요 사안 및 사례, 법적 논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의 국제인도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 국제인도법 연구의 활성화

- 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등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내 연구자와 법조계의 연구 기반을 강화함
- 최신 판례, 조약, 국제기구 문서를 정리하여 법적 쟁점의 분석을 돕고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

○ 정책 및 실무적 활용

- 정부기관, 법조계, 인권단체 등이 국제인도법 관련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 및 법률 적용에 참고할 수 있음
- 국제회의 및 협약 체결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외정책 및 국제협력 전략 수립에 기여함

○ 국제인도법 관련 동향에 대한 접근성의 강화

- 유엔, 국제재판소, ICRC 등 국제기구의 최신 문서와 판례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 연구자, 정책 결정자가 국제인도법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

○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

- 국제인도법 관련 주요 문서와 사건을 정리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음

2. 연구의 범위

□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 국제인도법 관련 최신 조약 체결 현황과 해당 조약 관련 국제회의를 검토 및 분석함
- 전통적인 국제인도법뿐 아니라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국제인도법과 관련 있는 최근 3년간 조약 중 선별하여 정리·해제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함

□ 국제인도법 관련 최근 보고서 및 사건 분석

- 국제인도법 관련 ICRC 등 최근 보고서, 학술논문, 관련 법률 분석 문서를 정리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정책 이슈를 파악함
- 국제인도법 관련 주제가 쟁점이 된 최신 사건 중 국제법적으로 유의미한 사안에 대한 동향을 검토함

□ 국제재판소 판례 및 국제기구 주요 문서 동향

-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사무총장 등 주요 문서 중 국제인도법과 관련 있는 문서 정리 및 해제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인권재판소(ECHR), 국내법원의 판례 또는 권고적 의견 중 국제인도법과 관련 있는 판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ICRC의 최신 주요 활동이나 성명, 문서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함

Ⅱ. 최근 3년간 국제인도법의 동향 및 이슈

1. 2023년

1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한 유엔총회 결의

A/RES/ES-11/1 [2022.3.2.]¹⁾, A/RES/ES-11/2 [2022.3.24.]²⁾, A/RES/ES-11/6 [2023.03.02.]³⁾

1) 개요

-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관한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가 소집됨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고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총회의 긴급 특별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함⁴⁾
- 유엔총회 제11차 긴급특별회의 전체 회의
 - 안보리 2623 결의에 따라 총회 긴급 특별회의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총회 결의를 채택함
 - 2022년 3월 2일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로 채택된 ES-11/1 결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침략으로 정의하였으며, 2022년 3월 24일 회의에서는 찬성 140, 반대 5, 기권 38로 ES-11/2를 채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의 인도적 피해에 관해 결의하였음
 - 침공 1년째 되는 2023년 2월 23일 채택된 ES-11/6 결의에서는 찬성 141, 반대 7, 기권 32로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유엔 헌장의 원칙을 확인하였음

1) UN Doc. A/RES/ES-11/1(2022.03.02.), Aggression against Ukraine.

2) UN Doc. A/RES/ES-11/2(2022.03.24.),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3) UN Doc. A/RES/ES-11/6(2023.03.02.),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derlying a comprehensive,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4) UN Doc. S/RES/2623(2022.02.27.), Emergency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Ukraine.

2) 주요 내용

- 총회 결의 A/RES/ES-11/1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으로 정의함
 - 러시아의 2월 24일 특별 군사 작전 선언을 규탄하며,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으로 취득한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Aggression against Ukraine)으로 정의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으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의 즉각적 종단을 요구함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특정 지역의 지위에 대해 2월 21일 결정한 내용에 대해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통합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

- 총회 결의 A/RES/ES-11/2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의 인도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지원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인 군사 공격과 그 결과로 발생한 인도주의적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마리우폴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포위·포격·공습 및 언론인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물 위생 시스템, 의료 시설 및 이들의 운송 수단과 장비 등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
 - 외교관과 문화 유적지에 대한 공격 및 현지 공무원의 납치 등 피해 사례 발생
 - 무력 충돌 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촉구하며, 난민 보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함

- 2023년 공격 1주년을 맞아 채택된 총회 결의 A/RES/ES-11/6에서도 공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촉구하였음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결과,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난민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주권 평등과 영토 보전 원칙을 확인함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수하여야 하며,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함
 -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거주지, 학교, 병원을 포함한 민간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촉구함
 - 모든 전쟁 포로에 대한 처우가 1949년 제네바협약 제3협약(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규정 및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며, 전쟁 포로의 완전한 교환, 모든 불법 구금자의 석방, 강제 이송 및 추방된 모든 수감자와 민간인의 귀환을 요구함
 - 무력 충돌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여 민간인과 민간인의 물건을 보호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자행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적절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와 기소를 통해 보장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향후 범죄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함

3) 의의 및 평가

- 위 결의들에서 유엔 회원국 다수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행위가 침략(aggression)으로 규정되었으며, 주권 및 영토 보전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유엔 원칙에 기반한 평화의 조건을 정의한 점에 의의가 있음

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인권이사회 결의

A/HRC/RES/52/35 [2023.04.04.]⁵⁾, A/HRC/RES/52/3 [2023.04.13.]⁶⁾

1) 개요

- 2023년 4월 채택된 두 개의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지 전역에 제네바협약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및 확장, 인구이동이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함을 지적함
- 점령지에서의 인권 상황 즉, 정착촌에서의 강제 이주, 토지 전용,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재산 몰수, 폭력 행위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함

2) 주요 내용

- 두 결의안은 1967년 이래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동예루살렘 포함)와 점령된 시리아 골란고원에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정착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의 중지 및 책임 확보와 구제 방안 보장을 요구함
- A/HRC/RES/52/35
 - 점령국은 자국민을 점령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전쟁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제인도법상 점령지의 지위 변경 금지, 자원 수탈 금지 의무를 강조함
 - 점령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반복하여 확인함

5) UN Doc. A/HRC/RES/52/35(2023.4.4.), Israeli settlemen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6) UN Doc. A/HRC/RES/52/3(2023.4.13.),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justice.

- 점령지의 물자 및 자원 접근 제한은 민간인 생존권 침해 및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A/HRC/RES/52/3

- 1967년부터 계속된 이스라엘의 점령이 지체없이 종식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정착촌 건설·확장·인구이동은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49조 제6항 위반임을 명시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민간인 보호·집단적 처벌 금지·재산 몰수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의 종단을 요구함
- 가자지구 봉쇄 및 통행 제한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집단적 처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조치의 즉시 해제를 요구함

3) 의의 및 전망

- 가자지구 봉쇄 및 식량 접근 제한을 집단적 처벌(collective punishment)로 규정하고 식량·물·에너지 등 생존 필수자원의 파괴 또는 차단 행위를 명시적으로 비판한 정착촌 관련 결의인 점에 의의가 있음
- 단순히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점령 기간 발생한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끝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함

수단에서 계속되는 무력 충돌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S/RES/2676 [2023.03.08.]⁷⁾, A/HRC/RES/54/2 [2023.10.12.]⁸⁾, A/HRC/RES/S-36/1 [2023.11.03.]⁹⁾

1) 개요

- 안보리 결의 2676호는 2003년부터 시작된 수단 다르푸르 분쟁에 대응하여 수립된 제재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21년 10월의 군사 쿠데타 이후 불안정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던 수단에 대해 기존 제재 및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의를 채택함
 - 수단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의 임무를 2024년 3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23년 10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수단에서 계속되는 무력 충돌로 인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의 신속한 확립,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 중요한 기본 인프라의 복구,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 주도 정부로의 전환 재개 등을 촉구함
 - 인권이사회는 또한 수단군(Sudanese Armed Forces)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및 기타 무력 충돌 당사자 간의 2023년 4월 15일에 시작된 분쟁에서 모든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의 사실, 상황 및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확립하며, 특히 책임 조치와 피해자를 위한 사법 접근(access to justice)에 대해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단 독립진상조사단(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for Sudan)’을 긴급히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7) UN Doc. S/RES/2676(2023.03.08.)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9278th meeting.

8) UN Doc. A/HRC/RES/54/2(2023.10.12.) Responding to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risis caused by the ongoing armed conflict in the Sudan.

9) UN Doc. A/HRC/RES/S-36/1(2023.11.03.) The human rights impact of the ongoing conflict in the Sudan.

2) 주요 내용

□ 수단의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 확인

- 국가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증진 및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어 주요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단이 국제인도법 준수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 2023년 5월 11일 수단군과 신속 지원 부대가 제다 선언문(Jeddah Declaration)을 통해 수단 시민 보호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 점을 상기하며, 여기에는 원칙에 따른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포함됨을 강조함

□ 분쟁 당사자의 완전한 휴전 및 평화적 갈등 해결 원칙

- 모든 당사자가 전제 조건 없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촉구하고,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신속히 확립하고, 휴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중요한 기본 인프라를 복구하며, 포괄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함
-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수단 지역의 불안정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임을 지적함

□ 수단 독립진상조사단 설치 결정

-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전문 지식을 갖춘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단에 대한 독립진상조사단을 긴급히 설치하기로 결정함
 - 진상조사단은 2023년 4월 15일 시작된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그리고 기타 분쟁 당사자들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 학대 및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범죄의 사실, 정황, 그리고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함
 - 여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침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침해 및 학대의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여 인터뷰, 증인 증언, 법의학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 문서, 증거를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또한 수행해야 함
 - 현장 참여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와 증거를 문서화하고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가능한 경우 수단에서 인권 침해 또는 국제인도법 위반, 또는 기타 관련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기관을 파악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3) 의의 및 전망

- 안보리는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된 무력 충돌과 민간인 대상 인권침해 및 인도법 위반을 구조적 문제로 보고, 다르푸르 지역의 분쟁과 인권침해에 대응해 온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2023년 4월, 수단군(SAF)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수단 전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이 결의가 채택된 이후 수단의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안보리는 후속 결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와 전면적인 분쟁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논의하게 되었음
- 위 결의들은 수단 내부의 무력 충돌이 단순한 군사적 사안이 아니라 인권 및 인도법 차원의 위기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함을 보여줌

4

대량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및 기타 국제범죄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협약 채택 (류블라나-헤이그 사법공조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Other International Crimes¹⁰⁾ [2023.05.26.]

1) 개요

□ 협약의 목적

- 동 조약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의 효과적인 수사 및 기소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들이 사법·행정 분야에서 효과적인 다자간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약 체결 과정

- 협약에 관한 최초 논의는 2011년 벨기에,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세네갈, 몽골이 MLA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며 시작됨.¹¹⁾ 이후 80여 국가들이 동 이니셔티브의 지원국(Supporting States of the MLA-initiative)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국가들의 협상을 통해 협약문이 마련되었음
- 2023년 5월 26일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열린 MLA 외교회의 제18차 본회의에서 70개 이상의 국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68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됨
- 2024년 헤이그에서의 결정으로 2024년 2월 14일부터 각국에 서명 개방됨
- 2025년 7월 현재 주요 EU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30개국이 서명함¹²⁾

10) <https://www.gov.si/assets/ministrstva/MZEZ/projekti/MLA-pobuda/The-Ljubljana-The-Hague-MLA-Convention-English-v6.pdf> (2025.10.30. 최종방문).

11) Mutual Legal Assistance Initiative, <https://www.gov.si/en/registries/projects/mla-initiative/> (2025.10.30. 최종방문).

12) <https://treatydatabase.overheid.nl/en/Treaty/Details/013717>, (2025.10.30. 최종방문).

2) 주요 내용

□ 협약의 구성 및 적용 범위

- 동 협약은 제8부, 본문 94개 조항 및 8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동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범죄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의 세 가지 핵심 범죄에 대해 동 협약이 적용됨(제5조)
- 세 가지 핵심 범죄 외에 추가로 8개의 선택적 부속서를 채택하여, 당사국들의 부속서 채택에 따라 기타 국제범죄에 대해 협약 적용이 가능함
 - 8개 선택적 부속서에서는 대상 범죄로 전쟁범죄에 대한 로마 규약의 5개 개정안, 침략범죄, 고문 및 강제 실종을 개별 범죄로 다루고 있음
- 이 외에도 협약의 선택적 적용 규정을 두어 협약상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국들의 요청 및 동의를 통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제6조)
 - 해당 행위가 (i) 국제법상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고문 또는 강제 실종에 해당하며, (ii) 요청 당사국 국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iii) 요청받은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범죄인 경우

□ 당사국 주요 의무 및 사법공조 관련 내용

- 협약은 국제법상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국가들의 법적 협력 및 인도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협약에서는 세 가지 핵심 범죄를 당사국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세 가지 핵심 범죄에 대해 인도 또는 기소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명시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함
- 당사국 간 양자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없는 경우 동 협약이 사법공조 요청의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으며, 이 외 사법공조와 관련한 절차 내용 및 공조 거부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전망 및 평가

□ 국제범죄의 처벌 면제 및 안전지대를 통한 도피 방지

- 동 협약은 최악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기타 국제범죄의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제 정의에 있어 중요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평가됨¹³⁾

□ 실질적 국가 의무의 강화와 조약 참여의 문제

- 핵심 국제범죄의 기소 및 수사에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려는 초기 논의의 목표를 넘어 국제형사법과 관련한 중요 실질적 의무를 규정함
- 광범위한 협약 적용 문제 및 실질적 의무 강화가 국가들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¹⁴⁾

13) <https://www.icj.org/adoption-of-milestone-treaty-on-international-cooperation-set-to-advance-the-fight-against-impunity/>(2025.10.30. 최종방문).

14) Hilly Moodrick-Even Khen, Introductory note to the convention on int's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63, Issue 4, August 2024. p. 549.

5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S/2023/345 [2023.05.1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1) 개요

- 2000년 4월에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96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2023년 5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는 2022년 한해의 전 세계 무력 충돌 지역의 민간인 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문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주요 내용

- 무력 충돌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민간인 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이 확산하고 있으며 폭발성 무기(Explosive Weapons in Populated Areas, EWIPA)의 사용이 민간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폭발성 무기 사용은 또한 물, 전기, 보건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파괴하여 장기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여 민간인 피해를 확대함
 - 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및 식량 불안정으로 기아 문제와 민간인 강제 이주 문제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이 커짐
 - 병원을 비롯한 인도주의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공격 등으로 구호 활동이 어려워짐
 - 새로운 디지털 및 감시 기술 적용으로 민간인 표적화, 허위 정보 유포 등 민간인 및 인도주의 인력의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경쟁 심화가 일부 지역의 무력 충돌을 가속화하고 민간인 보호의 취약성을 심화시킴

□ 민간인 보호를 위한 사무총장의 권고 사항

- 회원국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선언을 채택, 이행할 것을 촉구함
-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기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유엔의 인권 감시 활동을 지원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 확보를 이행할 것을 강조함
-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훈련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군사 지침에 통합할 것을 요구함
-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민간인 보호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과 훈련을 보장할 것을 요청함
- 무력 충돌로 인한 식량 불안정 및 기아 해결을 위한 식량 생산 및 인도적 지원을 보호하며, 식량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3) 의의 및 평가

□ 유엔 및 회원국들의 민간인 보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책 지침 제시

-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 제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식량의 무기화와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협 문제 역시 포함하여 현재의 분쟁에 맞춘 보호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법적 책임 및 실질적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

- 민간인 보호 원칙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을 공표하고, 국제사회가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윤리적·법적 의무를 재확인함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분야 신기술 정부 전문가 그룹(GGE) 회의 보고서

CCW/GGE.1/2023/2 [2023.05.19.], Report of the 2023 session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Area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1) 개요

- 이 문서는 2023년에 두 차례(3월과 5월) 열린 CCW GGE 회의의 최종 결과와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LAWS)에 대한 규범적·운용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2) 주요 내용

- 국제인도법의 완전한 적용 확인과 인간 통제의 원칙
 -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LAWS의 잠재적 개발 및 사용에도 완전히 적용됨을 확인하였음
 - 국제인도법의 요구 사항과 원칙은 인간 운용자와 지휘관에 의한 책임 있는 지휘 통제(responsible chain of human command and control) 사슬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함
 - 국가, 무력 충돌 당사자, 개인은 LAWS의 잠재적 개발 및 사용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인간 통제는 책임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LAWS 규제를 위한 이중 접근 방식
 - 제1단계: 금지
 - 본질적으로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없거나 인간의 적절한 통제와 판단 없이 운용되는 LAWS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 제2단계: 규제
 -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며 사용될 수 있는 LAWS에 대해서도 인간의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운용적 규제 및 제한을 설정해야 함

□ LAWS 운용에서의 인간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제시

- LAWS가 교전할 수 있는 목표물 유형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 LAWS 운용의 기간, 지리적 범위 및 규모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
- 인간 개입 절차를 통해 훈련된 인간 운용자가 필요한 경우 무기 시스템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무력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
-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통제 불능 상황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파괴, 자체 비활성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조치

□ 인간 관여와 판단은 LAWS 개발 및 운용의 전 과정에 적용되어야 함

- 맥락에 적절한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LAWS 사용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통제와 판단은 LAWS의 개발 및 운용의 전 과정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3) 의의 및 평가

- 2023년 보고서는 LAWS 규제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기존 국제인도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최선의 관행을 채택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만들지에 대한 국가 간의 근본적인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도법의 완전한 적용과 LAWS의 운용에 있어 인간의 책임 있는 지휘 통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7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77/895-S/2023/363 [2023.06.05.]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1) 개요

-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무력 충돌의 영향을 국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유엔의 메커니즘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보고서임
- 무력 충돌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6가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명시한 부록을 포함하여 무력 충돌에 연루된 정부군 및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압력을 가하고, 이들이 아동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2023년 무력 충돌 상황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는 2022년 대비 21% 증가하였음, 살해 및 중대한 상해(11,649명)의 경우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2023년에만 5,301명의 아동이 사망하였음
 - 주요 위반 행위로서 인도주의적 접근 거부 2022년 대비 32% 증가한 5,205건에 달하고, 분쟁 관련 성폭력 역시 22% 증가하였음. 이 외 아동 징집 및 이용 8,655건,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 아동 납치 4,356건 등이 발생함
 - 주요 피해 지역으로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팔레스타인 사태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에 의한 피해가 추가되었음
- 무력 충돌 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무총장 권고 사항
 - 분쟁 당사자 및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준수를 요구함

- 특히 폭발성 무기 사용 중단을 강조하며
- 아동에 대한 살해 및 중대한 상해, 징집 및 이용, 납치, 성폭력 행위의 중단
-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 및 군사적 목적의 사용 중지
-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 아동의 보호, 석방 및 재통합 문제

- 무장 단체와의 연루 혐의로 억류된 아동을 석방하며, 구금은 최후 수단으로 최단 기간에만 행해져야 함을 지적함
- 무장 단체에서 분리된 아동을 민간 보호 기관에 인계하기 위한 표준절차의 채택, 이행을 촉구함
- 아동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재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분쟁 관련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특화된 의료, 심리·사회적,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모니터링 및 책임추궁 메커니즘 강화

- 유엔의 관련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MRM)¹⁵⁾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국내 및 국제 사법 제도를 통한 가해자 책임을 추궁해야 함

○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동 보호 의제를 평화유지활동, 제재, 평화협정 등 안보리의 모든 관련 논의에 통합하여야 할 것임
- 유엔 임무단 내 아동보호담당관(Child Protection Advisers)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역량과 배치를 강화해야 함

3) 의의 및 평가

- 사무총장 보고서는 유엔의 현장 활동을 통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아동 인권 침해의 규모와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 증거를 제공,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발하는데 의의가 있음
- 부속서에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행한 주체 명단이 포함되어 분쟁 당사자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15) MRM,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on Grave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분쟁 상황과 위반 양상을 반영하여 무력 충돌과 관련한 아동 보호의 국제적 전략이 현실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

Bringing IHL Home through Domestic Law and Policy: Report [2023.07.04.]

1) 개요

- ICRC가 주최한 제5차 국제인도법 관련 국가위원회 및 유사기관 국제회의(Universal Meeting)가 “국내법 및 정책을 통한 국제인도법의 국내화”라는 주제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국제인도법 관련 국가위원회 및 유사기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제¹⁷⁾에 명시된 선정주제인 ‘국제인도법의 국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정부 및 무장단체에 제공되는 군사지원 등이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의사결정권자에게 지원이 미치게 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조언하고, ② 민간인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과 상호대화를 촉진하는 것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 이번 회의에는 매일 최대 23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음
 - 참가자들은 118개 국제인도법 관련 국가위원회 구성원으로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및 국가적십자사·적신월사 대표들이었으며, 그 외에 국제인도법 국내 이행에 관여하는 5개 국제·지역기구 대표들도 참가하였음
 - 전 세계 다양한 기관과 부서의 대표들이 모여 국제인도법 이행방안을 논의한 이번 국제회의는 국제인도법의 진정한 보편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음

16) ICRC, Bringing IHL Home through Domestic Law and Policy: Report, 2023.07.04., <https://www.icrc.org/en/document/bringing-ihl-home-through-domestic-law-and-policy-report> (2025.10.30. 최종방문).

17) 의제는 본 보고서의 Annex 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일자별로 주제를 제시하면 (1) Follow-up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Bringing IHL home” and voluntary reporting(11월 29일), (2) Enhancing protection for the missing and their families in and after armed conflict(11월 30일), (3) Ensuring the application of IHL to weapons, new technologies and arms transfers(12월 1일), (4) Promoting a counter-terrorism framework coherent and consistent with IHL and the obligation to facilitate humanitarian action(12월 2일)임. ICRC, Bringing IHL Home through Domestic Law and Policy (29 NOVEMBER - 2 DECEMBER 2021), pp.44-45.

2) 주요 내용

□ 회의 보고서에는 국제인도법 관련 국가위원회의 현재 실천사례와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각국의 일반적인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¹⁸⁾

○ 보고서에 제시된 사례는 국제회의 세션 중 참가자들이 설명한 기여내용¹⁹⁾과 회의 중 또는 이후 ICRC 자문 서비스에 제출된 서면자료에서 발췌한 것임

- 콜롬비아: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역할과 콜롬비아에서의 국제인도법 이행 조정을 담당하는 ‘국제인도법 및 무력 충돌 기술그룹’(Grupo Técnico de DIH y Conflicto Armado, 2012년 설립)의 재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진행 중임. 동 기관은 대통령 직속 인권기구 관할 하에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제인도법 인식 제고 전략 수립, 군 기관 대상 교육, 학생 대상 국제인도법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뢰 제거, 병력 모집, 실종자 처리, 문화재 보호, 윤리적 저널리즘 관련 문서 작성 등 국가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타국의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와도 정보를 교환해 나갈 예정임
- 크로아티아: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Nacionalni odbor za medjunarodno humanitarno pravo)는 지난 몇 년 동안 활동정지 상태에 있다가 2021년 재가동하였음. 2021년 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탈리아: 국제인도법 연구 및 발전 위원회(Commissione per lo studio e lo sviluppo del diritto internazionale umanitario)는 2021년 9월 16일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재설립되었음. 동 위원회는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정기관 대표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학계, 국가적십자사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동 기구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국제인도법 이행 및 보급의 촉진, 관련 당국과 시민사회 단체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모잠비크: 모잠비크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 부처 간 협의체(Grupo Inter-Ministerial de Direitos Humanos e Direito Internacional Humanitário)는 동 회의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이 협의체는 정부의 최종승인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음. 새롭게 설립될 기구는 주요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존중을

18) ICRC, Bringing IHL Home through Domestic Law and Policy: Report, *op cit*, pp.9-10.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file_list/bringing_ihl_home_through_domestic_law_and_policy.web_.pdf> (2025.10.30. 최종방문).

19) 기여 내용은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선별된 실천사례’(Selected practice)라는 제목으로 해당 국가의 알파벳 순서로 정리되어 있음. *Ibid.*

확대시키는 임무를 맡을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협의체 구성원들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 충분한 재정 및 기술의 지원, 타국의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와의 교류 기회 제공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도 대응할 계획임

□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 가입 및 보급 상황의 검토

- 국제인도법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국제인도법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제4차와 제5차 국제회의 개최 기간(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동안 ICRC는 전 세계적으로 245건의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및 그 개정안) 비준 및 가입을 확인하였음

□ 국내법 및 정책 채택 검토

- 2019년 제33차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 회의 결의 제1호를 통해 채택된 “국제인도법의 국내 정책: 국제인도법의 국가적 이행강화를 위한 로드맵”(이하, 국제인도법 국내적 이행 결의안, 또는 결의안²⁰)에 따라 국가들의 상황을 확인 및 권고하고 있음
 - 결의안 제2항²¹)은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및 실질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의 적십자사(또는 유사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이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결의안 제11항²²)은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제1추가의정서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20) 3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Geneva, Switzerland 9-12 December 2019, “Bringing IHL home: A road map for better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olution”, https://rcrcconference.org/app/uploads/2019/12/33IC-R1-Bringing-IHL-home_CLEAN_ADOPTED_FINAL-171219.pdf. (2025.10.30. 최종방문).

21) 2. calls upon States to adopt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measures at the domestic level to implement IHL, and invites States to carry out,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Society where possible, an analysis of the areas requiring further domestic implementation.

22) 11. recalls the obligations of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 I to enact any legislation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penal sanctions for persons committing, or ordering to be committed, any grave breaches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 I, as applicable, and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suppression of all other acts contrary to those Conventions or to other applicable IHL obligations, and further recall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repression of serious violations of IHL.

- 제정할 것, 해당 조약이나 기타 국제인도법 의무에 반하는 다른 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결의안 제12항²³⁾은 그러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도록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고 이들을 자국법원에 회부하거나 해당 당사국이 1차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자국 법률에 따라 관련 당사국에 재판을 위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 제4차 국제회의 이후 국가들은 국제인도법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개정하고 입법초안을 준비하였음

- 제4차와 제5차 국제회의(2017-2021) 기간 동안 270건의 새로운 법률과 국내 판례가 ICRC 국가별 국제인도법 이행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음
- 바레인: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네 가지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설정하고 있는 국제범죄법(International Crimes Act)을 2018년 통과시켰음. 2020년 6월 22일 동 위원회는 1949년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보호상징 및 표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2020년 제8호 법령을 채택하였음
- 코스타리카: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Comisión Costarricense de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는 강제실종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고 강제실종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형법에 삽입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음. 보고서 발간 당시 동 법안 초안은 입법부에서 심의 중이었음

□ 국제인도법 적용, 해석 및 보급 상황 확인

○ 역시 국제인도법 국내적 이행 결의안에 따라 국가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권고하고 있음

- 결의안 제3항²⁴⁾은 국가가 민간인과 군인의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이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23) 12. also recalls the obligation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 I to search for persons alleged to have committed, or have ordered to be committed, such grave breaches, and to bring such person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before its own courts o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its own legislation, hand such persons over for trial to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provided such High Contracting Party has made out a prima facie case

24) 3. acknowledges with appreciation States' efforts and initiatives taken to disseminate IHL knowledge and promote respect for IHL, by raising awareness among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and to put in place implementation measures, and strongly encourages the intensification of such measures and initiatives

- 결의안 제7항²⁵⁾은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을 군사 관행에 완전히 통합시키고 군사 윤리에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교리,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모든 수준의 군사 계획 및 의사결정에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함. 국제회의 대표단은 지휘관들에게 국제인도법 적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군대 내에 법률고문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음
- 결의안 제8항²⁶⁾은 국가들과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특히 국내 적십자사)이 국제인도법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을 권장함. 또한 군인,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및 판사 등 국제인도법을 이행하거나 적용할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제인도법이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가능한 한 널리 보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결의안 제10항²⁷⁾은 국가들과 적십자사 등 운동 구성원들이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기 위해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이며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국제인도법 존중을 촉진할 것을 권장함. 또한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인식하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견해를 고려할 것을 촉구함

○ 이번 보고서에서는 네팔의 국제인도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음

- 네팔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민간 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핸드북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판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네팔의 핸드북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제공하고 네팔에서 채택된 이행 조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음

25) 7. strongly encourages States to make every effort to further integrate IHL into military doctrine,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to all levels of military planning and decision-making, thereby ensuring that IHL is fully integrated into military practice and reflected in military ethos, and recalls the importance of the availability within States' armed forces of legal advisers to advise commanders, at the appropriate level, on the application of IHL

26) 8. encourages States and 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in particular National Societies, to take concrete, and where appropriate, coordinated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partnerships wi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where suitable, to disseminate IHL effectivel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called upon to implement or apply IHL, such as military personnel, civil servants, parliamentarians, prosecutors and judges, while continuing to disseminate IHL at the domestic level as widely as possible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o youth

27) 10. encourages States and the components of the Movement, while continuing to rely on proven effective methods of dissemination of IHL, to explore new innovative and appropriate methods to promote respect for IHL, including using digital and other means, such as video games, and where possible to consider therein the voices of people affected by armed conflict and their perception of IHL;

- 특히 핸드북이 개발될 당시 네팔에는 국제인도법을 이행하는 국내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네팔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는 새롭게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헌법에 무력 충돌 시 인권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핸드북을 만들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 외에도 국제인도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 실종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인도법에 부합되도록 국내법 및 제도가 변경되어야 할 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국제인도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연구가 유용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가 그 연구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또한 보호 대상자의 관리, 실종 방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통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내법과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국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무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무기 이전 및 첨단 신기술에 대해 국가위원회가 정부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 이루어졌음. 기존 무기에 대하여 무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무기와 관련하여서도 국제적 의무가 적용되도록 의회 참여 및 입법 초안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됨
- 또한 대테러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인도주의 구호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대테러 법률에 인도주의 면제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이 방향으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전망 및 평가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인도법 이행, 실종자 문제, 무기 및 대테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모든 논의의 공통된 핵심은 ‘국제인도법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및 유사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제33차 국제회의 결의안

(국제인도법 국내적 이행 결의안, 33IC/19/R1)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음

□ 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이행 결의안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의 국내화를 위해서는 입법, 행정 및 실질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인도법 및 관련 문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소 85건의 국내법이 제정되었다고 함
 - 핀란드는 국가정보국 설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크로아티아, 레바논, 페루 등은 실종자 문제를 다루고 실종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제정했으며, 짐바브웨는 사망자 및 실종자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국제인도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적 시스템의 채택은 여러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범국가적인 정책의 수립 등 실질적인 조치도 뒷받침되어야 함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인도법의 홍보 및 보급 노력도 요구됨

- 국가들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국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네팔은 국회의원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고, 에콰도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인도법 강좌를 개설했다고 하였으며, 쿠웨이트는 아랍 국가들이 채택한 지역계획 이행을 위하여 행동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하였음

□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특히 국제인도법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한 검토 내용은 2025년 개최될 차기 국제회의에 반영될 예정임

The use of force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2023.07.10]

1) 개요

- 국제인도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력 충돌이나 폭력 사태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집행 업무 중 무력사용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
- 법집행 업무 중 무력사용은 주로 경찰과 군대 등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력사용은 주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이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무원이 과도하게 임의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함

2) 주요 내용

- 무력사용(use of force)의 정의
 - 공공의 안전, 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작전, 즉, 법집행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 공무원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무력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무력사용’(use of force)이라는 용어는 국내법을 통하여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가해지는 모든 제약을 의미함
 - 손이나 수갑과 같은 구속장치를 이용한 신체적 제지부터 곤봉, 최루가스, 전기충격기(테이저), 고무탄과 같은 비치명적 무기, 그리고 총기 및 기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력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수단은 넓고 다양함

28) ICRC, The use of force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2023.07.10., <https://www.icrc.org/en/document/use-force-law-enforcement-operations> (2025.10.30. 최종방문).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file_list/the_use_of_force_in_law_enforcement_operations.pdf (2025.10.30. 최종방문).

- 무력은 다른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
 - 이 기준은 무력사용 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특히 치명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력사용의 경우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법 집행 업무에서 무력사용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

- 법 집행 업무에서의 무력 사용은 주로 국제인권법에 의해 규율되며, 이는 평시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 시에도 항상 적용됨
 - 법 집행 업무에서 무력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이며 이 권리는 침해될 수 없음
 - 많은 인권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자의적'인 생명 박탈로, 즉 생명권에 관한 국제규칙 및 기준이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함부로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됨
 - 이는 국가 공무원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유럽인권협약은 무력 사용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고 생명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 조약으로 제2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a)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b) 합법적인 체포를 집행하거나 합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c)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취한 조치에만 무력사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들에게 대한 무력사용의 결과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권, 신체의 불가침성,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 등과 같은 다른 권리와 금지사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연성법(soft law)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권기구들이 특정 사례에서의 무력사용이 자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것이 '법집행 업무에서 무력사용에 대한 추가지침을 제공하는 1979년 유엔 법집행 행동강령'(The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CCLEO)과 '1990년 유엔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BPUFF)으로 BPUFF 원칙 8은 "(내부 정치 불안정이나 기타 공공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력 충돌 중 적대행위 수행과는 별개로 또는 병행하여 법 집행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국제인도법 규정이 적용되기도 함
 -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은 법집행 업무에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인도법은 법집행

업무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1907년 헤이그협약 IV 제43조, 1949년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 제42조)

- 국내 법집행 업무 중 무력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죄형법정주의(principle of legality)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 법체계에서도 존재함
 - 국제 의무와 기준을 준수하는 한 안보와 관련된 국내 법률, 군사 및 경찰 매뉴얼, 교전규칙, 표준작전절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

□ 법집행 업무에서 무력사용과 관련한 원칙

- 적법성(Legality, BPUFF 원칙 1)
 - 국가는 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함
 - 법적 및 행정 체계는 무력사용과 관련된 모든 상황(누가, 언제, 어떻게)을 규제해야 함
- 필요성(Necessity, CCLEO 제3조)
 - 법집행 공무원은 엄격히 필요할 때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 법집행 업무에서 무력사용은 정당한 법집행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여야 하며, 이는 법집행 공무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화적 분쟁 해결, 설득, 협상, 중재와 같은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무력사용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총기 사용은 생명이나 신체의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덜 폭력적인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허용됨
 - 무력사용 시에는 정당한 법집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최소한의 정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무력사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예: 구두경고, 무력과시, 비치명적 무력, 치명적 무력)
 - 다양한 무기 선택의 가능성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행정당국은 사망 및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비례성(Proportionality, BPUFF 원칙 5(a)).
 - 사용되는 무력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는 범죄의 중대성과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에 엄격히 비례해야 함
 - 사용되는 무력의 유형과 수준,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대상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대상이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성과 달성해야 할 법집행 목적에 비추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함(예상되는 피해, 즉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무고한 행인에게 미칠 피해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질 피해를 방지하는 이익 및 법 집행 목적의 중요성 간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함)

○ 예방조치(Precaution, 작전 계획 및 통제 단계에 관한 조치)

- 법집행 업무 중에는 무력사용을 가능한 한 피하고 대중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함(BPUFF 원칙 3)
- 국가 공무원은 가능한 피해와 부상을 최대한 제한하고 인명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BPUFF 원칙 5(b)).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훈련, 무기 및 장비가 제공되어야 함(BPUFF 원칙 2)

○ 책임성(Accountability, BPUFF 원칙 7, 22-24).

-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신속히 보고되어야 함
-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무력사용은 적절히 조사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또는 징계조치를 받아야 함
- 상급 지휘관과 그 지휘 하에 있는 국가 공무원 모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법집행 업무에서 총기 및 기타 치명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

○ BPUFF 원칙 9에 따르면 총기 사용은 ① 임박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의 위협에 대한 자기방어 또는 타인방어, ②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실행 방지, ③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고 권위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사람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와 같은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치명적 수단이 불충분할 경우에만 허용됨

- 어떠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함

3) 전망 및 평가

□ 법집행 업무 중 무력의 사용이 국제규칙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들은 이하의 원칙들을 고려해야 함

○ 무력사용에 앞선 예방조치

- 국제규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무력사용에 관한 법적·행정적 시스템 제정(BPUFF 원칙 1)
- 경찰윤리, 인권, 무력사용 대안 교육을 포함하여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고 교육 및 역량 강화(BPUFF 원칙 19-21).
- 차별화된 무력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 및 탄약뿐만 아니라 자기방어 장비와 화기 대체

무기를 포함한 적절한 장비의 제공(BPUFF 원칙 2).

○ 무력사용 이후 조치

- 부상자 또는 무력사용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가 공무원에게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의 제공(BPUFF 원칙 5(c))
- 부상자 또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통지(BPUFF 원칙 5(d)).
- 화기 사용에 관한 보고 체계 마련(BPUFF 원칙 11(f)).
-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무력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보고 및 조사 (BPUFF 원칙 22-24). 이러한 조사는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및/또는 그 가족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피해자들은 구제 및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특정 사건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절차 등 검토(BPUFF 원칙 20)

□ 법집행 업무 중 무력사용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주제로 경찰이나 기타 법집행 기관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과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음

- 경찰 등 무력사용 권한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특히 형사 및 징계 절차, 독립적인 외부 감독, 제도적 교훈 도출 과정을 포괄하는 효과적인 책임성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며, 상급자 및 지휘 계통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8 Rules for Hackers in War, and 4 Obligations of States to Restrain Them [2023.08.02.]

1) 개요

- ICR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사이버 갱단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전례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쟁에 참여하는 민간 해커들을 위한 교전수칙을 처음으로 발표하였음
 -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 해커들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려가 됨
 - 민간물자를 직접적으로 표적으로 삼거나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간인들에게 해를 끼침
 - 민간인 해커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군사 작전에 노출시킬 위험이 높음
 - 민간인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민간인과 전투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므로 민간인에 대한 피해 위험이 결국 증가하게 됨. 특히, 국제인도법의 핵심인 구별의 원칙이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ICRC는 민간인 해커는 활동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무력 충돌 시에는 국제인도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력 충돌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비국가 무장단체, 민간 해커 포함)가 준수해야 할 8가지 규칙을 발표하였음
 - 이하의 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아닌 기존의 법적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임³⁰⁾

29) ICRC, Eight rules for “civilian hackers” during war, and four obligations for states to restrain in them, 2023.08.02., <https://www.icrc.org/en/article/8-rules-civilian-hackers-during-war-and-4-obligations-states-restrain-them> (2025.10.30. 최종방문); Tilman Rodenhäuser, Mauro Vignati, “8 rules for “civilian hackers” during war, and 4 obligations for states to restrain them”, *Humanitarian Law & Policy*, 2023.10.04., <https://blogs.icrc.org/law-and-policy/2023/10/04/8-rules-civilian-hackers-war-4-obligations-states-restrain-them/> (2025.10.30. 최종방문).

30) 특히 ICRC는 민간인 해커는 사이버 또는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사이버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Ibid.*

2) 주요 내용

□ 무력 충돌 상황에서 활동하는 민간인 해커를 위한 8가지 규칙

- 규칙 1: 민간 대상물에 사이버 공격³¹⁾을 가해서는 안 됨
 - 민간물자란 군사 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 인프라, 공공 서비스, 기업, 사유재산,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민간 데이터도 포함됨
 - 군사 목표물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군사 목표물은 주로 교전국 군대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를 의미함
- 규칙 2: 자동으로 확산되어 군사 목표물과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손상시키는 악성코드나 기타 도구,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자동으로 확산·유출되어 군사 목표물과 민간물자를 구분없이 손상시키는 악성코드는 사용해서는 안 됨
- 규칙 3: 군사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획할 때는 작전이 민간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군대가 사용하는 전력 또는 철도 서비스를 교란하려는 경우, 작전이 민간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함
 -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여 작전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 군사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획할 때는 작전이 민간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간인 피해가 과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격을 중단해야 함
 - 운영 체제에 접근했으나 작전의 가능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민간인 피해가 과도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공격을 중단해야 함
- 규칙 4: 의료 및 인도주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
 - 병원이나 인도주의 구호 단체는 절대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됨
- 규칙 5: 인구의 생존에 필수적이거나 위험을 방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지 말 것
 - 국제인도법에서 위험한 힘을 지닌 대상으로는 ‘댐, 제방 및 원자력 발전소’가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화학공장 및 유사한 시설도 동일한 위험 요소가 있음
 -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대상물에는 식수 시설이나 관개 시스템 등이 포함됨

31) 국제인도법 및 사이버 작전의 맥락에서 공격(attack)의 개념은 대상(인프라 및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데이터 포함)의 손상, 기능 마비 또는 파괴, 또는 인명피해나 사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작전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작전은 포함되지 않음

- 규칙 6: 민간인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폭력 위협을 가하지 말 것
 - 주로 민간인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고안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을 해킹하는 행위는 금지됨
 - 또한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여 도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너무 생생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도 불법임
- 규칙 7: 국제인도법 위반을 선동하지 말 것
 - 민간인이나 민간물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또는 기타 작전을 타인이 수행하도록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 예를 들어 민간 기관에 대한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신 채널에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공유해서는 안 됨
- 규칙 8: 적군이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동 규칙을 준수할 것
 - 보복이나 상호주의는 국제인도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민간인 해커 통제를 위한 국가의 4가지 의무

- 국가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민간인 해커를 장려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준수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의무 1: 민간인 해커가 국가의 지시, 통제 또는 감독 하에 행동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행위가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국제인도법 포함)와 상충될 경우에는 그 국가가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함(ILC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 제8조)
 - 국가가 민간인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고 특정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국가는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함(동 초안 제8조 제2항)
- 의무 2: 국가는 민간인이나 단체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됨
 - 구체적으로 국가 기관(군사, 정보기관 또는 기타 정부 행위자)이 민간물자를 대상으로 민간인이나 단체가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채널이나 앱의 종류는 무관함
- 의무 3: 국가는 자국 영토 내 민간인 해커에 의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방지할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를 가짐
 - 무력 충돌과 관련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지 않도록 민간인 해커에게 요구하는 공식입장의 표명, 사이버 작전 수행 시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 위반 시 국내법에 따른 처벌 등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의무 4: 국가는 전쟁범죄를 기소하고 기타 국제인도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국가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을 범죄로 규정하는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적, 징계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국제인도법 위반을 모두 중단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3) 전망 및 평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발표된 ICRC의 ‘민간인 해커에 대한 규칙’은 사이버 공간 역시 ‘법’이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민간인 해커 역시 활동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은 해킹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군사자산을 대상으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음
 - 그러나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칙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반은 전쟁범죄를 구성하여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기소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합법적인 군사표적이 되는 경우 해커들의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임
-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쟁에 참여하는 누구라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음
- 민간인은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참여기간 동안에만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군사적 목표물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 수행은 이러한 직접적인 ‘적대행위 참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해커는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음
 - 군대 구성원(사이버 작전 요원 포함)은 합법적 전쟁행위(군사시설 공격 등)에 대한 면책권을 향유하며, 포로로 잡힐 경우 ‘전쟁포로’ 지위를 얻을 수 있지만, 민간인 해커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1949년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85조)
- 그러므로 무력 충돌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해커는 동 규칙을 준수해야 함

- 민간인 해커가 포로로 잡힐 경우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해당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간인 해커는 ICRC의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동 규칙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 IT 군대(IT Army of Ukraine) 대변인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반면, 러시아 킬넷(killnet)의 한 관계자는 “왜 적십자 말을 들어야 하나?”고 반문하는 등 사이버 작전 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음³²⁾

-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준수가 민간인 해커 자신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내용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2) BBC, Joe Tid, “Rules of engagement issued to hacktivists after chaos”, 2023.10.04., <https://www.bbc.com/news/technology-66998064> (2025.10.30. 최종방문).

11 ICRC, 무력 충돌 중 식량안보와 국제인도법의 역할³³⁾

Food security in times of armed conflict: What you need to know [2023.08.03.]

1) 개요

- 음식과 식량 없이 인간은 오래 생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이 진행되는 동안 전투 당사자들의 전쟁 수행 방식과 식량 시스템의 붕괴 및 악화로 인하여 식량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음
- ICRC 법률전문가 애비 자이스(Abby Zeith)는 무력 충돌 중 식량안보라는 주제에 관하여 ① 무력 충돌이 민간인의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② 국제인도법이 식량 불안정과 기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함

2) 주요 내용

- 민간인의 식량과 물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무력 충돌
 - 식량 불안정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무력 충돌이 가장 큰 원인임
 - 2023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으로 인하여 1억 1,700만 명이 급성 식량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함(그다음 원인으로 경제충격(8,400만 명)과 기상이변(5,600만 명 이상))
 - 우물 오염이나 농작물을 불태우는 등의 전쟁의 일반적인 관행 외에도, 전쟁은 무역 및 이동 경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과 가축의 강제이주를 초래하며, 중요한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히는 등 간접적으로도 식량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 전투 당사자들이 약탈, 포위 또는 봉쇄를 사용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지연하거나 차단할

33) ICRC, Food security in times of armed conflict: What you need to know, 2023.08.03., <https://www.icrc.org/en/document/food-security-in-armed-conflict-what-you-need-know> (2025.10.30. 최종방문).

때 고통은 더욱 심화되며, 전쟁 잔해물은 경작지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전투가 끝난 후에도 농업과 무역에 큰 피해를 미치고 있음

□ 식량 불안정과 기근 예방을 위한 국제인도법의 역할

-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의 비포괄적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물자들은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고 있음
 - 식량, 농경지, 농작물, 가축, 식수 시설 및 공급, 관개 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물자들을 공격, 파괴, 제거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음
- 분쟁 당사자들이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적대행위에 관한 규칙들을 좀 더 존중한다면 무력 충돌이 전 세계 식량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민간물자는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차별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전쟁에서의 사용도 금지됨(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예방의 원칙)
 - 국제인도법 조약에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격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토지·인프라 및 시장이나 발전소 등 식량과 물의 생산, 유통, 공급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타 물자들도 보호를 받음
 - 또한 국제인도법은 식량안보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의 사용(독극물,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의 금지, 제초제 무기 사용 제한, 대인지뢰, 클러스터 탄, 핵무기)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3) 전망 및 평가

□ 무력 충돌 동안 식량안보는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과제 중 하나임

- 무력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정과 기근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쟁과 폭력은 식량안보의 네 가지 핵심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무력 충돌 당사국은 자신이 통제하는 인구의 기본적인 필요, 즉 적절한 음식과 물 등의 공급을 보장할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됨

- 국가나 지역사회가 의존하는 식량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식량 불안정 및 영양실조가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식량안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인도법은 특정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국이 실제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중립적인 인도주의 단체들이 인도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에 대한 동의를 임의로 또는 불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일단 동의를 하면 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통제 권리를 전제로 인도적 구호물자가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통행 및 통과를 허용하고 지원해야 함

S/PRST/2023/4,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023.08.03.], HRW Israel: Starvation Used as Weapon of War in Gaza
[2023.12.18.]

1) 개요

- 2023년 8월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는 전 세계 무력 충돌 지역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력 충돌과 기아 사이의 악순환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2023년 10월 7일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와 관련하여 민간인의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Human Rights Watch의 성명이 발표됨

2) 주요 내용

- 식량 불안정의 심각성 및 원인으로서의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
 -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증가하는 무력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무력 충돌과 식량 불안정 사이의 악순환을 끊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또한 2022년 무력 충돌이 19개국 및 지역에서 약 1억 1,700만 명의 심각한 급성 식량 불안정 상태를 초래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주목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사례로 들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이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농지에 지뢰가 매설되고, 수자원 시스템이 파괴되었으며, 곡물 저장시설이 명시적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언급함
- 식량 무기화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함
 - 국제인도법에서 금지된 민간인의 기아(starvation of civilians)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인도적 지원 접근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무력 충돌 상황에서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구호물자 공급 및 접근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함³⁴⁾

□ 분쟁 당사자의 국제인도법 준수 및 접근 보장, 지역 기구의 역할 강조

- 모든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인도적 지원 인력의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하고 촉진할 것을 요구하며, 인도적 지원 인력과 물품이 공격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인도적 시설이 약탈되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 식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 구축, 기후변화의 영향 해결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아와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을 예방하는 데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함

□ Human Rights Watch 성명³⁵⁾

- HRW는 2023년 12월 18일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인의 물·식량·연료 접근을 고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의 기아라는 방식의 전쟁수단으로서 국제인도법 및 ICC 로마규정상의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이스라엘이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 식량, 연료 등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공급을 방해하였으며, 민간인의 식량 생산 및 분배 기반 시설을 파괴하였음을 확인함
- 구호품 운송에 필요한 연료와 전기 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구호품 트럭의 접근을 엄격 제한하여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고의로 방해하였음을 지적함
- 고위 관료들의 공개 성명을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조치가 단순히 군사 작전의 부수적 결과가 아닌, 민간인들을 굶주리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고 분석함

34) UN Doc. S/PRST/2023/4, p.3. 관련 규정으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식량, 농작물, 가축 등)를 고의로 공격하거나 파괴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4조 제1항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기아(민간인에 대한 식량·생존물자 박탈)를 금지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14조 그리고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의 고의적인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한 ICC 로마규정 제8조 제2항(b)(25)을 들 수 있음.

35) Israel: Starvation Used as Weapon of War in Gaza, 2023.12.18., <https://www.hrw.org/news/2023/12/18/israel-starvation-used-weapon-war-gaza> (2025.10.30. 최종방문).

3) 의의 및 평가

- 위 성명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성격을 인도주의의 실패 문제에서 잠재적 전쟁범죄 문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HRW의 성명은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규모 위반행위의 의도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지휘관 등의 개인 형사책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성명은 안보리, ICJ, ICC 등 국제기구들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ICJ의 잠정 조치 명령 등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Chair's Summary Report of State Expert Meeting on IHL: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 [2023.08.08]

1) 개요

- 무력 충돌은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분쟁으로 인한 환경적 결과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계에 위협이 됨
 - 2023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스위스와 ICRC는 무력 충돌 시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의 국내 이행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 전문가들의 온라인 회의를 주최하였음
 - 이번 정부전문가 회의에는 120개국 이상에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약 380명의 전문가들과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국가 간 교류를 지원하고 기술적 질문에 답변하였음

2) 주요 내용

- 이번 회의에서는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 규칙이나 그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무력 충돌 시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련된 도전 과제 및 관행을 이하의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뉘어 구별하고 있음
 - 개별 국가의 관행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규칙의 국내 차원에서의 보급, 교육 및

36) ICRC, Chair's Summary Report of State Expert Meeting on IHL: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 2023.08.08., <https://www.icrc.org/en/document/chairs-summary-report-state-expert-meeting-ihl-protecting-natural-environment-armed> (2025.10.30. 최종방문);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_new/file_list/chair_s-summary_en_0.pdf (2025.10.30. 최종방문).

통합(Disseminating, training and integrating at the national level IHL rul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에 대한 논의

- 무력 충돌 개시 이전에 취해졌거나 취해질 수 있는 조치들과 미래의 분쟁에서 자연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국제인도법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군대에서 제대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무력 충돌 시 환경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훈련받고 배치된 인력 및 부대가 군대 내에 부족하다는 점, 셋째, 자연환경에 관한 국제인도법 의무가 국내 체계에 통합될 때 때로는 약하거나 모호하게 반영된다는 점, 넷째, 특정 국가들이 직면한 맥락별 환경 위협의 규모와 복잡성에 관한 것임
- 정부대표단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국제인도법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칙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내재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국제인도법 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관련된 특정 국제인도법 의무의 내용이나 적용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정부대표단들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이 개발했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관행을 공유하였음
 - 자연환경을 다루는 국제인도법을 군사 교리, 교육 및 훈련에 통합하고, 군대에 효과적으로 교육, 훈련 및 연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예방이 보상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을 상기)
 - 군대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광범위한 환경 지침, 훈련, 정책 및 관행이 강조되었으나, 자연환경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규정과의 관계 또는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음
 - 다만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맞춤형’이어야 하며 흥미를 유발해야 하며, 청중의 문화적 정체성, 지역 규범 및 가치를 적절히 고려하여 관련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 자연환경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규정이 지속적이고 상세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훈련을 조정하고 군사 작전이 환경에 미치는 즉각적 및 장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환경 영향의 중요성을 지휘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훈련은 이론과 실습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현장 연습도 포함되어야 함

- 자연환경 보호 규정을 포함한 국제인도법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되는 자원으로는 학계 및 제3자와 함께하는 강좌,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모듈, 매뉴얼과 안내서 등 도구상자,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인터랙티브 비디오 게임, 사례 연구 분석 및 실습 시뮬레이션 등이 제시되었음
- 그리고 국제인도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준수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별 또는 공동 군사 연습을 조직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하여 일부 정부대표단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 규정에 대해 훈련을 받아서 군 지휘관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고문과 같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국방부 및 군대 내 환경 책임을 담당할 인력 또는 부대 배치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음
- 또한 자연환경 보호 규정을 포함한 국제인도법을 국가 법률 및 행정 체계에 통합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 **군사 작전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작전상의 함의(Assessing the effects of military operations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operations)에 대한 시사점 평가**

- 각 정부대표단은 무력 충돌에서의 군사 작전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며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환경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기후변화 역시 군대가 인지해야 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인이라는 언급이 있었음
- 정부대표단들은 군사 작전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기 위해 군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 조치들을 공유하였음
 - 정부대표단들은 환경피해의 특성을 다른 유형의 분쟁 관련 피해와 대략 네 가지 방식으로 구별하였음. 첫째, 환경피해는 민간인 사망, 부상 또는 건물 파괴처럼 눈에 즉시 띄지 않을 수 있고 그 영향 역시 시간이 지나야 느껴지거나 평가를 위해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환경피해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건이나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지휘관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비례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 셋째, 평시에는 환경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 연구가 일반적이지만, 적대행위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준선이 덜 확보되어 있어 다른 정보원을 통해 피해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넷째, 일부 대표단은 지휘관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민간인의 건강이나 생존에 의존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함

- 충분한 국가 규제, 자원, 기술 또는 도구의 부족에 따른 문제도 지적됨
 - 예를 들어, 군사 작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일부 대표단은 군대 내에 환경보호 책임을 지는 전문인력이 있다고 강조한 반면, 다른 대표단은 이러한 인력의 부재가 환경에의 영향 감소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음
-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제인도법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작전계획 시 환경보호 규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됨
 - 작전 기간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점도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환경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평시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환경영향평가가 군사 작전에 항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 군사 작전을 계획하는 인력과 환경보호 전문인력 간의 분리 문제도 있음
 - 작전 계획에 참여하는 인력이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규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환경문제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군사 작전 계획이 환경보호 전문인력이나 부서와 항상 조율되지 않으며,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됨
- 마지막으로, 분쟁 관련 환경피해 복구와 관련된 어려움도 강조되었음
 - 적대행위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이나 분쟁 관련 산림파괴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화 작업의 함의가 방대하고 장기적이며 시간에 민감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

□ **특정 환경적 중요성 또는 취약성을 지닌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지정(Identifying and designating areas of particular environmental importance or fragility as demilitarized zones)하는 것이 필요함**

- 특정 환경적 중요성 또는 취약성을 지닌 지역을 비무장지대 또는 무력 충돌 시 기타 보호 구역으로 식별하고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대표단들은 주장하였음
 - 이러한 지역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중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자국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민간인 보호에만 국한하여 환경을 배제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음

- 동 주제에 대해서는 비무장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지역의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과 관련된 도전과 실천, 그리고 비무장화 조치를 넘어 무력 충돌 시 관련 지역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이루어졌음
-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정부대표단들은 이하와 같은 도전 과제를 공유하였음
 - 정부대표단들은 자국 영토 내에 다양한 종류와 다수의 환경보호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비무장화 후보 지역을 선정하거나 군대가 다른 방식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복잡한 목록 작성 또는 우선순위 지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일부 대표단은 이러한 환경지역 중 일부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력 충돌 시 이들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결정은 공동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 일부 대표단은 특정 환경적 중요성 또는 취약성을 지닌 지역을 식별하는 것 보다 군대가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거나, 무력 충돌 시 이러한 구역이 군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성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분쟁지역과 생물다양성 보호 중요지역이 겹치는 경향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 일부 국가들은 무력 충돌 관련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자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무력 충돌과 관련된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위원회(ILC) 원칙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 또한 일부 정부대표단은 비무장화가 환경보호의 수단으로서 유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무력 충돌 시 이러한 지역의 보호를 위한 국가 간 상호 합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국가별 보호지역 유형과 수의 다양성, 그리고 상당한 영토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언급되기도 하였고, 또한 국가들이 파트너 군대나 연합군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구역의 비무장화 합의가 해당 구역을 보호해야 하는 파트너 군대나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3) 전망 및 평가

- 이번 회의를 주최한 스위스와 ICRC는 국가 간 도전과제 및 관행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 회의가 불러일으킨 관심과 무력 충돌 시 환경보호에 대한 대표단들의 헌신이 해당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강조하였음

- 정부대표단들은 군사행동으로 인한 직접적 및 간접적 환경피해를 강조하며 이러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군대에서의 불충분한 훈련,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인도법의 국내법 통합의 모호성, 그리고 상황별 환경위험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이러한 가운데 논의 내용 중 평시 체계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주요 구역을 식별하고,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지역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 설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이러한 조치는 아직 직접적인 국제인도법상 의무는 아니며 자발적인 것이지만,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됨

14 ICRC, 자율무기 규제: 카리브해 국가들의 역할 강조³⁷⁾

Regulating autonomous weapons: “The Caribbean Stat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2023.10.03]

1) 개요

- 2023년 9월 5-6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개최된 ‘CARICOM 회의: 자율무기의 인도적 영향’에서 ICRC 미주지역 국장 소피 오르(Sophie Orr)가 성명을 발표함
 - 이번 회의는 CARICOM 범죄 및 안보 이행기구(IMPACS), 트리니다드 토바고 법무장관실, 소카 가카이 인터내셔널, 스톱킬러 로봇(Stop Killer Robots)이 주최하였음
 - 소피 오르 국장은 자율무기가 제기하는 인도적·법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주 지역에서 발표한 벨렌 공동성명, 미주기구(OAS) 총회 결의안, 중앙아메리카 통합체(SICA) 공동성명, 중앙아메리카 의회(PARLACEN) 결의안 등의 발전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헌신과 리더십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자율무기 제한과 관련하여 카리브해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서 점점 더 자율적인 기능을 갖춘 무기 체계들이 배치되고 있음
 - 오늘날 원격조종 무기(공중무장드론, 지상무장로봇, 해상무장선박이나 잠수함 등)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군사교리의 간단한 변경으로 미래의 자율무기가 될 수 있음
 - ICRC는 역사적으로 우려되는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인도법 규칙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전투원과 민간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특정무기에 대하여 국가들과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관련 분야의 법률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음(예를 들어 핵무기,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실명 레이저 무기, 대인지뢰, 전쟁 잔해 폭발물, 집속탄 등)

37) ICRC, Regulating autonomous weapons: “The Caribbean Stat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2023.10.03., <https://www.icrc.org/en/document/regulating-autonomous-weapons-caribbean-states-have-important-role-play> (2025.10.30. 최종방문).

2) 주요 내용

- 무기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ICRC의 작업은 ‘효과 기반’ 접근법(‘effects-based’ approach)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이는 무기의 실질적인 사용 효과, 또는 아직 배치되지 않은 신형무기의 예측가능한 효과를 민간인과 전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한다는 의미로, 법적 준수를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위험과 윤리적 도전을 초래하는 특정 무기를 발견했을 때 우려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자율무기의 무제한 사용은 무력사용에 대한 통제력 상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는 민간인과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투원들이 국제인도법 규칙과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무기의 효과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때 민간인에게 초래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국제사회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음
 - CARICOM 회원국 전역에서 만장일치로 비준된 대인지뢰금지협약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재래식무기에 대한 금지와 제한은 주요 인도주의적 동기 중 하나가 되었음

- 자율 무기는 “인간 생명에 관한 의식적인 결정을 기계의 계산으로 대체하는 세상을 용인해야 할지”, “스스로 발사되는 무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작성하여 작동하는 무기의 배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 우리의 가치와 인류애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므로 무력 충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율 무기는 더 이상 학문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며, 오늘날 긴급한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율무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칙 협상을 진행하는 등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ICRC는 설명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자율무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을 직접 겨냥하도록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자율무기를 금지하는 것임
 - 윤리적으로 대인 자율무기는 용납될 수 없음
 - 이는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간적 주체성과 그 무력이 사용되는 대상의 인간 존엄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임

-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전투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3) 전망 및 평가

- 자율무기에 대한 법적·윤리적 금지 조치는 자율무기의 설계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미사일, 전차, 군용 항공기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군사 목표물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민간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리적 범위, 사용기간 및 규모에 제한을 두고 효과적인 감독과 신속한 개입 및 비활성화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현재 자율무기의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고 실질적인 국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원칙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존재임
 - 따라서 자율무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협상하고 채택하기 위한 강력한 지역선언 등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새로운 금지 및 제한 조치 수립을 촉구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ICRC 총재의 공동성명

Joint call by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for States to establish new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Autonomous Weapon Systems³⁸⁾
[2023.10.05.]

1) 개요

- 유엔 사무총장과 ICRC 총재의 2023년 10월 공동성명은 AWS가 제기하는 인도주의적 위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유엔 내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됨
- 2026년까지 AWS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을 협상 및 마무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시한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자율무기체계(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됨
- AWS 기술 발전과 예측 불가능성 문제
 -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기계학습(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정교한

38) Note to Correspondents: Joint call by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for States to establish new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https://www.un.org/sg/en/content/sg/note-correspondents/2023-10-05/note-correspondents-joint-call-the-united-nations-secretary-general-and-the-president-of-the-international-committee-of-the-red-cross-for-states-establish> (2023.10.30. 최종방문).

<https://www.icrc.org/en/document/joint-call-un-and-icrc-establish-prohibitions-and-restrictions-autonomous-weapons-systems> (2023.10.30. 최종방문).

신기술이 AWS에 통합되면서 위험성이 증폭됨

-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제어되는 AWS는 그 효과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

□ AWS의 개발 및 확산으로 인해 윤리적·법적·안보적 우려 등이 제기됨

-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기계로 이전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경계선’으로 간주되며,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 유지가 필수적임
- 인간의 개입 없이 생명을 앗아갈 권한을 가진 기계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기존 국제인도법의 적용 명확화 및 강화가 필요함
- AWS가 군대와 민간인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을 조성함으로써,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분쟁 개입의 문턱을 낮추어 글로벌 불안정 및 국제적 긴장 고조에 기여할 위험이 있음

□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의 촉구

- 유엔과 ICRC는 AWS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 효과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AWS, 즉 인간의 개입 없이 생명을 앗아갈 권한과 재량권을 가진 기계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 금지 대상 이외의 AWS에 대해서도 사용 장소, 시기, 기간 제한, 타격 대상 유형, 사용되는 무력의 규모 제한은 물론 효과적인 인간 감독 능력, 시의적절한 개입 및 비활성화 보장 등이 포함된 제한이 필요함
- AWS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한을 설정하는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고, 2026년까지 이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함

3) 의의 및 평가

□ 인도주의적 위험을 군사적 이점보다 최우선으로 다뤄야 함을 강조

- 성명은 AWS가 가져올 수 있는 인류에 대한 끔찍한 결과와 도덕적 경계선 문제(생사 결정권의 기계 위임)를 이유로 하여 인도주의적 위험을 강조하고 있음

□ 유엔 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동 시한을 설정하여

촉구하였으며, 예방적 조치로서의 규범 수립을 강조함

- 2026년까지 AWS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정을 협상하고 마무리할 것을 요구함

□ 인간 통제권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인간이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경계선’으로 확고히 규정하여, 향후 규범 협상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

16 ICRC, 분쟁 중 디지털 위협에 관한 글로벌 자문위원회³⁹⁾

Global Advisory Board on digital threats during conflict [2023.10.09]

1) 개요

- 사이버 작전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현대 무력 충돌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에 긍정적인 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전쟁수단과 방법 및 그 사용 방식은 민간인, 전투원, 인도주의 단체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인도법 적용과 실행에도 도전이 되고 있음

- 무력 충돌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armed conflicts)와 관련된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CRC는 다양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ICRC는 법률, 군사, 정책 및 기술 및 안보 분야의 고위 지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무력 충돌 중 민간인이 직면하는 사이버 위협 및 기타 디지털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개발한 바 있음
 - 사이버 및 정보작전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증가하는 활용, ‘사물인터넷’(IoT)의 기하급수적 성장과 연계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위협,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위협 행위자들의 증가 등이 논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교전 당사자, 국가, 기술기업 및 인도주의 단체에 제시하는 네 가지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권고안(15개 항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음

39) ICRC, Global Advisory Board on digital threats during conflict, 2023.10.09., <https://www.icrc.org/en/document/global-advisory-board-digital-threats> (2025.10.30. 최종방문).

2) 주요 내용

□ 글로벌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본원칙

- 원칙 1: 디지털 공간은 무법지대가 아니며, 무력 충돌 중에도 동일함
 - 국가, 교전당사자 및 무력 충돌과 관련된 디지털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는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이러한 규칙들은 좀 더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민간인, 민간 인프라, 데이터 및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함
 - 디지털 환경에서 국제인도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 또는 지침은 모호성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함
- 원칙 2: 민간인을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법률,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이러한 조치는 국가와 사회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 및 기업, 그리고 디지털 작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디지털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취해져야 함
 - 무력 충돌의 디지털화가 민간인 보호를 위태롭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법률,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이 정치적, 상업적 또는 기술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를 시행하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없음
- 원칙 3: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민간인 보호에 집중해야 함
 - 무력 충돌과 관련된 디지털 작전에 민간인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실제로 이는 무력 충돌 중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가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원칙 4: 국가, 기술기업, 인도주의 단체,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민간인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함께 활용해야 함
 - 공동으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민간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분쟁 중 민간인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도주의 서비스를 촉진해야 함

□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교전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 권고 1: 교전국은 사이버 및 기타 디지털 작전을 수행할 경우, 국제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무력 충돌 중 민간인, 민간 인프라 및 기타 보호 대상자와 시설에 가할 수 있는 피해를 평가,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함

- 권고 2: 교전국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경우, 민간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 권고 3: 교전국이 정보작전을 수행할 경우,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무력 충돌 중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에게 가할 수 있는 피해를 평가,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함
- 권고 4: 교전국은 민간인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함. 이는 민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허위정보를 퇴치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음.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차단을 정당화하는 경우, 민간인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함
- 권고 5: 교전국은 사이버 작전을 통해 민간인이 직접적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됨. 교전국은 민간인이 무력 충돌 관련 사이버 작전에 참여하도록 부추길 경우, 민간인이 법적 보호를 상실하고 표적이 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 권고 6: 모든 교전국은 무력 충돌 피해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특히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 국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오래된 합의사항을 재확인해야 함

□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

- 권고 7: 국가와 사회는 민간 인프라, 서비스 및 데이터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디지털 혼란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해야 함
- 권고 8: 국가와 사회는 유해 정보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며, 언론인을 보호해야 함
- 권고 9: 국가는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적 규범의 인식 제고, 특히 민간 행위자 대상의 인식 제고를 통해 해당 규범 준수를 보장해야 함
- 권고 10: 새로운 법적 규범이 개발될 경우, 기존 국제법이 제공하는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시설에 대한 보호를 훼손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강화해야 함
- 권고 11: 국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를 민간용과 최대한 분리해야 함
- 권고 12: 민간인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는 민간인 피해를 목적으로 개발된 능력 및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기술기업의 성장하는 시장을 규제해야 함

- 권고 13: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무력 충돌이나 기타 인도적 위기에 처한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나 기타 제한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의 운영·기능·유지보수·안전보장 및 인도적 활동이나 민간인 기본적 필요 충족에 필수적인 기타 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특정 인도적 예외조치가 필요함
- 권고 14: 국가 및 기타 행위자들은 인도주의 기관을 위한 적절한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조치와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이 유해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기업에 권고하는 사항

- 권고 15: 디지털 플랫폼은 유해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술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특히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하여 플랫폼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 정보의 신호를 탐지하고 그 출처, 유통 방법 및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함. 콘텐츠 관리 정책을 포함한 그들의 정책, 절차 및 관행은 국제인도법 및 인권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
- 권고 16: 무력 충돌 상황에서 운영되는 기술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직원의 적대행위 직접 참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군사적 표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또한 적대행위 직접 참여 외에도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관여가 직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활동을 조정해야 함
- 권고 17: 기술기업은 가능한 한 군사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를 민간용과 분리해야 함
- 권고 18: 기술기업은 제재 및 기타 제한 조치와 같은 법적 의무를 벗어난 상업적 또는 기타 사유로 자발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의료 서비스, 인도주의 활동 또는 민간인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기타 서비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글로벌 자문위원회가 인도주의 단체에 권고하는 사항

- 권고 19: 인도주의 단체는 수집 및 처리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IT 시스템 및 운영에 대한 디지털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구축해야 함

- 권고 20: 인도주의 단체는 운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정보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함
- 권고 21: 인도주의 단체는 운영 과정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권고 22: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도주의 단체는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민간인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운영을 수행하는 민간 행위자들도 포함하는 것임

□ 협력에 관한 글로벌 자문위원회 권고사항

- 권고 23: 국가, 기술기업, 인도주의 단체,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분쟁별 이해, 원칙 및/또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자간 대화가 필요함을 상기해야 함
- 권고 24: 기술기업과 인도주의 단체는 무력 충돌 중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권고 25: 인도주의 단체는 다른 분야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민간인 및 인도주의 활동을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해야 함

3) 전망 및 평가

□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건들을 고려할 때 분쟁 시 디지털 위협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접근이 시급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러시아, 미얀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공간에서 국제인도법적 의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해커 집단과 민간기업 등 점점 더 많은 민간인이 사이버 작전을 통해 무력 충돌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동 보고서에 해커 집단, 기술기업 및 국가가 전쟁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주목해야 함(권고 5, 9, 16)

- 이 보고서는 2023년 ICRC가 발표한 ‘전쟁 중 민간 해커를 위한 8가지 규칙과 이들을 제재하기 위한 국가의 4가지 의무’(8 Rules for Hackers in War, and 4 Obligations of States to Restrain Them)⁴⁰와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 전쟁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국제적 합의에 기반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동 보고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국제인도법 원칙과 규칙이 신형·구형 무기, 디지털 무기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동 보고서와 권고에 따라 정부와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민간인을 디지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0) 동 보고서는 친러 해커활동 단체 킬넷(Killnet)과 우크라이나 IT 군단으로부터 전례없는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각 단체들은 전쟁 속 해커를 위한 8가지 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였음

1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S/RES/2712 [2023.11.15.], S/RES/2720 [2023.12.22.]

1) 개요

- 2023년 10월 7일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시작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채택됨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12, 2720에서는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긴급 휴전을 요구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또한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자지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도주의 및 재건 선임조정관’ 임명을 요구하였음

2) 주요 내용

- S/RES/2712(2023.11.15.)⁴¹⁾
 - 분쟁 당사국 모두가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함
 - 국제인도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일반적 및 특별한 보호를 강조함
 - 무력 충돌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상 무력 충돌 시 아동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1949년 제네바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에 포함된 규정뿐만 아니라 분쟁 상황에서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협약에서도 적용됨
 - 아동은 비전투원으로서의 일반적 보호 및 특히 취약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인질로 삼을 수 없음을 상기하며, 특히, 어린이의 강제 이주를 거부하며, 교육 접근권의 중단이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분쟁이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평생에 걸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함
 - 가자지구 전역에서 긴급한 인도주의적 휴전을 충분한 기간 실시하여, 국제인도법에 부합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기타 중립적 인도주의 기관들이 특히 어린이의 복지에 중요한 필수품과 서비스(물, 전기, 연료, 식량, 의료용품 등)의 충분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급을 지원하며, 필수 인프라의 긴급 수리, 실종된 어린이를 포함한 손상되거나 파괴된

41) UN Doc. S/RES/2712(2023.11.15.),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Palestinian question, 찬성 12표에 러시아, 영국, 미국 3국의 기권으로 채택됨

건물 내에서의 긴급 구조 및 복구 노력, 부상 당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의 의료 이송 및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을 촉구함

- 하마스 및 기타 단체들이 억류 중인 모든 인질, 특히 어린이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동시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을 요구함
- 모든 의료 및 인도주의적 인력, 차량(구급차 포함), 인도주의적 시설, 그리고 유엔 시설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특히 병든 어린이와 부상 당한 어린이 및 그 보호자의 이동을 포함해 구호물자 수송대와 환자의 이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조정, 인도주의적 통지 및 충돌 방지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함

□ S/RES/2720(2023.12.22.)⁴²⁾

-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법 준수 의무, 특히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함
- 가자지구가 1967년 점령된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강조하며,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로 포함되는 두 국가 해결 방안을 재확인함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결 방안의 비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하며, 이는 국제법 및 관련 유엔 결의안과 일치하며, 이 맥락에서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당국의 관할하에 서안 지역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완전하고 신속,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 인도주의적 구호 및 의료 인력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강조하며, 가자지구의 민간인 인구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박탈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국에 재차 촉구하며, 이것이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함
-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모든 분쟁 당사자가 전투 수행 방식,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의 보호, 인도주의적 접근, 인도주의 인력의 보호 및 이동의 자유, 식량 및 의료 물자 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하에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함
 - 국제인도법상 분쟁 당사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하며,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확대된 인도적 접근을 즉시 허용하고,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긴급

42) UN Doc. S/RES/2720(2023.12.22.),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Palestinian question, 찬성 13에 러시아, 미국 2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됨

조치를 촉구함

- 분쟁 당사자들이 국경 검문소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전체 지역으로의 모든 이용 가능한 경로를 허용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인력과 지원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인구에게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며, 필수 인프라의 수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전달에 사용되는 국경 검문소 및 해상 인프라의 존중과 보호를 강조함
- 사무총장에게 가자지구 민간인 인구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재건 선임조정관(Senior Humanitarian and Reconstruction Coordinator)을 신속히 임명하도록 요청함

3) 의의 및 평가

- 위 두 결의안은 모두 완전한 휴전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공통적인 한계가 있으나 결의 2712호를 통해 인도주의적 중단을 최초로 요구하고, 2720호가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안보리가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8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A/RES/78/241 [2023.12.22.]⁴³⁾

1) 개요

- LAWS 관련 논의가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CW) 전문가 그룹(GGE)의 논의에 국한되어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엔총회 차원의 광범위하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됨
- 2023년 11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152개국의 찬성을 얻어 채택됨

2) 주요 내용

- 국제인도법 준수 원칙 및 LAWS가 제기하는 다차원적 우려를 확인함
 - 국제인도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무기체계는 개발·배치·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인공지능 및 자율성 기술의 군사적 적용이 인도주의적, 법적, 안보적, 기술적,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도전과 우려를 야기함을 인지함
 - 기술 발전은 국제 안보와 인류의 공동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군비경쟁 또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오용을 방지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 LAW와 관련한 도전과 우려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CCW하의 정부전문가 그룹(GGE)의 기존 논의도 지원하도록 촉구함

43) UN Doc. A/RES/78/241(2023.12.22.),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유엔 사무총장에게 치명적 자율무기체계가 국제평화·안보 및 국제인도법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유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로부터 i) LAWS가 제기하는 인도주의적, 법적, 안보적, 기술적, 윤리적 도전과 우려를 다루는 방안과 ii)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함

□ 국가들에 대한 주요 사항 촉구

- 모든 국가들은 자율무기체계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가 확보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함
- 국가들에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운용과 관련된 자국의 정책과 관행을 상호 공유하여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촉진할 것을 권함
- 모든 무기체계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핵심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 AWS의 사용은 국제인도법의 민간인 보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됨을 확인함

3) 의의 및 평가

- LAWS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차원의 첫 번째 공식 결의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CCW) 내의 소그룹 논의를 넘어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과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함
- 모든 LAWS가 아니라 특정 LAWS에 대해서만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일부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제법의 보편적 적용 원칙을 확고히 하였음
- 사무총장 보고서를 요청하여 LAWS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수집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적 프로세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LAWS 규범 제정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협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Ⅱ. 최근 3년간 국제인도법의 동향 및 이슈

2. 2024 년

1

국내 법원의 보편관할권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판결 *Mustafa A.* 사건

THE HAGUE District Court, ECLI:NL:RBDHA:2024:5142 [2024.01.22.]

1) 개요

- 시리아 국적의 무스타파 A.에 대해 네덜란드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테러조직죄 및 고문범죄를 근거로 체포, 기소하여 유죄가 선고됨
 - 네덜란드에서 과거 시리아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와 전쟁범죄를 이유로 민병대 소속 시리아 국적인에 대해 기소, 판결한 사건으로, 중대 국제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라는 점에 주목함

2) 주요 내용

- 체포 과정 및 기소 근거
 - 2020년 말 네덜란드 국제범죄팀은 당시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시리아 국적의 무스타파 A.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 A.는 시리아 알레포 근처 난민 캠프 알 나랍의 리와 알 쿠드스(Liwa Al Quds)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직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과 연계된 민병대로, 시리아 정권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반군을 체포하는 데 활용되었음
 - 또한 A.가 두 민간인의 폭력적인 체포에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관여했으며, 이후 두 민간인 모두 시리아 공군 정보국에 인계되어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당한 사실이 NGO 보고서를 통해 알려짐
 - 국제범죄팀과 네덜란드 검찰청의 광범위한 수사 끝에 A.는 2022년 5월 24일 네덜란드 케르크라데에서 체포됨
 - 이후 A.는 핵심 국제법 위반 사유로 심각한 자유박탈 및 고문을 이유로 한 전쟁범죄 2건과 심각한 자유박탈 및 고문을 이유로 한 인도에 반하는 죄 공모에 대해, 테러 조직 가담을 이유로 한 테러 관련 범죄 1건 및 고문범죄의 공모를 이유로 한 국내법 위반 2건에 대해 기소됨

□ 1심 판결 내용

- 2024년 1월 22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무스타파 A.에 대해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A.가 2013년 1월 알 나이랍 수용소에서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이후 고문한 사건에 대해 자유박탈 및 고문을 근거로 한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됨
- 법원은 리와 알 쿠드스 조직은 실제로 전쟁범죄로서 신체적 해악과 약탈을 저지르고,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판결하였으며, 무스타파 A.가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테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림
-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무스타파 A. 양측 모두 항소하였음

3) 전망 및 평가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등에 대해 국내 법원의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판결로서 국내법원을 통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 국제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가자지구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 - 인도적 위기, 식량 무기화 금지 관련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South Africa v. Israel), Provisional Measures [2024.01.26. / 2024.03.28. / 2024.05.24.]

1) 개요

- 2023년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 소송과 관련하여 잠정조치를 신청하였으며,⁴⁴⁾ 이에 대해 2024년 1월 26일 ICJ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림⁴⁵⁾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4년 1월 명령 이후 가자지구, 특히 북부 지역에서의 기근과 굶주림 상황이 심화된 것을 근거로 기존 명령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며,⁴⁶⁾ ICJ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3월 28일에 추가 잠정조치 명령을 내림⁴⁷⁾
-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Rafah) 지역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자, 남아공은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등의 추가 긴급 조치를 ICJ에 요청하였으며,⁴⁸⁾ 5월 24일 ICJ의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짐⁴⁹⁾

44)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South Africa v. Israel),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45) Order of 26 January 2024.

“The Court i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pulation in Gaza, particularly the lack of access to food, water and medicine ... Israel must take all measures within its power to enable the provision of urgently needed basic servic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rder, paras. 45-48*).

46)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additional provisional measures and the modification of previous provisional measures, “Mass starvation is setting in across Gaza. Israel continues to obstruct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relief and to destroy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s.” (*Request, para. 23*).

47) Order of 28 March 2024.

2) 주요 내용

- 2024년 1월 26일 잠정조치 명령은 집단학살 행위 방지와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함
 - 잠정조치 내용으로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행위 방지와 처벌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을 저지르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령하였음
 - ICJ는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을 명하였음

- 2024년 3월 추가 잠정조치에서 재판부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직면한 생활 조건의 악화, 특히 기근과 굶주림의 확산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내용을 추가함
 - 이스라엘은 유엔과 전적으로 협력하여, 지체없이 긴급히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및 인도적 지원(식량, 물, 전기, 연료, 피난처, 의복, 위생 및 의료용품 등)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이스라엘은 구호품 반입을 막는 법률, 정책 또는 군사적 행동 등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육로 검문소의 수와 수용 능력을 늘려 필요한 기간 동안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이스라엘은 이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명령 이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

- 2024년 5월 24일 추가 잠정조치에서는 라파(Rafah)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재앙적인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 기존 조치만으로 상황 변화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음
 - 이스라엘은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에 대한 물리적

48) Request for the modification of the Order of 28 March 2024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49) Order of 24 May 2024.

파괴를 초래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함

- 유엔의 요청에 따라 라파 국경 검문소를 방해 없이 개방하여야 함
- 집단학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조사 위원회, 사실 조사단 기타 조사 기관이 가자지구에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이전 1월 26일과 3월 28일 명령에서 지시된 집단학살 행위 방지, 집단학살 선동에 대한 처벌, 인도적 지원 보장과 관련한 모든 잠정조치들을 재확인하며, 이 조치들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3) 의의 및 평가

□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한 ICJ 잠정조치의 의의

- 1차 잠정조치는 이스라엘의 협약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에 집중하며,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이 기아 상태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여 일반적 접근 보장을 명령한 조치임
- 2차 잠정조치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심화에 맞추어 기아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위기를 인정하고 식량과 필수품의 방해 없는 대규모 공급을 즉각 보장할 것을 명함으로써, 기아 문제에 맞추어 조치를 강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잠정조치의 유연성과 역할을 확인하는 의의가 있음
- 3차 잠정조치는 ICJ가 이스라엘의 라파 지역에서의 군사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여 인도적 위기를 국가적 군사 안보에 우선하고, 구체적으로 군사작전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수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S/RES/2725 [2024.03.08.],⁵⁰⁾ S/RES/2736 [2024.06.13.]⁵¹⁾

S/RES/2750 [2024.9.11.],⁵²⁾ A/HRC/RES/57/2[2024.10.09.]⁵³⁾

1) 개요

- 2023년 4월 15일 발생한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수단에서의 인도적 재앙에 해당하는 위기가 계속되었으며, 2024년에도 무력 충돌이 수단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실항 및 기아 위기에 닥치게 되면서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등에서 다수의 관련 결의가 채택됨
- 2024년 3월 8일 안보리 결의에서는 수단에 대한 제재감독패널(Panel of Experts)의 임무를 2025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임무의 추가 및 강화 내용이 포함되었음
- 2024년 6월 13일 안보리 결의에서는 수단 다르푸르 북부 엘 파세르 포위로 인한 긴급하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또한 2024년 9월 11일 안보리 결의에서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수단으로 자산동결·여행금지·무기금수 등의 조치를 2025년 9월 12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였으며, 분쟁 당사자들의 민간인 보호 및 국제인도법 준수의 보장을 촉구하였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 A/HRC/RES/57/2를 통해 독립진상조사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였으며, 제노사이드의 위험을 경고하며,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50) UN Doc. S/RES/2725(2024.03.08.), Extension of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591 (2005) concerning the Sudan.

51) UN Doc. S/RES/2736(2024.06.13.), Demanding a halt to the siege of El Fasher in the Sudan

52) UN Doc. S/RES/2750(2024.9.11.), Extension of the sanctions regime concerning the Sudan.

53) UN Doc. A/HRC/RES/57/2(2024.10.09.), Responding to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risis caused by the ongoing armed conflict in the Sudan.

2) 주요 내용

- 수단에 대한 제재감독패널의 임무 및 헌장 제7장에 따른 조치로서의 제재 연장
 - 수단 제재감독패널의 임무를 2025년 3월 12일까지 연장하고 이들의 활동에 민간인 공격, 아동·성폭력 관련 위반 사항, 무기금수 등 위반 사항 및 자금조달 경로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가하였으며 보고 요구를 강화하였음

- 엘 파세르 포위 중단 및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접근 보장
 - 신속지원군(RSF)에 엘 파세르에 대한 포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엘 파세르와 그 주변에서의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민간인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전투원이 현재 중재 메커니즘의 지원을 받아 철수할 것을 촉구함
 -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보호를 보장하고, 엘 파세르에서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민간인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함
 - 수단 당국에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국경 통과 지점을 긴급하게 재개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에 신속,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 구호품 통로를 허용하고 촉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조치로 수단에 대한 기존의 제재(무기 금수조치, 자산동결, 여행금지)를 2025년 9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24년 10월 9일 수단 사태와 관련해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서는 2023년 결의 54/2에서 설치한 수단 독립진상조사단(FFM)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음

-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조건적 휴전, 휴전 독립 감시 기구 설립, 핵심 기반시설 복구, 포괄적이고 수단 주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협상적 평화적 분쟁 해결을 재차 촉구함

- 인도적 접근의 보장과 재허가 촉구
 -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수단 전역에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박탈하고 인도적 지원 차량, 창고 및 구호 기관에 대해 행한 공격 및 약탈 행위를 규탄함

-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승인하고 보장할 것을 요청함
- 수단 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인도주의 종사자 및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민간인이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함

□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 및 인권 침해행위를 규탄함**

- 분쟁 당사자 양측에 의한 민간인 거주지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부상 및 마을과 핵심 인프라 파괴,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신속지원군 및 동맹民兵대원들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인종적 동기의 공격 및 약탈을 규탄하며, 이러한 사태가 다르푸르에서 이전에 발생한 위반 및 학대와 명백히 유사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함

□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이 함께 수단 내 민간인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검토를 가속화 할 것을 촉구함**

4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가자지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S/RES/2728 [2024.03.25.],⁵⁴⁾ S/RES/2735 [2024.06.10.]⁵⁵⁾

A/HRC/RES/55/28 [2024.04.05.]⁵⁶⁾, A/HRC/RES/55/32 [2024.04.05.]⁵⁷⁾

1) 개요

-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에서 다수의 결의가 채택되었음. 이 중 2024년 가자지구 관련 안보리 결의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의 단계적 휴전과 인질 석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인권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점령지에서의 정착촌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및 두 국가 해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안보리 결의 2728에서는 라마단 기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의 석방을 요구함
 - 라마단 기간 모든 당사자가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이는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명시함
 -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인질의 의료 및 기타 인도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
 -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54) UN Doc. S/RES/2728(2024.03.25.), on cease-fire in the Gaza Strip during Ramadan.

55) UN Doc. S/RES/2735(2024.06.1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Palestinian question.

56) UN Doc. A/HRC/RES/55/28(2024.04.05.),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justice.

57) UN Doc. A/HRC/RES/55/32(2024.04.05.), Israeli settlemen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거듭 요구하며,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모든 폭력과 적대 행위를 개탄하였음

□ 안보리 결의 2735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3단계 휴전 제안과 승인을 촉구함

- 1단계에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여성·노인·부상자 등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인도적 지원 확대, 사망한 인질의 유해 반환, 민간인의 거주지로의 복귀 허용을 내용으로 함
- 2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인질 석방 및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와 교환하여 영구적인 적대 행위 종식을 내용으로 함
- 3단계에서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다년간의 주요 계획 시작 및 사망한 인질의 남은 유해를 가족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안전하고 인정된 국경 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주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

□ 인권이사회 결의 55/28은 점령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전쟁범죄·집단학살 가능성 포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필요성 원칙)을 재확인 하였음

- ICJ가 2024년 1월 26일 내린 잠정조치 명령에서 ‘집단학살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인용하며, 점령지 내 중대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전쟁수단으로서의 기아(starvation) 문제

- 식량, 물, 의료품 접근의 의도적 차단이 전쟁수단으로서의 기아(starvation)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는 ICC 로마규정 제8조 2(b)(25)⁵⁸에 따라 전쟁범죄로 분류됨

58) 제8조 제2항 b.(25)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구호품 공급의 고의적 방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인권이사회 결의 55/32에서는 점령지인 서안, 동예루살렘 및 시리아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의 불법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 금지 원칙의 위반을 재확인함
 - 정착촌 활동을 ‘무력으로 취득된 영토에서의 인구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인구 구성 변경, 토지 몰수, 자원 착취, 주택 철거 등은 모두 국제인도법상 불법 조치에 해당함을 확인함
 - 점령국이 점령지의 영구적 행정·법률적 지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며 효력이 없음

5 ICRC 2024 의견서 : 국제인도법에서 ‘무력 충돌’ 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는가?⁵⁹⁾

ICRC 2024 Opinion Paper – How is the term "Armed Conflict" defin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24.04.16.]

1) 개요

- 무력 충돌(armed conflict) 상황이 국제인도법 하에서 국제적 무력 충돌(IAC)인지 비국제적 무력 충돌(NIAC)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무력 충돌의 법적 분류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ICRC 2024년 의견서(2024 Opinion Paper)에서는 현대 무력 충돌을 법적으로 분류하는 ICRC의 접근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ICRC는 2008년 의견서(2008 Opinion Paper)를 통하여 무력 충돌의 개념이 제네바협약 초안 작성 이후 판례와 이론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설명한 바 있음
 - 2008년 의견서에서는 무력사용 행위자들이 무력 충돌에 참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개관하고 있음
 - 2024년 의견서에는 무력 충돌 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음
 - 국제적 무력 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개시와 종료, 대리전쟁에 의한 국제적 무력 충돌의 분류,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분쟁에서 당사자 식별 방법, 연합단체가 참여하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 분류에서 지원 기반 접근법, 무장단체의 당사국 편입, 비국제적 무력 충돌 동안 국제인도법의 영토적 범위,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관여하는 정부에 대한 국가연합의 지원, 외국 영토에서 합의되지 않은 무력사용 등의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59) ICRC, ICRC 2024 Opinion Paper – How is the term "Armed Conflict" defin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24.04.16., <https://www.icrc.org/en/document/icrc-opinion-paper-how-term-armed-conflict-defined-international-humanitarian-law> (2025.10.30. 최종방문).

2) 주요 내용

□ 무력 충돌의 개념

-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되며 당사국들이 전쟁의 존재를 선언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적대상태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실질적 적용범위 측면에서 무력 충돌이 국제적 무력 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 충돌인지 여부는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칙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제네바협약 공통 제2조와 제3조는 국제적 무력 충돌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규칙을 구분하고 있으나 ‘무력 충돌’이라는 용어는 어느 조항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협약이 상정하는 폭력상황에 협약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제네바협약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이후 전쟁 상태가 존재한다는 교전 당사자의 형식적 인정 뿐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무력 충돌 분류의 함의

- 국제법상 무력 충돌 상황을 분류하는 기구는 없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군사작전 수행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결정해야 함
- ICRC는 자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1949년 제네바협약 체결국들은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운동의 정관을 통하여 ICRC에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이해와 지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그 발전을 준비하는’ 역할을 위임하였음
 - 둘째, ICRC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적용가능한 법적 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무력 충돌’ 개념 해석은 운영의 관점에서도 중요함
 - 셋째, 무력 충돌의 존재 여부 자체가 ICRC 권한의 중요한 근거로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ICRC는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제3자 포함) 모두에게 법적 분류를 통보함(다만 상황에 따라 ICRC는 예외적으로 분쟁 당사자, 제3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적용법률에 관한 입장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음)

-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무력 충돌의 분류가 국제인도법의 적용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제네바협약은 국가들이 “모든 상황에서 [협약]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또한 특정무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거의 모든 조약들 역시 국제인도법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는 무력 충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의무가 있음(대인지뢰, 클러스터 탄약, 생물학 무기 및 화학 무기의 비축 금지,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판매 및 이전과 관련된 의무 등)
- 무력 충돌 종료 후에도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 의무를 계속 유지하므로 무력 충돌의 종결이 국제인도법 적용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음
 - 예를 들어, 국제적 무력 충돌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들은 자국에 구금되어 있는 전쟁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등 보호 대상자의 대우와 관련된 모든 의무를 계속 유지하며, 최종 석방 및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 또는 석방, 본국 송환 또는 재정착(민간인 억류자의 경우)이 이루어질 때 까지 해당 협약에 의해 계속 보호받음
 -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서는 공통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사람들은 “무력 충돌의 결과로 공통 제3조 제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한” 계속 동 조항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법적 체계가 그들에게 더 유리한 보호를 제공할 때까지 보호가 계속 유지됨
 - 일부의 경우 적대행위의 종료가 특정 국제인도법 규칙 적용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함. 예를 들어, 1949년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제6조 제5항은 사면을 다루며, 특정 무기 및 전쟁 잔해물 제거와 관련된 일부 국제인도법 의무는 무력 충돌 종료 후 적용됨
 - 또한 제2추가의정서는 분쟁과 관련된 사유로 분쟁 종료 이후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은 동 의정서의 주요 보호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됨
- 무력 충돌의 분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거나 합법화하지 않으며, 그 무력 사용을 비난하거나 금지하지도 않음
 - 국가 간 무력 사용의 합법성은 1945년 유엔 헌장에서 규칙을 도출한 별개의 법체계인 개전법(*jus ad bellum*)에 의해 규율됨. 따라서 무력사용의 실제적 또는 인식된 정당성 및 UN 헌장에 따른 합법성 또는 불법성은 특정 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전망 및 평가

- 무력 충돌을 분류하는 이유는 개전법과 국제인도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함

- 개전법은 국가 간 국제평화와 안보를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국제인도법은 전투를 시작한 주체나 전투가 발생한 이유와 관계없이 무력 충돌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는 개전법에 대한 고려 사항보다는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사실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음
- 또한 무력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기도 분쟁의 분류 및 관련 국제인도법 적용여부와 무관함
 - 이는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불법적 당사자로 간주하여 분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음
 - 법적, 정치적 또는 기타 정당성과 같은 합법성은 무력 충돌 분류의 관련 기준이 아니며 오직 제시된 사실적 기준만이 분쟁 분류에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되어야 함
 - 분류된 분쟁은 당사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분쟁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국가는 모든 상황에서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법이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군대 및 사실상 자국의 지시·명령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타 인원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및 비국가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존중받도록 보장해야 함
- 또한 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군대에 국제인도법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인들에게도 국제인도법 교육을 장려해야 함
- 그리고 분쟁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군사 지휘관에게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해 조언할 법률고문을 배치해야 함

6

ICRC,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로부터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와 보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발표⁶⁰⁾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nd other protected persons and objects against the potential human cost of ICT activities during armed conflict' [2025.04.29.]

1) 개요

- 2024년 10월 31일 제34차 국제적십자·적신월사 국제회의에서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총회는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ICT)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전문과 실행조항 13개항)을 채택하였음
- 이 회의에는 191개 국가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 연맹(IF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포함한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였고 제네바협약 당사국 196개국도 회의에 참석함
 - 이와 같이 비정부기구와 국가대표들이 결합된 독특한 구성은 '사적·공적 이중적 지위'라는 독특한 성격을 동 회의에 부여하게 되었음
- 동 결의안은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제시하고,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위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모든 교전국이 정보통신기술 사용 시 준수해야 할 핵심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국제회의에서 무력 충돌 중 사이버 및 정보작전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능력 사용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력 충돌 시 ICT가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 정보통신기술은 식량, 물, 피난처 같은 필수품을 찾아내고 극도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등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군사적

60) ICRC,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nd other protected persons and objects against the potential human cost of ICT activities during armed conflict', 2025.04.29.,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2025-04/34IC_R2-ICT-EN_0.pdf (2025.10.30. 최종방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함

2) 주요 내용

- 주요 우려사항은 ‘무력 충돌 중 디지털 활동의 영향’으로 결의안 전문에서는 무력 충돌에서 정보통신기술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과 위협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
 - 무력 충돌 당사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히 이러한 수단이 민간의 핵심 인프라와 필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전문 7항)
 - 국가와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이 악의적인 정보통신기술 활동을 탐지하고 방어할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더 취약해질 수 있음(전문 8항)
 - 악의적인 정보통신기술 활동,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활동은 확산규모, 속도, 범위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아동을 무장세력 모집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도 포함됨(전문 9항)
 - 인공지능(AI) 및 기타 신기술의 악의적인 정보통신기술 활동 활용은 이러한 활동의 규모와 속도, 그리고 잠재적 피해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음(전문 11항)
 - 정보통신기술은 민간인이 관련 위험이나 자신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및 함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분쟁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음(전문 12항)
 - 데이터 유출 및 허위정보와 같은 악의적 정보통신기술 활동이 인도주의 단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구호 활동이 방해받고 신뢰가 훼손되며 인력의 안전과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 단체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전문 14항)
 - 이는 ICRC, 사이버 평화 연구소(Cyber Peace Institute)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 등의 학술기관들이 수년간 제기해 온 우려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함
- 본 결의안을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법적 체계와 현행 정보통신기술 역량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국가에 취할 것을 촉구하는 실행조항은 이하와

같이 1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음⁶¹⁾

- 제1항: 국제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및 기타 보호대상자와 시설을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며, 이는 악의적인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한다.
- 제2항: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상황에만 적용되며(인도주의, 필요성, 비례성 및 구별이라는 확립된 국제법 원칙 포함), 해당 충돌의 맥락에서 발생하고 그와 연관된 행위에만 적용됨을 상기한다.
- 제3항: 이러한 원칙들이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어떻게,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러한 원칙들을 상기하는 것이 결코 분쟁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국가들이 공통된 이해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 제4항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구별의 원칙, 무차별적이고 비례하지 않은 공격의 금지, 군사작전 수행 시 민간인 및 민간물자를 보호할 의무, 부수적 민간 피해 발생을 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예방 조치, 국제인도법 위반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의 금지 등 국제인도법의 규칙과 원칙이 적용됨을 재확인한다; 군사 작전 수행 시 민간인 및 민간물자를 보호할 의무, 부수적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예방 조치, 국제인도법 위반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금지, 민간인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폭력 행위 또는 위협 금지 등은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포함하여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 및 물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재확인한다.
- 제5항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여러 국가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핵심 인프라, 특히 인터넷의 일반적 가용성 또는 무결성에 필수적인 기술 인프라(해저 케이블 및 궤도 통신망 포함)를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제6항: 또한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정보통신기술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의료 인력, 부대 및 수송 수단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제7항: 국가 및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는 활동을 포함한 공정한 인도주의 활동을 허용하고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인도주의 관련 인력 및 대상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제8항: 국가 및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정보통신기술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61) *Ibid.*, pp. 3-4.

의무에 따라 민간인과 기타 보호 대상자 및 대상물(민족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을 구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 장소 등)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제9항: 국가 및 적절할 경우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이 자국 내에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널리 보급하여 그 원칙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정보통신기술 활동과 관련하여 각국이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조사 및 기소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제10항 모든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은 정보통신기술 활동이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와 보호 대상물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위험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활동의 위험에 대비하고 대응할 능력의 향상, 예를 들어 민간인 피해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집단이 서로 다르게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제11항: 또한 모든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민간기업에게 국제인도법을 보급하고, 무력 충돌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정 위험을 수반함을 인식시키며, 해당 기업들과 적절히 협력하여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제12항: ICRC가 국가 및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과의 협의 및 적극적 교류를 지속하여 디지털 상징의 구체적 목적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추가로 평가 및 명확화하고,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잠재적 활용을 위한 역량 구축을 관심있는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 및 국가에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외교적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장한다.
- 제13항: 국가 및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들이 지식과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락 및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며, 국가 및 적십자사·적신월사 운동 구성원 간 가용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악의적인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민간인 및 기타 보호 대상자와 보호 대상물을 보호하기 하여 정보통신기술 보안, 데이터 보호, 국제법 분야의 역량을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3) 전망 및 평가

- 동 결의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조항까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무력 충돌 속 활용되는 디지털 및 사이버 문제에 대한 글로벌 노력은 일반적으로 뉴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엔총회가 위임한 정부 간 노력이 정보통신기술 사용의 국제안보와 관련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중요한 다자간 결의안이 제네바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됨

- 그러나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활동이 국제인도법의 규제를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슬로베니아 대표 중 한 명인 우르반 프라프로트니크가 Linked in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대표들 사이에서 이러한 표현의 명시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함⁶²⁾
 - 2021년 GGE 보고서의 유엔총회 채택 이후 무력 충돌 시 사이버 작전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결의안이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실행조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에서 GGE 그룹의 문구를 재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한 국제인도법 규칙 및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광범위한 합의와는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상술한 바대로 동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활동에 대한 국가들의 국제관행 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동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책임을 수반하는 것도 아님

62) Linked in : Urban Praprotnik(Legal Advisor at Slovenian Armed Forces), https://www.linkedin.com/posts/urban-praprotnik-9834b4252_i-had-the-privilege-of-providing-legal-support-activity-7258926849324367872-j8ZB?utm_source=share&utm_medium=member_desktop (2025.10.30. 최종방문).

- 그러나 국제법에 대한 특정 견해와 해석을 표명하는 경우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의 법적 확신(*opinio juris*)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들의 제네바협약 및 그 추가의정서 해석과 관련된 후속 관행으로 반영될 수 있음
 - 국제사회가 무력 충돌 중 정보통신기술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로부터 사람과 물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 결의안은 관련 법률의 명확화 및 발전을 포함하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반드시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S/2024/385 [2024.05.14.]⁶³⁾, S/RES/2730 [2024.05.24.]⁶⁴⁾

1) 개요

-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1296호에 따라 매년 제출되는 보고서로 전년도에 발생한 무력 충돌 상황과 민간인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의 준수 여부와 책임성 확보 현황 등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에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2024년 5월 24일 채택된 S/RES/2730 결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채택 75주년을 상기하며 국가들이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민간인 보호 및 유엔과 인도주의 인력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주요 내용

-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2023년의 민간인 피해를 압도적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표현하였음
 - 유엔이 기록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2%로 증가함.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격화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수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언급하였음
- 폭발성 무기의 무차별 사용과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 국제인도법 위반의 문제
 -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이 민간인 사상자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90%가 민간인임을 강조하며, 이는 구별의

63) UN Doc. S/2024/385(2024.05.14.),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64) UN Doc. S/RES/2730(2024.05.24.), Safety and security of humanitarian personnel and protection of United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 in armed conflict.

원칙과 비례 원칙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함을 지적함

- 인도주의 활동가,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인도법상의 민간인 보호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

□ 새로운 군사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위험 확산의 문제도 제기됨

- 자율무기체계와 드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이 무력 충돌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민간인 보호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드론은 군사적 효율성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부정확한 유도 시스템 등의 문제는 민간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높이게 되며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완전한 민간인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 촉구

- 사무총장은 국제인도법 준수를 넘어 완전한 민간인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접근방식을 주장하였으며, 분쟁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모든 범위의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는 분쟁의 사이버 영역 확장 방지 조치, 새로운 무기와 같은 신흥 기술의 인도법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 안보리 결의 S/RES/2730의 주요 내용

- 무력 충돌 당사국이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며, 1949년 제네바협약 및 그 추가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모든 상황에서 협약을 준수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와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국제인도법상 무력 충돌 당사국 모두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영토 내 또는 통제하에 있는 민간인 인구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통행을 허용하고 촉진해야 함을 강조함
 - 인도주의적 접근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민간인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는 행위 및 무력 충돌 상황에서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구호물자 공급과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 인도주의 인력, 유엔 및 관련 인력과 시설에 대한 공격, 폭력 행위 및 위협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함을 지적함. 또한 이들 인력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위험 완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함
 - 모든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인도주의 인력, 유엔 및 관련 인력(국가 및 지역에서 채용된 인력 포함)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함
 -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유엔 및 인도주의 관련 인력과 그들의 시설 및 자산(인도주의 물자, 시설 및 운송수단 포함)에 대한 공격 및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함. 특히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전투 수행 시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예방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인 인구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공격하거나 파괴하거나 제거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를 삼가도록 강력히 촉구함
 - 유엔 안전 관리 시스템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 안전 및 보안 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인정하며, 인력이 노출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며, 심지어 고위험 환경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든 국가들이 유엔 및 관련 인력의 안전에 관한 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며, 협약 당사국들은 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 국제인도법에 따라 중립적인 인도주의 단체는 무력 충돌의 모든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폭력 사건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해 지적함
 - 도시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관련 인도주의 인력과 그들의 시설 및 자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고위험 환경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위험 관리 조치의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링 및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엔 및 인도주의 관련 인력이 특정 형태의 범죄, 협박 및 괴롭힘 행위(성폭력 및 기타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 포함)에 노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유엔 인력(남성 및 여성 모두)에 대한 보고된 성폭행 사건 수가 상당함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유엔 및 인도주의 관련 인력과 그들의 시설 및 자산에 대한 허위 정보, 정보 조작, 폭력 선동 행위를 규탄하며, 허위 정보 캠페인과 허위 정보가 유엔 및 인도주의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유엔 및 인도주의 관련 인력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함

- 인도주의 단체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정보 및 통신 기술 활동의 증가, 특히 데이터 유출, 정보작전 등이 이들 조직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유엔 활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그들의 인력, 시설 및 자산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접근권과 능력을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및 신규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더 나은 통합이 인도주의 관련 인력의 안전과 보안, 그들의 시설 및 자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 국제 인도주의 관련 인력과 그 시설 및 자산에 대한 고의적 공격 및 기타 불법행위를 심판하는데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가들이 국제법 및 기타 국제 범죄의 심각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이러한 범죄의 예방, 재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평화, 정의, 진실과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인도법 및 기타 국제범죄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면책권을 종식시킬 필요성을 재확인함
- 국가들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완전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며, 적절한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피해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 또한 국가들이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기소하도록 촉구하며, 국가들이 각각의 의무에 따라 국내, 지역 및 국제 법원 및 재판소와 협력하도록 촉구함
- 유엔 및 인도주의 관련 인력 및 그들의 시설, 자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며, 사무총장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관련 인력에 대한 공격 모니터링, 관련 도전 과제 및 우수사례 공유를 요청함
- 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 인도주의 인력의 ‘체류 및 지원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서 관련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협박, 구금, 괴롭힘 및 신체적 피해, 그리고 그들의 시설 및 자산에 대한 공격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3) 의의 및 평가

- 사무총장 보고서는 디지털 위협과 선전 행위 등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신뢰 훼손,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위험 확대 등의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보호를 국제인도법 준수의 정도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보호(full protection)로의 보호 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그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안보리 결의 2730은 무력 충돌 당사자들의 민간인 보호 및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한 결의이며, 디지털 위협으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직면하는 위험 등을 적시하고 국내 및 현지에서 채용된 인도주의 인력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⁶⁵⁾

65) ICRC, UNSCR 2730 is an urgent and timely reminder of parties'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itarian personnel, <https://www.icrc.org/en/unscr-2730-personnel> (2025.10.30. 최종방문).

A/78/842-S/2024/38 [2024.06.03.],⁶⁶⁾ S/RES/2764 [2024.12.20.]⁶⁷⁾

1) 개요

- 2024년은 아동에게 가장 최악의 해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으며, 무력 충돌 지역에서 아동에 대한 징집 및 이용, 살해 및 불구화, 성폭력, 학교 및 병원 공격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중대 위반행위의 주요 부분에서 위반행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며, 분쟁 당사자와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안을 담고 있음
- 안보리 결의 2764는 장기간 구축된 무력 충돌 지역의 아동보호 체제를 강화하고, 임무 전환 시 아동 보호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주요 내용

-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아동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
 - 중대 위반 6가지 유형과 관련하여 아동의 살해는 35%, 인도적 접근 거부 32%, 아동에 대한 성폭력 25%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심각한 위반이 집중된 주요 지역으로는 이스라엘 및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수단 등을 들 수 있음
 - 아동 살해의 주요 원인으로 폭발성 무기의 사용 및 교전 당사자 간 교차 사격을 들 수 있으며, 많은 아동이 동시에 여러 형태의 중대한 침해를 겪고 있음이 확인됨

66) UN Doc. A/78/842-S/2024/38(2024.06.03.), Children and armed conflic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67) UN Doc. S/RES/2764(2024.12.20.), on sustainability of child protection capacities i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transitions.

□ 사무총장의 권고 사항

- 모든 심각한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
-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고, 적절한 사법 절차를 통해 기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함
- 안전하고 신속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즉각 보장하여, 아동들이 구호품과 필수 서비스(의료, 교육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무장단체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구금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우선시하여 아동에 대한 재통합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64의 주요 내용

- 무력 충돌 당사국은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그 부속 의정서(무력 충돌과 아동의 참여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받음을 확인함
- 무력 충돌 당사자들이 아동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규정을 무분별하게 위반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 무력 충돌 당사자들의 아동의 모집 및 활용과 관련된 모든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아동의 재모집, 살해 및 신체 손상,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납치, 학교 및 병원 공격, 무력 충돌 당사자들의 인도주의적 접근 거부 및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 인권법 및 난민법, 그리고 무력 충돌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 무력 충돌 중 아동에 대한 모든 위반 및 학대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이 국가적 책임 추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특히 조사 및 기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면책 문제를 계속 해결하도록 촉구함

□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아동의 보호 역량의 지속성

-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아동 보호에 미치는 역할을 인정하며, 특히 아동 보호를 모든 임무의 핵심 이슈로 통합하는 데 있어 전담 아동 보호 자문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함
- 유엔 평화 유지 작전의 준비 및 연장 단계 또는 유엔 임무로의 전환 또는 유엔

임무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아동 보호 자문관의 필요성, 수량 및 역할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임명된 경우 아동 보호 자문관을 신속히 채용하고 신속히 배치하며 적절히 자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아동과 무력 충돌 관련 임무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보장하도록 촉구함

- 무력 충돌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 특히 무장 세력 및 비국가 무장 단체에서 해방된 아동의 옹호, 보호, 재통합 및 재활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량 강화와 개발을 지원하도록 권장함

3) 의의 및 평가

- 사무총장 보고서는 UN 시스템 내에서 아동 보호 기능 및 모니터링 보고 체계가 제도화된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아동 보호간의 연계가 제도적으로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안보리 결의 2764 역시 아동 보호에서의 평화 유지 활동의 중요성과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의 중요성 등에 있어 사무총장 보고서의 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됨

9 ICRC, 무력 충돌 당사자에 대한 무기 이전 관련 법률⁶⁸⁾

Arms transfers to parties to armed conflict: what the law says [2024.06.03]

1) 개요

- 오늘날 분쟁은 지속적인 무기, 탄약 및 교체 부품 공급에 의해 가속화·심각화되는 경향이 있음
 - ICRC는 무기의 광범위한 유통과 오용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고 국제무기거래에서 책임있는 행동과 자제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음

2) 주요 내용

- 국제무기거래가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게 규제된 적은 없지만 무기와 탄약은 여전히 가장 잔혹한 무력 충돌 지역으로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이러한 무기의 이전은 무기의 광범위한 유포와 오용을 초래하며, 생명을 잃게 하거나 부상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영구적 장애를 발생시키고,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인이 폭력의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무기가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공급이 이루어지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을 촉진하게 되며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의 전달도 방해받을 수 있음
 - 무분별한 무기의 이전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욱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분쟁이 끝난 후에도 아동에 대한 폭력, 성별 기반 폭력 및 성폭력 등 높은 수준의 불안과 폭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분쟁 이후 재건, 회복 및 화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68) ICRC, Arms transfers to parties to armed conflict: what the law says, 2024.06.03., <https://www.icrc.org/en/document/arms-transfers-parties-armed-conflict-what-law-says> (2025.10.30. 최종방문).

□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무기 공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칙

-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은 재래식 무기, 탄약, 부품 및 구성품의 거래 규제를 위한 공통적인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동 조약의 인도주의적 목적은 인도적 고통을 줄이고 국제무기거래에서 책임있는 행동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데 있음(제1조)
 - 또한 무기거래조약 제6조와 제7는 무기 공급의 요건과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된 무기를 통해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및 기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이처럼 무기거래조약은 당사국들이 이전된 무기를 사용하여 국제인도법 위반이 발생하거나 촉진될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무기 이전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 지역문서들도 인도주의를 이유로 무기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음
 - EU 공동입장(EU Common Position) 2008/944/CFSP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최종 목적지 국가에서의 인권 존중과 해당 국가의 국제인도법 준수를 고려하여 무기수출 신청을 심사해야 함(기준 2)
 - 또한 중앙아프리카 소형무기 및 경무기, 탄약 및 제조·수리·조립에 사용가능한 모든 부품 통제 협약(Central African Convention for the Control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heir Ammunition and all Parts and Components that can be used for their Manufacture, Repair and Assembly) 제5조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소형무기 및 경무기, 탄약 및 기타 관련 물자 협약(ECOWAS Convention on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heir Ammunition and Other Related Materials) 제6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특정 유형 무기에 관한 조약과 기타 국제법 규칙들은 무력 충돌 당사자들에게 무기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금지 및 제한을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문서들은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할 국가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의 무기 이전의 제한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됨(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1조,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1조, 또한 제31차 국제적십자사·월신자사 국제회의(2011) 결의안 2와 행동계획, 목표 5 등).
- 따라서 무기의 이전이 국제인도법 위반에 기여한다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들은 무기의 이전을 자제해야 하며, 무력 충돌 당사자들은 국제인도법을

-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함
-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할 국가의 의무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원칙으로 당사국들은 무기거래조약 및 지역 무기 이전 문서의 이행 시 관련 내용을 고려해야 함

□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시기

- ATT(무기거래조약)나 국제인도법은 진행 중인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무기 이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전을 금지하며, 일부 국가는 자국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진행 중인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무기 이전을 자제하고 있음
 - 무기거래조약 제6조, 제7조, EU 공통입장 2008/944/CFSP, 중앙아프리카 협약, ECOWAS 협약 등도 특정 상황에서 진행 중인 무력 충돌 당사자에 대한 무기 이전을 금지할 수 있음
- 또한, 1949년 제네바협약 4개에 공통으로 포함된 제1조의 모든 국가의 국제인도법 존중 및 존중 보장 의무에 따라, 국가 또는 비국가 무력단체는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기여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이전할 수 없음
 - 대량살상무기금지조약 제1조(핵무기금지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제III조, 화학무기금지협약 제I조, 대인지뢰금지협약 제1조, 집속탄금지협약 제1조, 특정지뢰의 이전은 특정재래식무기협약 개정 의정서 II 제8조(1996)에 따라 제한됨

□ 무기 이전 결정 시 국가들이 고려해야 할 지표와 정보

- ICRC는 이전될 무기, 탄약 또는 부품과 구성요소가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위험에 대하여 철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능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함
 - 수령국의 과거 및 현재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존중 기록
 - 공식적인 약속을 통해 표현된 수령국의 의도
 - 이전된 무기나 물품이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수령국의 역량
 - 무기가 심각한 국제인도법 또는 인권 침해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목적지로 전용되거나 이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조사
- 최종결정은 각 지표를 개별적으로 고려한 후 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 평가는 수령국 내 외교 사절단, 군사 간 교류, 수령국에서 활동하는 유엔 및 기타 기관의 보고서, 언론 보도,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 NGO 보고서, 국제 및 국내 사법당국의 판결 및 결정, 수령국의 군사 교리와 지침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 및 비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함

- 무기거래조약(ATT)이나 국제인도법은 일반적으로 무력 충돌 당사자인 비국가 무장단체나 기타 비국가단체에 대한 무기의 이전을 금지하지는 않음
 - 다만 이전된 무기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수령자가 국가든 비국가단체든 관계없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 무기 이전 결정 시 국가안보, 자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고려사항을 국가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무기 공급에 관한 국가들의 결정은 외교 정책, 국가안보, 수혜국의 자위권, 국제 평화 및 안보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과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내용은 인도적 고통을 줄이고 국제 및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기거래조약(ATT) 제1조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조약 당사국들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평화의 위협, 침략행위 및 자위권과 관련된 조치들을 위반하여 무기나 물품을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동 조약 제6조). 또한 무기를 수출하는 당사국들은 해당 무기나 물품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가능성 또는 해를 끼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함(동 조약 제7조)

□ 국제인도법 하에서 국가가 교전국에 무기나 군사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가가 무력 충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

- 국제적 무력 충돌에 참여하는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다른 교전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 작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충돌의 당사자가 됨
- 무력 충돌에 참여하는 비국가 무장단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는 해당 단체에 무기 등으로 장비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군사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조정하거나 지원하여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충돌의 당사자가 됨

- 무기거래조약(ATT)은 방위산업체나 기타 사업체, 그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제인도법 또는 인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기여할 위험이 있는지 자신들의 활동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함
 - 무기거래조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민간 사업체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예: 무기 이전 허가 조건 미준수), 해당 사업체는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국가 역시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 관할 내 민간인과 단체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들이 채택하는 국내 법률 및 기타 조치는 종종 민간인과 법인의 형사 또는 민사책임을 규정함
 - 민간 사업체를 대리하는 개인은 자신의 활동이 무력 충돌과 충분히 관련된 경우 국제인도법에 직접 구속될 수 있음
 -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그 무기를 사용해 전쟁범죄나 기타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관련된 개인에게 국제법상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민간 사업체는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에 반영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할 일반적인 기업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3) 전망 및 평가

- 상술한 규칙을 위반하고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무기를 이전하는 정부 관리 및 기업 직원 등 개인은 특정 상황에서 제공된 무기를 사용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기타 중대한 국제범죄의 실행을 지원한 혐의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국제위법행위에 대한 ILC 국가책임초안⁶⁹⁾ 제12조)

69) https://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draft_articles/9_6_2001.pdf (2025.10.30. 최종방문).

○ 또한, 무기를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서 해당 당사자의 국제적으로 부당한 행위 실행을 지원하거나 조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국제위법행위에 대한 ILC 국가책임초안 제16조),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중대한 위반상황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41조 제2항)

□ ICRC가 제안하는 국제인도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는 무기를 이전하기 위한 조건의 설정, 이전 제한 또는 중단, 신뢰구축조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예: 비축 관리 또는 국제인도법 교육), 인도 후 검증, 최종 사용 증명서 및 보증 등이 있음

○ 국가는 위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는데 완화 조치는 시기적절하고 견고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자와 수령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역량을 갖추고 선의로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만 국제인도법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국제인도법 위반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는 무기 이전을 자제해야 함을 지적

10

ICC 말리 사태: 1심재판부 알 하산에게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판결⁷⁰⁾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2024.06.26]

1) 개요

- 2024년 6월 26일 ICC 1심재판부(제10재판부)는 다수결로 알 하산 아그 압둘 아지즈 아그 모하메드 아그 마흐무드(Mr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이하 알 하산)에 대해 기소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음
- 이 사건은 2012년 4월 2일부터 2013년 1월 29일까지 무장단체 안사르 디네와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 지부(armed groups Ansar Dine and Al-Qaida in Islamic Maghreb; 이하 AQIM)가 통제하던 말리 북부 팀북투(Timbuktu)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와 관련되어 있음
- 2012년 4월부터 말리 정부에 대하여 무장반란을 일으키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무장단체들이 팀북투 시를 폭력적으로 장악하였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규칙과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였음⁷¹⁾
 - 새로운 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슬람 경찰과 헤스바(Hesbah) 등과 같은 기관이 설립되었고 이 기관의 무장 구성원들은 도시를 계속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규칙 준수를 강요하였음
 - 이러한 규칙과 금지 조치는 무장단체들에 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혹하게 부과되었는데

70) ICC,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Trial X, ICC -01/12-01/18, 26 June 2024; ICC Press Release, Situation in Mali: Mr Al Hassan convicted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imbuktu, 26 June 2024, <https://www.icc-cpi.int/news/situation-mali-mr-al-hassan-convicted-war-crimes-and-crimes-against-humanity-committed> (2025.10.30. 최종방문).; ICC Press Release, Mr Al Hassan sentenced to 10 years of imprisonment, 20 November 2024, <https://www.icc-cpi.int/news/mr-al-hassan-sentenced-10-years-imprisonment> (2025.10.30. 최종방문).

71) 해당 기간 동안 동 지역에서는 여러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무장반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들도 있었음

태형과 신체절단과 같은 엄중한 처벌이 가해졌음

- 무장단체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현지 주민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
 - 특히, 도시가 통제되기 전 팀북투 주민들은 사회활동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자유를 누리며 생활하고 있었으나 무장단체들의 엄격한 규칙과 금지 조치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한들이 생겨났음
 - 무장단체들의 도시 통제 기간 동안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는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남아 있음⁷²⁾

- 알 하산은 이슬람 샤리아를 적용하는 종교단체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샤리아나 이슬람 종교 전반에 관한 판단이 아니며, 도시를 통제했던 무장단체 내에서 행동한 알 하산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2) 주요 내용

- 재판부는 알 하산이 공포 통치의 핵심 인물로서 Ansar Dine/AQIM이 구축한 체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였음
 - 알 하산은 AQIM의 고위 지도부에 의해 모집된 후 이슬람 경찰(Islamic Police)의 고위직 간부(경찰서장)가 되어 경찰 업무 조직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음
 - 이슬람 경찰은 Ansar Dine/AQIM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구축한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알 하산은 그 일원으로 이슬람 법원 업무⁷³⁾에도 참여하였음. 또한 Ansar Dine/AQIM이 팀북투를 떠날 때까지 알 하산은 이슬람 경찰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음
 - 알 하산은 이슬람 경찰 내에서 자신의 직책은 이슬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전 세계 경찰이 하는 업무라고 재판관들에게 얘기하였고 유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72) 팀북투 시는 아프리카에서 역사적·영적 중심지로 큰 의미를 지닌 도시로 여겨져 왔으며, 이 도시의 일부 모스크와 묘소는 1988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무장단체가 도시의 여러 모스크와 묘소를 파괴한 것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73) 경찰 보고서 작성 및 서명, 피고인의 법원에서의 이송, 법원이 내린 판결과 형의 집행 등

- 재판부는 알 하산이 (1)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f)호 고문에 관한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2) 제8조 제2항 (c)호 (i) 잔인한 대우 및 (ii) 인격모독, (iv)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모든 사법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는 등 전쟁범죄를 직접 실행했거나(제25조 제3항 (a)호)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에 기여했거나 용이하게 한 것(제25조 제3항 (c), (d)호),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 또한 (1) 절단, 잔혹행위 및 정규 법원이 선고한 적법한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리는 행위에 관한 전쟁범죄; 그리고 (2) 제7조 제1항 (k)호 기타 비인도적 행위, (h)호 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에 관한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Ansar Dine/AQIM의 다른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기여한 혐의(제25조 제3항 (d)호)를 인정하였음

- 이후, 2024년 11월 20일 ICC 1심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음
 - 김벌리 프로스트 주심판사는 결정문 요약을 낭독하며 형량 선고 단계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이정표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형사책임,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의 인정, 동 사건에서 저질러진 중대한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감안할 때 3년 정도(2025년 8월 기준)만 더 복역하면 됨

3) 전망 및 평가

- 이번 재판은 말리 북부에서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를 다룬 ICC 최초의 사건이자, 안사르 딘(Ansar Dine)의 팀북투 점령과 관련된 ICC의 두 번째 사건⁷⁴⁾임
 - 동 판결은 말리의 국내 상황 혼란에 따른 사법부재로 인하여 12년 넘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책임추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최근에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로 말리 사태의 범죄발생 기간을

74) 이 단체의 또 다른 일원인 아흐마드 알-파키 알-마흐디(hmad al-Faqi al-Mahdi)는 팀북투 내 9개의 묘소와 모스크를 공격한 혐의로 2016년 유죄 판결을 받고 9년형을 선고받았음. 당시 동 판결이 기념물 파괴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나 고문 등 인도에 반하는 죄도 ICC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음

확대하였고 말리 북부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혐의로 이야드 아그 갈리(Iyad Ag Ghaly)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한 상태임

- 2016년 이후 말리 중부에서 발생한 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를 포함한 다른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등 말리 사태에 대한 수사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 1심재판부는 알 하산의 고문, 인격모독 행위, 잔혹한 대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선고를 내림

- 특히 종교 박해 및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선고를 내린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임

□ 그러나 팀북투에서 발생한 특정 성폭력, 제8조 제2항 (e)호 (iv)의 보호대상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vi) 성노예에 관한 전쟁범죄와 제7조 제1항 (k)호 강제결혼 형태의 기타 비인도적 행위, (g)호 성노예(강간)에 관한 인도에 반하는 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림

- 1심재판부는 팀북투를 통제하던 시기 강간과 성노예, 강제결혼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알 하산과 동 범죄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 재판부는 동 사건의 성범죄가 알 하산의 지휘 하에 있던 이슬람 경찰이 아닌 히스바(Hisba, 도덕경찰) 구성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판단하였음
- 말리 사태의 피해자 및 인권단체들은 동 판결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매우 심각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면서 말리 및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였음
 - ICRC는 현재 1억 9,500만 명의 민간인이 무장단체의 통제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동 사건은 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가 ICC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사건이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되었음

11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제출 및 유엔총회 결의 채택

A/79/88 [2024.07.01.],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RES/79/62 [2024.12.10.],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1) 개요

- 사무총장 보고서는 총회결의 78/241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LAWS와 관련한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로부터 받은 자료와 견해들을 정리하였으며, LAWS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인도적, 법적 도전 과제, 국제 평화와 안보에의 영향, 규제 방법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LAWS 논의에 대한 총회 결의 채택의 배경 및 경과
 - LAWS와 관련한 기술혁신과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국제인도법 준수와 인간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의 인식을 배경으로 채택됨
 - 정체 상태에 있는 CCW의 논의에서 나아가 모든 국가들이 다수결로 참여하는 총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제기되었음
 - 제1위원회의 총회 본회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찬성 166개국, 반대 3개국(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기권 15개국(중국, 인도, 이스라엘, 터키 등)으로 채택됨

2) 주요 내용

- 사무총장 보고서는 LAWS의 정의 및 특성, LAWS가 제기하는 도전과제와 우려 사항 및 잠재적 이점, 규제를 위한 형식과 규제 방안,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채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가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향후 조치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LAWS의 정의 및 법적 윤리적 도전과제

- LAWS의 정의와 자율성 수준에 따른 통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추가 개입 없이 목표물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광범위한 견해를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LAWS의 자율성 수준 즉, 인간의 통제 상실 정도에 따라 규제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LAWS와 관련한 주요 도전과제는 우선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의 준수와 관련한 것임
 - 구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LAWS가 민간인과 전투원을 효과적으로 구별하고 민간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있음
 -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LAWS가 공격 시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 불필요한 고통 금지에 대해서는 LAWS를 통해 과도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는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결정을 LAWS에 위임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무력 사용 결정에서 인간의 판단이 배제될 경우 분쟁의 비인간화 및 무력 충돌의 정당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LAWS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및 법적 공백 문제

- 다수 국가들은 LAWS 사용으로 국제인도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제조, 운용, 지휘 단계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군비경쟁 및 확산 위험의 제기

- LAWS의 개발과 배치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비국가행위자나 테러 단체에 의한 기술 사용의 위험성 역시 제기됨

□ LAWS의 잠재적 이점

- 반면, LAWS의 발전으로 인해 무력 공격 시 오류를 줄이고 정밀도를 높여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점, 위험한 환경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감시 및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하며, 지휘관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이점 역시 소개되고 있음

□ 의미 있는 인간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와 LAWS 규제에 대한 이중 접근방식

- LAWS에 대해 국제법이 완전히 적용된다는 데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LAWS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인간의 통제나 감독 없이 작동하는 LAWS는 금지되어야 하며, 금지되지 않은 LAWS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중 접근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다수 제시하고 있음

□ 사무총장은 ‘기계에 의한 인간의 자율적인 표적 설정은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선(moral line)’이라고 선언하여 LAWS 논의의 도덕적 핵심을 설정하였음

□ LAWS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채택을 촉구함

-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LAWS 관련 문제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며 2026년까지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없거나, 인간의 통제나 감독 없이 작동하는 LAWS에 대한 금지와 기타 LAW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음

□ 2024년 12월 10일 채택된 LAWS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앞서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역할을 강조함

□ 군사 분야 인공지능 및 자율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문제 인식을 공유하였음

-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무기체계의 자율성과 관련된 신기술 적용이 인도주의적, 법적, 안보적, 기술적, 윤리적 관점에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자율무기체계가 신종 군비경쟁의 위험, 기존 분쟁 및 인도적 위기 악화, 오판, 분쟁

발발 임계점 하강 및 확대, 비인가 수령자 및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 확산 등 글로벌 안보와 지역·국제적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와 영향에 대해 우려함

- 국제인도법 준수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LAWS 포함)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국제 평화와 안보 수호를 위해 법적, 기술적, 윤리적, 인도적, 안보적 관점을 포함하여 자율무기체계가 제기하는 모든 도전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함
- 제80차 유엔총회의 잠정 의제에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3) 의의 및 평가

- LAWS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및 총회 결의는 기존의 CCW 논의의 형식적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유엔 회원국 기타 국가들을 논의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유엔 차원의 협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위 보고서와 결의 채택은 또한 LAWS의 모든 단계에서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 이 개념을 LAWS 규제에서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의의가 있음

12

ICRC, 라에타티아 쿠르투아 주 유엔 ICRC 대표, 전시 환경보호는 민간인 보호의 핵심⁷⁵⁾

Environmental wartime protection is central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s
[2024.07.09]

1) 개요

- 2024년 7월 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리아 포물러 회의 “예방조치 강화: 환경문제에서 평화의 기회로”에서 라에타티아 쿠르투아(Laetitia Courtois) 주 유엔 ICRC 대표가 국제인도법과 자연환경에 관한 서약 채택의 고려와 국가별 실천 사례 공유를 권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2) 주요 내용

- 자연환경은 침묵하는 전쟁의 희생자로서 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복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분쟁, 기후위험, 환경 파괴가 교차 발생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취약성을 악화시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인프라가 파괴되고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며, 토양, 물, 공기 및 기타 생명 유지 자원의 오염을 통해 환경피해가 악화되는 등 적대행위 종료 이후에도 환경파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쟁지역 사회는 이미 적응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람, 시스템, 기관 모두 전쟁의 참화를 견디기 위해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75) ICRC, Environmental wartime protection is central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s, 2024.07.09., <https://www.icrc.org/en/unsc-arria-environment-peace> (2025.10.30. 최종방문).

- 자연파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을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통하여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장 취약한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인도법은 전쟁 시 환경에 가할 수 있는 피해에 제한을 두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전쟁 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촉진하는 방법 중 하나는 ICRC의 2020년 ‘무력 충돌 시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을 통해 재확인된 규칙들을 분쟁 발생 이전에 군대 교리, 훈련, 징계 체계에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것임
 - 실제로 분쟁 초기부터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부 군대는 군사 작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특정 환경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임명하기도 하였으며, 책임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도 하였음
 - 그리고 군사계획 시 특별히 중요한 환경 지역이나 취약 지역의 지도를 참조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함

3) 전망 및 평가

- 국가는 국제 및 국내 포럼, 플랫폼,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전시 환경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칙에 관한 인식을 일반 대중들과 함께 고취시켜 나가며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조치들은 전쟁의 물질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평화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 강화하며 안정, 평화, 회복으로 가는 길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국제인도법 위반과 자연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파괴가 특징인 분쟁에서는 개발과 평화가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시 환경보호는 민간인 보호의 핵심이므로 무력 충돌 당사자들이 전투 중 환경을 고려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관리하고 적응을 촉진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조치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므로 국제인도법과 자연환경에 관한 서약 채택을 국제사회가 고려해야 하며, 이 주제에 관한 국가간 실천 사례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제인도법의 강력한 준수는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취약성과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임
 -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강화의 필요성과 그러한 조치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이 긴급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

13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책 및 실행으로 인한 법적 결과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Israe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2024.07.19.]

1) 개요

- 유엔총회는 2022년 12월 30일 “동예루살렘 포함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관행” 결의 (A/RES/77/247)⁷⁶를 채택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5조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함

- 총회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장기간 점령, 정착촌 건설, 동예루살렘 합병 등의 정책이 야기하는 법적 결과에 대해 특히 자결권 침해와 점령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ICJ의 견해를 구하였음

- 결의에서 총회가 요청한 사항은
 -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장기간의 점령, 정착 및 합병과 관련한 차별적 입법 및 조치의 채택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
 -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이 점령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법적 지위로 인해 모든 국가와 유엔에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임

2) 주요 내용

- 2024년 7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76) UN Doc. A/RES/77/247(2022.12.30.), Israeli practices aff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발표함

- 재판소는 총회가 제기한 문제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과 관행의 유지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성격의 불법행위임을 확인하였음
- 점령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관행에 대해 점령은 국가가 외국 영토에서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지배는 항상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규칙,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토 취득 금지를 포함한 규칙, 그리고 자결권에 부합해야 함. 이에 비추어 점령이 장기화 된다는 사실은 국제법상 점령국의 점령지 계속 주둔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음⁷⁷⁾
 - 국가는 점령국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자신이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영토에 대해 일련의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점유는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상황이며, 점령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이스라엘의 정착촌 관련 정책에 대해
 - 2004년 7월 9일 ICJ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장벽 건설의 법적 결과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이스라엘 정착촌 및 관련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설립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
 - 2004년 권고적 의견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이 확대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스라엘은 모든 새로운 정착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모든 정착민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음
-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의 결과로 팔레스타인 인민은 장기간에 걸쳐 자결권을 박탈당했음이 인정되며, 영토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77) Advisory Opinion, para. 104-110.

팔레스타인 인민이 해당 영토의 천연자원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점 역시 인정됨.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 문제와 관련하여

-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 채택한 정책과 관행에서 드러나듯 이스라엘의 점령된 영토에 대한 주권을 획득하려는 행위는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 및 그에 따른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이스라엘이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 금지 및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위반한 것이 점령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 주둔하는 것의 합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는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주둔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함

- 재판소는 언급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법적 결과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이 계속 주둔하는 것의 불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 및 유엔에 미치는 법적 결과에 대해 판단함

- 이스라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관련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불법적으로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나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불법적으로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 유엔, 특히 의견을 요청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불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식과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함

3) 의의 및 평가

- 동 권고적 의견은 1967년부터 57년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정책과 실행이 점령유지 행위가 아닌 점령지의 영구적인 합병 및 주권 변경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이며 이는 국제법의 근본 규범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점령국의 국제인도법 준수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및 자국민의 정착촌 이주 행위, 장기간의 불법 점령 및 병합 정책,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차별 행위 등이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상 점령국의 불법적 인구 이동 행위, 헤이그 육전법규 및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상의 임시적 점령의 원칙 위반, 점령지 주민에 대한 차별 원칙 위반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의무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불법 상황을 방조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1조에 나타난 협약 존중 의무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으로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14

ICRC, 이스라엘과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법은 준수되어야 한다⁷⁸⁾

Israel and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The law of occupation must be respected [2024.07.19.]

1) 개요

- 1967년부터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주재해 온 ICRC는 해당 지역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간주하며, 이 지역이 여전히 이스라엘 점령 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점령된 지역은 국제인도법 조약 및 관습 규칙, 즉 교전국 점령 규칙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2) 주요 내용

- ICRC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서안지구에 민간 정착촌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행위가 ‘점령국이 점령지에 자국의 민간인 주민을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49조(6)⁷⁹⁾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함

78) ICRC, Israel and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The law of occupation must be respected, 2024.07.19., <https://www.icrc.org/en/article/special-appeal-climate-change-and-conflict> (2025.10.30. 최종방문).

79)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49조: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 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그러나,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철거는 물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의 경계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여 철거당한 자들은 당해 지구에서의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로 각자의 가정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전기의 이동 또는 철거를 실시하는 점령국은 가능한 한 피보호자들을 받아들일 적당한 시설을 설비할 것과 동 이동의 위생, 보건, 안전 및 급식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조건하에서 행하여 질 것 그리고 동일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산하지 않을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동 및 철거를 실시할 때에는 즉시 이익 보호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긴급한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전쟁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지구에 억류하여서는 안된다. 점령국은 자국의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자기의 점령지역으로 추방하거나, 또는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 이스라엘의 정착촌 사업은 점령당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국제인도법 위반과 인도적 결과를 초래해 왔음
 - 재산 몰수, 사유재산의 손상 및 파괴, 공공재산의 오용,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이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주민 및 재산에 대한 폭력 등이 자행되었음

□ 또한 ICRC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사업 전체가 점령법(law of occupation)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이스라엘의 정착촌 사업은 현장에 영구적일 위험이 있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점령 이전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인도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정착촌 사업은 점령법에 의해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권한으로 점령지의 자원이나 기타 자산을 자국 영토나 국민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점령지 주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ICRC는 동예루살렘의 합병과 같은 일방적인 병합 또는 서안지구 일부의 사실상의 병합이 보호 대상자들에게 미친 인도적 영향과 앞으로도 계속 미칠 영향, 그리고 점령법 하에서 불법상태를 지속시키는 과거 및 현재의 조치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음

- 일방적인 병합은 점령법의 규정과 의의,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원칙들과 양립할 수 없음
 - 이러한 병합은 국제법상 점령지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적대적(교전국) 점령법의 적용가능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국제인도법은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자가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ICRC는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반복적으로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해 왔음

- 또한 ICRC는 이스라엘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도 강조함

-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준수를 개선하는 것이 정착촌 사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하면서,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1조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그 준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음

ICRC, 제네바협약 75주년: 국제인도법에 대한 약속 재확인 및 정치적 우선순위로 설정⁸⁰⁾

Geneva Conventions 75th Anniversary: Reaffirm commitment to IHL and make it a political priority [2024.08.12]

1) 개요

- 발타자르 슈테헬린(Balthasar Staehelin) ICRC 사무총장 특사 겸 동아시아 지역대표가 2024년 8월 12일 주중 스위스 대사관에서 열린 제네바협약 75주년 기념행사에서 국제인도법의 보편적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음

2) 주요 내용

- 75년 전인 1949년 8월 12일 4개 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고 전쟁 중 인류애와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규범적 진전을 이루었음
 - 오늘날 전 세계가 비준한 이 4개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의 초석이 되었으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 협약들에 구속되는 것을 수용한다는 사실은 국제인도법이 구현하는 보편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지난 75년간 4개 제네바협약은 무력 충돌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인도법은 오늘날의 현대 무력 충돌에도 75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은 1949년 4개 제네바협약 이전부터 탄생하고 발전해 왔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해 세계 여러 문화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
 -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법적 전통과 문명, 문화를 보완하고 강화하며, 모든 인류의 공통 유산으로서 모든 전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 세계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음
 -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기본적인 인간 가치를 지키는 규칙을 통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네바협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임
 -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의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투에 참여하지

80) ICRC, Geneva Conventions 75th Anniversary: Reaffirm commitment to IHL and make it a political priority, 2024.08.12., <https://www.icrc.org/en/statement/geneva-conventions-75th-anniversary-reaffirm-commitment-ihl-and-make-it-political> (2025.10.30. 최종방문).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여 무력 충돌 속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며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4개 제네바협약 채택 7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인도법과 그 완전한 준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120건 이상의 무력 충돌이 진행 중인 현재, ICRC는 각 충돌 현장에서 인도적 비극의 규모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국제인도법이 준수되지 않을 때 분쟁의 인도적 결과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의 미준수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주장하더라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의 효과를 저해함

- 무력 충돌 중 민간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주요 원인은 규범의 부재나 불충분이 아니라 기존 규범의 이행의 실패에서 발현되는 것임
 -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보호력이 약화되는 현상은 시급히 중단되어야 하며 국제인도법을 정치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
- 국제사회는 무력 충돌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인도법이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은 단지 문서상의 법이 아니라 실천되는 법이어야 함

□ 국제사회는 국제인도법 존중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인도법 준수라는 보편적 문화를 촉진해야 함

- 국가들은 국내법 및 절차에서 국제인도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며, 위반 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함
- 국가들은 국제인도법이나 국제인도법 발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도구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제인도법 존중과 준수를 적극 옹호해야 함
 - 비국가 무장단체도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추구할 때, 국제인도법 준수가 평화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함

-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를 금지함으로써 국가는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포로와 억류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됨
- 잔혹함과 비인간성은 폭력과 불안을 낳지만, 국제인도법 준수는 평화와 안정을 향한 길을 열 수 있음
 - 국가는 국제인도법의 설계자로 이를 촉진하고 집행할 정치적 의지와 끈기를 보여야 함
 - 국제인도법 준수 의지가 없는 국가에 대해 ICRC가 국제인도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국제인도법을 엄격히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serious violations: an important tool against impunity [2024.10.14]

1) 개요

- ICRC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무력 충돌 시, 1949년 제네바협약 및 제1추가의정서에 따라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는 국제인도법 위반과 기타 심각한 국제인도법의 위반은 전쟁범죄에 해당됨
 - ICRC는 국가들이 국제인도법 존중 및 존중 보장 의무에 부합하는 형사 제재를 규정하는 입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증진하며, 불처벌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임
 - 또한, 책임의 추궁은 민간인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수 있음
 - 따라서 ICRC는 이러한 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미래의 무력 충돌에서 억제 역할을 하며 국제인도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ICRC는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초안 조문’을 기초로 협상 중인 인도에 반하는 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채택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예의 접근을 강조하고 국제인도법 및

81) ICRC,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serious violations: an important tool against impunity, 2024.10.14., <https://www.icrc.org/en/statement/79-UN-crimes-against-humanity-investigating-and-prosecuting-serious-violations-tool-against-impunity> (2025.10.30. 최종방문).

국제인권법 위반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협약이 체결되는 것을 환영함

- ICRC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협약이 무력 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에서 인도적 보호를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함

- ICRC는 국가들이 이러한 범죄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제법적 시스템 강화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지지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마련을 촉진할 것을 요청함

17 ICC 우크라이나 사태: 전심재판부 II 푸틴의 체포 및 인도에 협조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총회에 회부⁸²⁾

Ukraine situation: ICC Pre-Trial Chamber II finds that Mongolia failed to cooperate in the arrest and surrender of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and refers the matter to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2024.10.24.]

1) 개요

- 2023년 3월 17일 전심재판부 I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
 - 2024년 8월 ICC 사무국과 몽골은 푸틴의 몽골 방문 예정과 ICC의 협조 요청에 관한 일련의 외교문서를 교환하였음
 - 몽골은 ICC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관습국제법 상 현직 국가원수가 향유해야 할 면책특권 및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전심재판부 II는 협의 시기의 적절성을 비판하며 제3국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공무원의 개인의 형사책임 면제는 ICC 절차상 주장될 수 없으며, 로마규정 제98조에 따른 면책특권 포기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2024년 10월 24일 ICC 전심재판부 II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년 9월 2일 몽골을 방문한 동안 그를 체포하지 않고 재판소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로마규정 위반이자 재판소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동사안을 당사국총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음
 - 전심재판부는 로마규정 제87조 제7항에 따라 몽골의 협조 미이행이 ICC의 기능과

82) ICC Press Release, Ukraine situation: ICC Pre-Trial Chamber II finds that Mongolia failed to cooperate in the arrest and surrender of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and refers the matter to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 24 October 2024 <https://www.icc-cpi.int/news/ukraine-situation-icc-pre-trial-chamber-ii-finds-mongolia-failed-cooperate-arrest-and> (2025.10.30. 최종 방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총회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전심재판부는 현직 국가원수가 향유하는 면제와 불가침성을 존중하여 푸틴을 체포 및 인도하라는 ICC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않은 몽골이 로마규정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2) 주요 내용

□ 로마규정 제27조 공적지위의 무관련성 원칙에 대한 해석

- 개인의 형사책임 면제를 포함한 어떠한 국가원수의 관할권 면제도 ICC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면책 포기 또한 필요하지 않음
 - 로마규정 제27조는 피고인의 공적지위의 무관련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국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하는 국가는 공적지위나 국적에 관계없이 ICC 영장이 발부된 개인을 체포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전심재판부는 ICC가 국가의 개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마규정 제86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전심재판부는 재판소가 국제법의 기본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포함한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므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는 기능을 재판소가 수행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음
- 전심재판부는 제27조가 ICC의 재판관할권뿐만 아니라 재판소와의 협력 의무를 '실현'하는 '기소 또는 인도' 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제27조가 당사국들에게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면책특권 또는 특별 절차 규정을 인정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한다고 해석하였음
- 또한 전심재판부는 제27조의 해석이 실질적으로 재판소가 체포 및 인도를 요청하는데 있어 당사국이 협력해야 할 의무와 중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의 고위 공무원의 면책특권 및 관련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하는 수용국(방문국)의 양자적 의무와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그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자 간 의무는 로마규정의 목적과 상충할 수

있는 어떠한 양자간 약속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고 설명함

3) 전망 및 평가

- 전심재판부의 동 결정은 현직 국가원수 및 고위직 공무원의 체포 및 인도를 위해 로마규정 당사국들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ICC의 오랜 노력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
 - ICC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및 인도 요청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특히 많은 난관이 있었음
 - 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체포 및 인도 요청의 이행은 국제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아니라 국내 당국의 집행관할권 문제임
 - 따라서 ICC가 외국의 고위 공무원의 체포 및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로마규정 당사국인 방문국이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의무 충돌을 야기하게 될 여지가 있음
 - 2023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하려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로마규정을 이행하는 국내법에 따라 남아공 정부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불이행 상태였던 국가들도 로마규정에 따른 ICC 협력의무 이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단의 알-바시르를 체포 및 인도하지 못하여 제87조 제7항에 따른 불이행 판정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으로부터 로마규정 및 이행법 위반 판결을 받았음

- 또한 동 사건은 현직 고위 공무원의 불가침성을 존중한다는 방문국의 양자적 의무와 로마규정 당사국의 다자적 협력 의무 간 잠재적 충돌을 명확히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

- ICC에 대한 국가의 협조 의무는 대세적 의무(*erga omnes*)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전심재판부는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인류의 이익을 위해 규정에 합의된 의무를 의미있게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선의로 로마규정에 가입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ICC는 인류의 양심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를 예방, 조사, 처벌할 대세적 의무(*erga*

omnes)가 있다고 하며, 이 대세적 의무(*erga omnes*)의 성격이 당사국의 ICC에 대한 협력의무를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음

- 또한 전심재판부는 ‘국제사회 전체의 일반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로마규정 당사국이 이와 같은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협력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물론 대세적 의무(*erga omnes*) 이행에 대한 공통 법적이익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규칙의 중요성은 수평적 양자 의무를 초월하는 수직적 성격을 가지므로 양자 간의 의무보다 다자간 대세적 의무(*erga omnes*)가 우선한다고 해석한 것임
 - 로마규정 당사국의 의무는 상충하는 양자 관계상 국제의무를 대체할 정도의 성격을 가지므로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면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또한 로마규정 상의 의무와 외교 관계 분야의 양자간 의무의 성격 자체를 구분하고 있음
 - 국가 간 수평적 관계에서는 개인의 형사책임 면제가 “동등한 자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par in parem non habet jurisdictionem) 원칙이 적용되지만 재판소와 당사국 간 수직적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임.
 - 재판소에 대한 국가의 수직적 의무는 전통적 국가 간 면제 원칙을 초월하는 것으로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수평적 관계와 충돌하더라도 로마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함
 -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 상 개인의 공적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규칙이 ICC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즉 동조는 국제법상 인적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체포 및 인도 요청에 대한 협력 거부의 근거로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임

18

ICC 팔레스타인 사태: 전심재판부 I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⁸³⁾

Situation in the State of Palestine: ICC Pre-Trial Chamber I rejects the State of Israel's challenges to jurisdiction and issues warrants of arrest for Benjamin Netanyahu and Yoav Gallant [2024.11.21.]

1) 개요

- 2024년 11월 21일 ICC 전심재판부 I은 로마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스라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
- 팔레스타인은 2015년 1월 2일 로마규정에 가입하였고, 2018년 5월 22일 팔레스타인 사태를 소추관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21년 2월 전심재판부 I은 다수결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영토에 ICC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동년 3월 소추관은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 전심재판부는 2023년 10월 8일부터 최소 2024년 5월 20일까지(소추관이 체포영장 신청을 제출한 날까지)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와 관련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

83) ICC Press Release, Situation in the State of Palestine: ICC Pre-Trial Chamber I rejects the State of Israel's challenges to jurisdiction and issues warrants of arrest for Benjamin Netanyahu and Yoav Gallant, 21 November 2024, <https://www.icc-cpi.int/news/situation-state-palestine-icc-pre-trial-chamber-i-rejects-state-israels-challenges> (2025.10.30. 최종방문); Verdict, Samuel Estreicher and Matthew Fouracr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sues Arrest Warrants Against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and Former Defense Minister Gallant 5 Feb 2025" <https://verdict.justia.com/2025/02/05/international-criminal-court-issues-arrest-warrants-against-israeli-prime-minister-netanyahu-and-former-defense-minister-gallant> (2025.10.30. 최종방문).

2) 주요 내용

□ 전심재판부는 2024년 9월 26일 이스라엘이 제출한 두 건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첫째, 이스라엘은 로마규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국가 상황에 대한 ICC의 관할권, 특히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전심재판부는 팔레스타인 영토 관할권을 근거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로마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둘째, 이스라엘은 로마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추국이 조사 개시 통지를 자국 당국에 새로 제공할 것을 재판부에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24년 5월 20일 소추관이 제출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심사를 포함하여 관련 상황에 관한 ICC 내 모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함
 - 재판부는 또한 로마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각하였는데, 소추관이 2021년 이스라엘에 수사 개시를 통지하였을 때 당시 소추관의 명확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수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였음
 - 또한 전심재판부는 해당 상황에서 수사의 범위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체포영장 신청 심사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근거

- 전심재판부는 1949년 제네바협약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 전심재판부는 2023년 10월 8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네타냐후 총리 등이 최소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용품, 연료와 전기 등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호를 촉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인도에 반하는 죄가 저질러졌다고 지적함
 -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등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대한 접근 제한에 명확한 군사적 필요성이나 국제인도법상 다른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이 승인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음

-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 등이 전쟁수단으로서 ‘기아’라는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재판부는 식량, 물, 전기, 연료 및 특정 의료 물자의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인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양실조와 탈수 등의 이유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았음
 - 다만 전심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제노사이드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살인이라는 인도에 반하는 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그리고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 등이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한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소추관이 제출한 자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공격으로 인정되는 두 건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 등이 범죄예방 또는 억제조치나 사건을 관할 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판단하였음

3) 전망 및 평가

- ICC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체포영장 기각을 시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 등을 체포하고 인도하라는 ICC의 요청을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현직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번 결정은 ICC가 국가원수에 대한 기소를 할 때 관습국제법을 이유로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ICC의 결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 인적 면제를 규율하는 관습국제법이 국제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몽골에 대한 ICC 전심재판부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ICC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다자간 의무는 로마규정의 목적과 상충할 수 있는 약속에 의해 변경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 특히 로마규정 제27조는 법적 체계 내에서 기본적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추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로마규정 제98조는 ICC 전체 체계가 기반하는 제27조에 명시된 근본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고 해석되며, 제98조는 ‘순수한 절차적 규정’으로 외교관 면제를 보호하는 특정 공무원 및 건물에 관한 정부 활동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함

□ **그러므로 네타냐후 총리 등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은 결국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국가원수 면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여 이행하느냐와 관련있음**

- 로마규정 가입국들 중 유럽 국가들은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로마규정을 100% 이행한다”며 체포영장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관계자들도 네타냐후 총리 등을 체포할 것임을 시사하였음
 - 그러나 프랑스 외교부는 “국가는 ICC 비당사국의 면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의무와 상충하는 행위를 요구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면책이 네타냐후에게 적용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은 ICC에 대한 일반적 지지는 표명했으나 특정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19

유엔총회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합의 결의 채택

A/RES/79/239 [2024.12.24.]⁸⁴⁾

1) 개요

-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적용이 제기하는 문제와 정책 방향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 결의를 통해 군사 영역에서 AI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 및 책임 소재 등의 논의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식 논의로 제기됨
-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결의안을 상정하여 제7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표결 후 채택되었으며, 2024년 12월 24일 제1위원회 통과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결의로 최종 채택됨

2) 주요 내용

- 군사 분야 인공지능 발전 상황과 잠재적 영향
 - 각국이 군사 분야에서 무기, 무기체계 및 기타 전쟁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인공지능을 점차 통합하기 시작했음
 - 관련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 특히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지하여 공통된 이해를 증진하여 그 혜택을 활용하고 사용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 및 이를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제기됨
-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우려 사항
 - 군사 분야 인공지능이 인도주의적, 법적, 안보적, 기술적, 윤리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도전과 우려 사항, 그리고 그러한 적용이 국제 안보와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군비경쟁, 오판, 분쟁 발생 및 확대 가능성 감소, 비국가행위자로의 확산 위험 등)을 유념함

84) UN Doc. A/RES/79/239(2024.12.24.),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특히 데이터셋 편향성이나 인공지능의 기타 알고리즘적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별, 인종, 연령 또는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가능한 결과도 주목하고 있음
- 국제법, 특히 유엔 헌장,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이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전 생애 주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당 사항에 적용됨을 확인
 - 군사 분야에서 적용되는 인공지능 역량의 전 생애 주기(사전 설계, 설계, 개발, 평가, 시험, 배치, 사용, 판매, 조달, 운영 및 폐기 단계 포함)에 걸쳐 해당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국제인도법 등이 적용됨을 상기하였음
- 군사 분야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한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촉구
 - 이를 위해 각국이 군사 분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범 사례 및 교훈을 교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공 및 지식 공유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함
- 사무총장에게 LAWS 분야 이외의 군사 분야 인공지능 적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기회 및 도전에 관한 실질적 보고서 제출을 요구함
 - 해당 보고서에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시민사회, 과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의견을 수신된 원문 그대로 상기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음
- 제80차 총회 임시 의제로 포함하기로 함
 - 총회 임시 의제 일반적·완전한 군축 항목하에 ‘군사 분야 인공지능 및 국제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함

3) 의의 및 평가

- 동 결의는 그간 논의되던 LAWS 분야에 더해 ‘군사 영역에서의 AI 문제’를 논의한 유엔총회 결의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해 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⁸⁵⁾의 활동을 바탕으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냄

- 군사 영역 AI가 야기하는 국제 안보 문제를 유엔총회 차원의 공식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구체적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음

85) Responsible Eth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2023년 2월 15-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차 회의, 2024년 9월 9일-1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Ⅱ. 최근 3년간 국제인도법의 동향 및 이슈

3. 2025 년

1

ICC, 필리핀 사태: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 ICC 구금 중⁸⁶⁾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Rodrigo Roa Duterte in ICC custody [2025.03.12]

1) 개요

-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25년 3월 12일 국제형사재판소 구금시설로 인도되었음
 - ICC 전심재판부 I은 ‘인도에 반하는 죄’의 살인 혐의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필리핀 당국이 체포하여 구금상태로 ICC로 인도되었음
 - ICC 소추관실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필리핀 영토 내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주장되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24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2021년 9월 15일 조사개시를 승인하였음
 - 필리핀 정부의 조사 연기 요청으로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23년 7월 18일 ICC 항소재판부는 필리핀 사태⁸⁷⁾와 관련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음

- 필리핀은 2011년 11월 1일 ICC에 가입하였으나 2018년 3월 17일 ICC 탈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2019년 3월 17일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음(로마규정 제127조)
 -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필리핀이 로마규정 가입국이었던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이 인정되었음

2) 주요 내용

- ICC 소추관실은 2025년 2월 10일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살인,

86) ICC, Situation in the Philippines: Rodrigo Roa Duterte in ICC custody, 2025.03.12., <https://www.icc-cpi.int/news/situation-philippines-rodrido-roa-duterte-icc-custody> (2025.10.30. 최종방문).

87)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C-01/21-01/25.

고문 및 강간을 포함한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였음

-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이라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 간접공동정범으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전심재판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 데스 스쿼드(Davao Death Squad, DDS)의 수장이었을 때 조직적 정책에 의거하여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고, 이후 필리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마약 범죄자 등 범죄 용의자에 대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이러한 공격이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3) 전망 및 평가

- 이후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법정 첫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재판부는 피의자의 신원과 피의자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확인, 피의자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혐의와 로마규정에 따른 권리를 통지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임
- ICC의 역할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 현재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적 책임 메커니즘을 준수하려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음

2

ICRC, 법에서 (지역) 행동으로: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지역 보고서 공개⁸⁸⁾

From law to (regional) action: Regional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25.03.26]

1) 개요

-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은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은 국내법과 국내 정책 및 관행에 국제인도법을 적절하게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
 - ICRC는 특히 각 지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국제인도법 이행의 범위와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지역기구들은 국제인도법의 국내 차원에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국제인도법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기구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ICRC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음
 - 이번 보고서에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이하 ECOWAS), 아랍연맹(League of Arab States, 이하 LAS),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이하 OAS),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국제인도법 국내 이행 정도를 확인 및 검토하고 있음

- ICRC는 지역기구들과 협력하여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지역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조치 채택에 관한 주제별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실행하고 있음
 - 그 외에도 ICRC는 지역행동계획(regional plans of action) 채택을 지원하면서 연례 검토회의와 전문가 워크숍을 공동주최하는 등 지역기구들이 초지역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88) From law to (regional) action: Regional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25.03.26., <https://www.icrc.org/en/report/regional-reports-ihl-implementation> (2025.10.30. 최종방문).

- 이번 보고서의 대상이 된 지역기구 외에도 ICRC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 ICRC는 2001년부터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집행위원회와 협력해 왔으며,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ECOWAS-ICRC 연례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음
 - 동 회의는 각국의 사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여하는 ECOWAS 회원국 전문가들(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만나 ECOWAS 국제인도법 행동계획⁸⁹⁾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파악한 후 실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적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매년 선정된 주제에 대한 기술역량도 강화하고 있음
- 서아프리카에서의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보고서
 - 2024년 보고서: 2024년 연례회의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인도법 존중 강화에 관한 성찰, 경험교환 및 우수사례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기회였음. 또한 회원국들은 제34차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국제회의 전날에 ECOWAS 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하였음
 - 2023년 보고서: 제19차 국제인도법 연례 검토회의(2023년 9월 아부자 개최)에서는 참가자들이 ECOWAS 국제인도법 행동계획의 이행성과를 검토하고 2024년 회의 논제의 우선순위를 정의하였음. 특히 ‘국내실향민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한 회의 세션에서는 회원국과 아프리카연합, 유엔, 국내실향민 모니터링 센터(IDMC), ECOWAS, ICRC 및 기타 기관 전문가들이 캄팔라 협약의 효과적 이행 방안과 그 원칙의 적용보장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22년 보고서: 제18차 국제인도법 연례 검토회의(2022년 3월 온라인 개최)에서는 2022년 ECOWAS 국제인도법 행동계획 이행진전을 검토하고 2023년 회의 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 이번 연례회의의 주제는 ‘국제인도법 존중 및 그 완전성 강화’로

89)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후 2026년까지 연장) ECOWAS 국제인도법 행동계획은 ‘ECOWAS-ICRC 2018 국제인도법 이행보고서’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file_list/2018_ecowas_ihl_meeting_publication.pdf (2025.10.30. 최종방문).

무력 충돌 시 범위반 처벌을 규율하는 법적 제도 명확화의 필요성, 국가의 국제인도법 위반의 범죄화 의무,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제인도법의 완전성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 2020년 보고서: 제17차 국제인도법 연례 검토회의(2020년 12월 온라인 개최)의 논의주제 중 하나는 ‘팬데믹이 무력 충돌 및 기타 폭력상황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기술 세션에서는 특히 인도적 접근, 수감자 보호, 팬데믹 기간 법집행 작전에서의 무력사용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음
- 2019년 보고서: 제16차 국제인도법 검토회의(2019년 9월 아부자 개최) 참가자들은 2019년 국제인도법 이행의 성공과 도전사례를 살펴보고 2020년 회의 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음. 또한 구금 및 성폭력 분야에서의 경험과 우수 실천사례를 공유하였음

□ 아랍연맹(LAS)

- ICRC는 아랍연맹(LAS)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양해각서에도 명시되어 있음.
- 첫 번째 아랍전문가 지역회의는 1999년에 개최되었는데 아랍지역에서 국제인도법 이행의 초석이 되었음. 이후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카이로 선언과 동 선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후속위원회의 창설로 이어졌음
- LAS와 ICRC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지역회의를 공동주최하고 있음. 회원국의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정기회의는 아랍국가 내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간 협력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음
- 정기 보고서: ICRC는 2003년부터 아랍연맹과 협력하여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공동보고서를 발행해 왔음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상황을 검토한 제8차 정기보고서(Eighth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t the Level of Arab States 2015-2018)⁹⁰⁾에서는 국제인도법의 보급 및 통합을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과 개별 정부들의 활동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수년 간의 분쟁으로 겪은 도전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기울인 노력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랍국가들이 인도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국제인도법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90)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_new/file_list/8th_periodic_report_en_web.pdf (2025.10.30. 최종방문).

□ 미주기구(OAS)

- ICRC는 1996년부터 미주기구(OAS)와 협력하고 있으며 무력 충돌 피해자들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지원해 왔음. 이 파트너십 역시 양해각서로 공식화되어 있음
 - OAS는 주요 정치, 법률 및 사회 포럼으로서 미주 34개국과 상임 옵서버 75개국과 유럽연합이 가입되어 있음
 - 이 파트너십 하에 진행되는 활동에는 연례 국제인도법 과정, 2년마다 개최되는 회원국 대표를 위한 국제인도법 특별세션, 임시주제별 세션, 정기적 정보교환, 그리고 ICRC가 참여하는 OAS 주최 회의 및 심포지엄이 있음
- 미주국가들의 국제인도법 조약 참여 및 국내 이행
 - 2020-2021 보고서: 동 보고서는 ICRC가 작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국제인도법 조약의 비준, 적용 및 보급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강조하고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제33차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회의(2019년 12월, 제네바) 결의안 1호(국제인도법을 더 가깝게: 국제인도법의 더 나은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에 근거하여 국가들이 취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음
 - 2018-2019 보고서: 2018년과 2019년 국제인도법의 비준, 적용 및 홍보를 통하여 이루어진 질적 및 양적 진전을 요약 제시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미주지역 내 설치된 20개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의 중요한 기여와 동 위원회들의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는 ICRC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하여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제33차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회의 등 주요 포럼에서 국제인도법 및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공식 입장 준비를 지원하는 국가 및 국가 국제인도법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 ICRC는 1999년 브뤼셀에 대표부를 설립한 이래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왔으며, EU는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on promoting compliance with IHL)⁹¹⁾을 2005년 채택하는 등 국제인도법 존중을 대외관계 접근방식의 핵심으로 삼아 왔음
 - ICRC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이 지침은 국제인도법 존중의 촉진과 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써 해당 분야의 EU 정책의 기반을

91) Updated European Union Guidelines on promot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2009/C 303/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09XG1215%2801%29> (2025.10.30. 최종방문).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동 지침은 비EU 국가와의 관계에서 EU의 행동방식을 개괄하고, 특히 EU와 협력하거나 EU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제인도법 규칙과 원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ICRC는 EU 지침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화하려는 EU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함

○ 2018년부터 EU 이사회 국제법 실무그룹(COJUR)은 EU 지침 이행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 EU 이사회 법률 서비스, 유럽대외행동청(EEAS), 유럽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동 보고서는 EU 및 그 기관들(회원국이 아닌)이 EU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토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매년 7, 8월에 발표되는 보고서는 동일한 구조로 작성되는데 전년도 활동(공개 성명, 정치적 대화 및 대표 활동, ICRC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한적 조치, 무기수출 및 통제, 위기관리작전 및 국제인도법 훈련(군사 및 민간 임무 모두 포함), 국제형사재판소 및 기타 재판소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검토하면서 EU의 국제인도법 증진 성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EU 가이드라인 보고서(2023년 1월-2023년 12월)

- EU는 조약 등 국제인권문서에 대한 가입과 이행을 장려하고 있으며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건 인프라 및 의료 인력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에 의거하여 인도주의 공간에 대한 특별보호를 옹호하고 있음
- 동 기간 동안 EU와 회원국들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국제인도법 위반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과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 및 기타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국제인도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음(무력 충돌에 관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무기금수조치 등)
- 무력 충돌에 휘말린 인구가 국제인도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보편적 원칙의 수호자인 EU와 회원국들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과 함께 기본규칙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앞으로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전망 및 평가

□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지역보고서는 다양한 지역기구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데, 국제인도법에 대한 집단적 준수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지역보고서는 대체적으로 국내 및 지역 차원에서 국제인도법 기준의 적용에 대한 노력 및 성과, 도전과제 및 격차를 제시하면서 회원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적대행위 억제의 근원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ICRC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국가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쟁주체 뿐만 아니라, ICRC, 안전보장이사회, 지역기구, 국내 적십자사, 비정부기구(NGO), 학술 연구자 등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3 ICRC: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권고안 제출

ODA/2025-00029/AIMD [2025.04.17]

1) 개요

- 보고서는 2025년 초 유엔 사무총장이 요청한 군사용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및 국제기구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ICRC의 공식 제출 문서임⁹²⁾
- ICRC는 군사 분야 AI의 개발과 사용이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동 보고서를 작성함

2) 주요 내용

- 인간중심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통제와 판단 유지를 핵심 사항으로 함
 - 군사 AI의 모든 응용 분야에서, 무력 충돌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함
 - AI 사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에 중점을 두고
 - 군사 작전에서 AI 사용을 명령하거나 사용하는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함
 - AI 기반 군사체계 운용 시 “의미 있는 인간 개입(meaningful human control)”이 이루어지도록 운용 규정을 제정해야 함
- 기존 국제인도법이 군사 작전에서 수단·방법으로서 AI를 포함한 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국제인도법은 AI의 군사적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지만, 무기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전쟁 수행에 사용될 때 AI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고 엄격한 제약을 가함

92)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ICRC submits recommendations to UN Secretary-General,

<https://www.icrc.org/en/article/artificial-intelligence-military-domain-icrc-submits-recommendations-un-secretary-general> (2025.10.30. 최종방문).

- 국가들은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의 모든 단계(개발·시험·배치·운용)에서 국제인도법 원칙(구별, 비례, 예방조치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함

- AI 시스템 자체가 아닌,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간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는 AI 시스템이 무기 시스템의 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이버 작전 및 구금 작전에 사용될 경우, 해당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함

□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AI-DSS)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머신러닝 기술이 통합된 AI는 인간 사용자가 시스템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제인도법 준수를 어렵게 할 수 있음
- AI-DSS 출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사용자가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공격의 합법성을 평가하기보다는 AI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게 할 위험이 있음
- AI-DSS 가 데이터에 내재된 성별, 인종, 민족 또는 장애를 기반으로 한 문제적 편향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음

□ 예측불가능한 AWS에 대한 금지와 예측가능 AWS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설계 또는 운용방식 상 인간 사용자가 작동 및 효과를 이해, 예측, 설명할 수 없는 AWS에 대해서는 금지를 권고하며, 예측가능한 AWS에 대해서도 필요한 인간 통제의 수준 및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 국가들은 군사용 AI에 대한 규범적·정책적·운용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다자간 논의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

□ 주요 권고 사항

- 기존 국제인도법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
- 인간의 통제 및 책임체계를 유지할 것
- 설계·시험·운용 단계에서 투명성 및 검증가능성을 확보할 것
- 다자간 협력 및 역량강화를 증진할 것
-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등의 검토 및 준비

3) 의의 및 평가

- 법적·윤리적·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군사용 AI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법적 측면에서 AI 시스템의 예측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을 무기검토 및 책임제도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단순한 원칙을 넘어 구체적 설계 운용 요건으로 제시하였음
 - 기계가 인간의 생사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인간존엄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다는 윤리적 한계선을 명확히 하였음

- 국제사회의 다자간 논의 및 국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함
 - AWS 논의 범위를 군사용 AI 전반으로 확장시켜 향후 유엔 및 국가 정책 거버넌스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였음
 - 예측불가능한 AI와 완전 자율 공격체계 등에 대해서는 기존 IHL로 대응할 수 없으며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영역임을 밝혀 새로운 국제조약 제정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음

4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총회 결의 및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S/2025/271 [2025.05.2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A/RES/ES-10/27 [2025.06.12.], 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1) 개요

□ 민간인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2025)⁹³⁾

- 사무총장 보고서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의제의 하나로 매년 작성됨. 2025년 5월 22일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동 보고서는 2024년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와 및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상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 민간인 보호 및 법적 인도적 의무 준수에 관한 총회 결의(2025) A/RES/ES-10/27(2025)⁹⁴⁾

- 팔레스타인에서의 민간인 보호 및 법적 인도적 의무 준수에 관한 논의에서 채택된 결의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관련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2) 주요 내용

- 2024년에도 민간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무력 충돌의 가장 큰 피해자였으며, 강제 이주민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93) UN Doc. S/2025/271(2025.05.22.),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94) UN Doc. A/RES/ES-10/27(2025.06.12.), 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 보고서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안일한 해석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고 있으며, 민간인 보호와 국제인도법 존중이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Explosive Weapons in Populated Areas, EWIPA)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
 - 대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유발하는 EWIPA의 파괴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각국이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의 EWIPA 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인도주의 인력 및 유엔 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강조하고 이러한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함
- 민간인과 군사적 목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인간의 감독 없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계 및 사이버 작전과 같은 신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기술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규제가 시급히 필요함
- 허위 정보와 증오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적 과제를 다루며, 사실에 기반한 독립 정보를 수호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 기반 접근법’에서 ‘완전한 보호’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옹호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민간인 피해를 예측, 예방 및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민간인 보호 및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에 관한 총회 결의 (2025, ES-10/27)
 - 모든 테러 행위와 무차별 공격을 포함하여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 도발 행위, 선동 및 파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간인에 대한 강제 이주를 거부함

- 유엔과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긴급히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식량, 물, 전기, 연료, 피난처 등)이 모든 관계자에 의해 지체없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필요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점령지의 주민에게 필수 물품이 부적절하게 공급되는 경우, 점령국은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촉진해야 하는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강조함
- 민간인에 대한 기아(starvation)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인도적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함

3) 의의 및 평가

- 민간인 보호와 관련한 위 보고서 및 결의는 무력 충돌 중 민간인의 생존권과 인도적 지원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상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선언을 보여주고 있음

5

우크라이나 임시 점령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A/HRC/59/67 [2025.05.28.]⁹⁵⁾

1) 개요

-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임시 점령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 이 보고서는 유엔총회 결의 제79/184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인권이사회 제59차 회기에 제출한 것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임시 점령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이 점령국으로서 자행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보고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임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즉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 그리고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일부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양상을 기록하고 있음
-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각한 권리 침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가 조사 또는 처벌되지 않았음
- 생명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자의적 구금 및 강제 실종,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불법 살해 행위 등이 보고되었음
 - 러시아 점령 당국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사례가

95) UN Doc. A/HRC/59/67(2025.05.28.),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of Ukraine, including the 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and the city of Sevastopol.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강제 실종 사례도 다수 확인됨

- 구금된 민간인과 전쟁 포로에 대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심각한 구타, 성폭력, 비위생적인 구금 환경 등이 포함됨

□ **기본적 자유의 침해로 표현의 자유, 종교·사상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확인할 수 있음**

- 평화적인 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언론 매체, 종교 기관, 집회 장소가 폐쇄되거나 징발되었음
-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개신교 등의 종교 단체에 대한 박해가 행해짐
- 개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등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 확인됨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는 교육권과 재산권 침해가 특히 문제됨**

- 국가 교육과정을 러시아어로만 시행하거나 교육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을 심어주거나 러시아의 이념에 맞게 세뇌하려는 시도 등이 확인되었음
- 크림반도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계속해서 박탈하거나, 재산의 강제 압수 및 강제 재분배, 압수된 재산을 러시아 당국 공무원과 법 집행관 등에 제공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었음

□ **강제적인 러시아 시민권 부여 및 강제 이주 문제**

- 점령지 주민들에 러시아 시민권을 강요하는 여권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로 불법적으로 추방 및 강제 이주시키는 문제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적됨

□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 및 위반 사항에 대한 불처벌에 대해 규탄하며, 점령지역 내 국제기구들의 실질적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 임시 점령지역에서 자행하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강조함. 이전의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러시아 법률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

- 러시아 당국이 점령지역 내 국제기구들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지역 인권감시기구들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음

3) 의의 및 평가

-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A/HRC/59/67에 기록된 러시아 연방 점령 당국의 행위는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다수 조항 중 특히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위반 사례가 핵심이 되고 있음
- 보고서에 나타난 러시아 연방의 행위는 국제법상 점령국의 의무 위반의 증거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 고문, 비인도적 대우, 의도적인 중대한 상해, 강제 이주 및 추방 등의 전쟁범죄 및 민간인 인구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으로서의 고문과 강제 실종 등은 인도에 반하는 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확인된 러시아 당국의 행위는 이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6

**ICRC, 평화증진을 위하여 중재의 중요성 강조:
국제중재기구 설립 요청⁹⁶⁾**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ICRC
underscores importance of mediation in promoting peace [2025.05.30.]**

1) 개요

- 2025년 5월 30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중재 글로벌 포럼에서 보리스 켈레체비치(Boris Kelecevic)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부 부대표가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설립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음
 -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20건 이상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도적·환경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처럼 무력 충돌과 폭력의 순환은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 1949년 제네바협약 75주년 기념식에서 미르야나 스폴야릭 ICRC 총재가 지적한 바대로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을 주도할 평화구축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국가의 무기 보유량이나 군사비 규모로 보장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세계에 더 큰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평화 구축자, 인도주의 옹호자, 국제인도법 수호자라고 생각됨

2) 주요 내용

- 국제중재기구의 필요성
 - 국제중재기구는 무력 충돌을 중재로 종식시키거나, 무력 충돌과 폭력 속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96) ICRC,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ICRC underscores importance of mediation in promoting peace, 2025.05.30., <https://www.icrc.org/en/statement/establishment-iomed-icrc-underscores-importance-mediation-promoting-peace> (2025.10.30. 최종방문).

□ 이는 2024년 출범한 국제인도법 준수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도 맥락을 같이 함

- 2024년 9월, ICRC 총재는 브라질, 중국, 프랑스, 요르단,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국제인도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음
 - 동 이니셔티브는 정치적 분열과 교착상태를 극복하여 전쟁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주의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동 이니셔티브는 ‘국제인도법과 평화’를 포함한 7개 주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제인도법 준수가 평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동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합류하여 그 목표를 추진하기를 ICRC는 바라고 있음. 이는 인류를 옹호하고 국제인도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고취하려는 공동의 노력임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므로 무력사용이나 장기화된 폭력의 악순환 없이 대화와 정치적 의지를 통하여 평화롭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중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
 - 국제인도법과 평화협상 간의 상호관계 탐구, 국제인도법 준수가 갈등을 부추기는 위반행위를 방지하여 평화를 촉진하는 방법, 평화협상이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도법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 간 중재는 무력 충돌과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핵심적 과정이 될 것임

- 평화협정, 휴전협정, 포로교환협정 등의 중재는 분쟁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인도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무력 충돌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길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3) 전망 및 평가

□ 이후 올해 5월 30일 중국 주도(알제리, 인도네시아 등 32개 국가 참여)⁹⁷⁾의

97) 서구권 국가의 고위급 인사로 스위스 외교장관이 유일하게 참석하여 IOMed 설립 지지를 선언하였음. KIEP, 중국 주도의 국제중재기구(IOMed) 창설과 의미, 제11호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2025.6.12.), file:///C:/Users/%EB%B0%95%EB%AF%B8%EA%B2%BD/AppData/Local/Temp/MicrosoftEdgeDownloads/ae7ae91b-53d4-417e-bb31-4d3aa496791f/2025%EB%85%84+%EC%A7%80%EC%97%AD%E

국제분쟁의 자발적 조정을 위한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이하 IOMed)가 홍콩에 설립되었음

- IOMed는 정치·경제 분야의 국가 간 분쟁, 국가와 타국 국민 간 분쟁, 국제상사분쟁을 주로 다루는 기구임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서명식 연설 중 국제중재 다자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참여 확대, 발언권 강화를 촉구하기도 하였음

7 아동과 무력 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A/79/878-S/2025/247 [2025.06.17.], Children and armed confli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1) 개요

-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며, 무력 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12호(2005) 및 후속 결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한 바와 같이 아동에게 자행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위반 행위는 분쟁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아동에 대한 위반 행위에 연루된 당사자 목록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2024년 한 해 동안 무력 충돌 시 아동 폭력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위반이 인정됨
 - 6대 중대 위반(아동 징집 및 이용,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학교, 병원 및 관련된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격, 아동 납치) 건수는 2023년 대비 무려 25% 급증하였음. 유엔은 41,370건의 중대 위반을 확인했으며, 아동 살해 및 상해, 학교와 병원 공격, 그리고 인도주의적 접근 거부는 대부분 정부군에 의해 행해졌음. 특히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이 확인됨
 - 아동에 대한 침해는 민간 보안 업체 이용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전쟁 전략에 아동에 대한 공격 및 더 파괴적인 무기의 배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 및 전투를 위한 아동의 조직적 착취가 포함되었음. 아동에 대한 고의적 해악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심리적 악영향 및 대량의 장기 이주를 초래함. 이를 초래한 국가 및 비국가 무장단체는 처벌받지 않고 심각한 침해를 계속하고 있음
 - 인도주의적 접근 거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2024년에는 유엔 직원을

포함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망하였음. 이러한 인도주의 활동의 방해로 인해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호,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아동이 여러 형태의 위반을 동시에 당한 ‘다중 위반(multiple grave violations)’ 사례가 2023년 대비 약 17% 증가하였으며, 시가전·드론전쟁·사이버공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무력 충돌이 아동 피해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아동 피해의 주요 지역으로는 가자지구 및 이스라엘,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수단 및 아이티 등이 해당됨

- 2024년 가자지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아동 사망자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아동이 공습, 포격으로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인도적 지원 차단·학교·병원 공격 등 국제인도법 위반이 다수 보고됨
- 점령된 팔레스타인 자치구와 이스라엘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성 무기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여기에는 아동에게 부여되는 특별 보호를 존중하고, 학교와 병원을 보호하고, 공격 시 구별, 비례성 및 예방조치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습을 포함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 사용을 자제해야 할 의무가 포함됨
-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반군과 정부군 모두 아동 모집, 살해, 성폭력 등에 연루되어 무력 충돌 지역에서 아동 병사 동원 및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무력 충돌 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주요 권고 사항

- 모든 회원국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별 보호를 옹호할 것을 촉구함. 모든 회원국이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허용하며, 인도적 지원 인력과 자산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민간인과 민간 물품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함
- 분쟁 당사국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 사용을 자제하고, 폭발물 제거 작업을 시행하며, 위험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
- 회원국들이 아동에 대한 국제법 위반을 범죄화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 책임 메커니즘에 협력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3) 의의 및 평가

- 무력 충돌에서 아동이 단순한 ‘부수적 피해자’가 아니라, 의도적 공격과 체계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체계적인 전략의 일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을 구체적인 예방 전략 수립에 집중하게 함

-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추궁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역사회 기반 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함
 - 무력 충돌 피해 아동들을 단순히 무장단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재통합과 심리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려는데 의의가 있음

8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 체결

Agreement between the Council of Europe and Ukraine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ith annexed Statute⁹⁸⁾ [2025.06.25.]

1) 개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한계(특히 침략범죄에 대한)를 극복하고 러시아 최고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국적 협력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이 체결됨
- 2024년 4월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을 위한 장관급 회의’ 및 유럽평의회 2025년 1월 결의안 ‘유럽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헌신’⁹⁹⁾을 통한 설립 추진력 확보
-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2025년 5월 리비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총리, 유럽연합 고위대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등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음
- 2025년 6월 25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에는 재판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¹⁰⁰⁾

98) https://rm.coe.int/agreement-and-statut-english/1680b66127_ (2025.10.30. 최종방문).

99) COE Resolution 2588(2025), “European commitment to a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8.7 “reiterates the need to ensure accountability … notab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 a special tribunal to prosecute Russian and Belarusian leaders for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https://pace.coe.int/en/files/34153/html> (2025.10.30. 최종방문).

100) Agreement between the Council of Europe and Ukraine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https://rm.coe.int/1680b66127>

2) 주요 내용

□ 특별재판소의 관할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범죄에 한정됨

- 침략 범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여 무력 사용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한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격, 중대성 및 규모 면에서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을 구성해야 함
- 특별재판소는 침략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개인, 즉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를 계획, 준비, 발동 및 수행한 러시아의 고위 정치 및 군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판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관할권을 기반으로 하며, 재판소 규정과 증거 및 절차규칙, 관련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 형법을 적용함

□ 재판소 구성과 공정한 재판의 보장

- 재판부는 예심 재판관 1명, 재판부 재판관 3명, 항소부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되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 피해자 및 증인 보호 부서 등을 포함한 사무국으로 재판소가 구성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중 처벌 금지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묵비권 등 국제 형사절차 기준을 보장함

□ 개인적 면책특권(Immunity) 적용

-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개인적 면책특권이 적용됨

□ 피해자 및 증인 보호

- 피해자 및 증인 보호부서를 설치하여 위험에 처한 증인과 피해자에게 보호조치, 안전보장,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법적 대리를 조직함

□ 국가들의 협력 의무

- 재판소는 국가들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재판소의 판결과 체포영장을 존중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함

(2025.10.30. 최종방문).

3) 의의 및 평가

□ 침략범죄 처벌의 법적 공백 해소

- 이 재판소는 러시아 고위 정치 및 군 지도자들의 침략을 결정한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적 포럼으로 기능하여, 기존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재판소의 설립은 전쟁이 국가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의 근본 원칙과 침략 금지 원칙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9

유럽인권재판소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대 러시아 사건 (*Ukraine, Netherlands vs. Russia*)

ECHR *Case of Ukraine and the Netherlands v. Russia*

[Applications nos. 8019/16, 43800/14, 28525/20 and 11055/22] [2025.07.09.]

1) 개요

- 이 판결은 유럽인권협약 상의 국가 간 신청 사건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2014년부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세 건의 사건과
- 2014년 7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격추된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병합하여 다루고 있음¹⁰¹⁾
- 네 건의 병합 사건에 대해 2025년 7월 9일 판결이 선고되어 러시아의 협약 위반 및 책임을 인정하였음

2) 주요 내용

- 재판소의 관할권 판단과 관련하여
 - ECtHR은 러시아가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이었던 2014년 5월 11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통제 지역에 대해 군사적 주둔 및 정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여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은 러시아의 관할권에 속하였으며, 러시아는 협약 제1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음
 - MH17편 격추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의

101) No. 8019/16 (*Ukraine v. Russia*, 2016), No. 43800/14 (*Ukraine v. Russia*, 2014), No. 11055/22 (*Ukraine v. Russia*, 2022), No. 28525/20 (*Netherlands v. Russia*, 2020).

지원을 받은 미사일에 의해 항공기가 격추된 점이 인정되었음

□ **판결에서는 러시아 군대와 점령 행정부 등에 의한 조직적, 체계적 협약 위반 행위가 인정됨**

- 러시아 군대와 점령 행정부 등에 의한 체계적인 행위를 통해 무차별적 군사 공격, 민간인 및 전투 불능 상태의 군인에 대한 살해 행위, 즉결 처형 등이 행해졌으며 이는 협약 제2조 생명권 침해에 해당함
- 조직적인 고문, 비인도적·굴욕적 대우 및 불법 구금이 이루어져 협약 제3조의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에 대한 위반도 인정됨
- 전쟁수단으로서의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며 특히 러시아의 군사 전략으로서 강간 및 성폭력 행위가 우크라이나 인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굴욕을 주기 위한 고문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함
- 2014년부터 조직적 관행으로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가 통제하는 점령지역 및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주시키거나 입양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어 협약 제5조, 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규정의 위반에 해당함

□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행위 및 사건 조사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

-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도네츠크주 상공에서 격추되어 탑승자 298명 모두 사망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가 네덜란드인으로 밝혀졌음. ECtHR은 표적을 확인하거나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발사된 미사일로서 러시아 방공체계 ‘Buk’미사일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협약 제2조 생명권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이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사건 조사 실패 및 증거은폐 행위 등이 인정되어 협약 제13조의 효과적 구제권 조항의 위반 역시 인정됨

□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조직적 인권침해임을 고려하여 개별 신청 사건과 달리 배상금의 산정은 유보하였으나, ‘피해 등록부(Register of Damages)’ 설치와 향후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였음**

□ **협약 제46조에 따라 러시아에 즉각적인 이행명령 조치를 취함**

- 2022년 9월 16일 이전에 점령지역에서 구금되었고 현재까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모든 사람을 지체없이 석방할 것과 러시아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가족 재결합 및 귀환을 위해 협력할 것을 명하였음

3) 의의 및 평가

- 사건에서 ECHR은 개인 및 개별 행위의 인권협약 위반 문제가 아닌 러시아의 실효적 통제가 행해지는 점령지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권침해가 행해졌음을 인정하였음
- 해당 판결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군사 공격에 따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인권법 위반의 근거로 사용하여 무력 충돌 시 인권법 적용을 확장하고 있음
 -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및 초법적 살해 행위 판단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였음
 - 성폭력을 개별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고문 형태 및 군사 전략의 일부로 인정하여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형사법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의가 있음

10 ICC, 우크라이나 ICC 당사국 환영 행사 개최¹⁰²⁾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elcomes Ukraine as a new State Party [2025.07.17.]

1) 개요

- 2025년 7월 17일 ICC 본부에서 우크라이나를 로마규정 제125번째 당사국(동유럽 국가 중 20번째)으로 환영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음
 - 토모코 아카네 ICC 재판소장은 우크라이나의 안드레이 코스틴 주 네덜란드 대사에게 법치에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로마규정 특별판’을 전달하였음
 - 이 행사에는 파이비 카우코란타 당사국총회(ASP) 의장, ICC 재판관, 소추관실, 피해자 신탁기금 및 네덜란드 주재 당사국 대사관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우크라이나의 로마규정 가입 과정
 - 우크라이나는 2000년 1월 20일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나 2004년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동 조약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비준 절차가 중단되었음¹⁰³⁾
 - 2016년 우크라이나는 ICC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으나 2024년 8월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음
 - 이후 2024년 8월 1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로마규정 비준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로마규정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및 그 개정안 비준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법안 11484)이 채택되며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음
 - 2024년 10월 25일 로마규약 비준서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기탁되었고 60일이 지난 2025년 1월 1일 발효되었음(로마규정 제126조)

102)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elcomes Ukraine as a new State Party 2025.07.17., <https://www.icc-cpi.int/news/international-criminal-court-welcomes-ukraine-new-state-party> (2025.10.30. 최종방문).

103)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kraine becomes the 125th State Party to the ICC Rome Statute, 2025.01.22., <https://www.coalitionfortheicc.org/ukraine-becomes-125th-ICC-state-party>. (2025.10.30. 최종방문).

2)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는 로마규정 제124조¹⁰⁴⁾에 따른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면서 로마규정 비준서를 기탁하였음

○ 우크라이나의 제124조에 따른 선언에는 “로마규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발효된 후 7년 동안 자국민에 의해 전쟁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8조에 언급된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로마규정 제124조는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조항으로 포함되었음

- 그러나 2015년 12월 당사국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24조 삭제를 위한 규정 개정이 결정되었고 당사국총회는 당사국들에게 제124조 활용을 향후 자제할 것과 ‘전쟁범죄 선택적 제외 조항’ 삭제를 위한 개정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음¹⁰⁵⁾

□ 우크라이나 로마규정 가입과 관련한 반응

○ 토모코 아카네 ICC 재판소장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면책의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로마규정 가입을 통해 합류하게 되었다”며 신규 당사국을 환영하였음

○ 파이비 카우코란타 당사국총회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로마규정 가입을 추진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회복력과 용기, 법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로마규정 비준은 면제와의 싸움과 국제형사재판소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104) 로마규정 제124조(경과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될 때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후 7년 동안,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역에서 범해진 것으로 혐의를 받는 제8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주에 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재검토회의에서 재검토된다; 동 규정은 한 국가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때 비준 후 7년 동안 자국 국민이나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지금까지 이용한 국가는 프랑스와 콜롬비아 뿐으로 2008년 프랑스는 동 선언을 철회하였음. 콜롬비아 당국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제124조에 따른 선언을 철회할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콜롬비아의 선언 효력은 2009년 11월 1에 만료되었음

105) 로마회의 당시 NGO들은 제124조가 ICC의 관할권 체계를 약화시키고 “가장 심각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면책을 종식시키고, 그러한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로마규정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면 강력히 반대하였음. 당사국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로마규정 제124조 삭제를 위한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았음. https://asp.icc-cpi.int/sites/asp/files/asp_docs/Resolutions/ASP14/ICC-ASP-14-Res2-ENG.pdf (2025.10.30. 최종방문).

- 안드레이 코스틴 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오늘 로마규정 제125번째 당사국으로서 ICC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한다”며, “이 국기는 평화, 정의, 존엄,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상징이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내고 여전히 겪고 있지만, 폭력이 아닌 법이 우리 공동의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깃발이기도 하다.”며 감회를 밝혔음

3) 전망 및 평가

□ 우크라이나와 ICC의 협력 기대

- 우크라이나는 2013년 11월 이후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로마규정 비준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우크라이나의 관할권 선언을 바탕으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2022년 전면 침공과 관련된 사건 등 우크라이나 상황은 소추관실의 예비조사 대상이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2022년에는 소추관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6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임
 - 국제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ICC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우크라이나의 제124조에 따른 선언은 우크라이나 군 및 안보 관계자들의 ICC 회부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자국민은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반면에 타국 국민에게는 국제형법을 적용하고 싶어하는 선택적 적용 우려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음

□ 우크라이나 법률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변화도 기대됨

- 로마규정의 비준은 우크라이나 법률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형법 등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법과 일치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NGO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침략범죄는 러시아 군대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또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다른 국제범죄의 근본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지도부를 기소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¹⁰⁶⁾

106) <https://www.coalitionfortheicc.org/ukraine-becomes-125th-ICC-state-party> (2025.10.30. 최종 방문).

11 ICC, 1심재판부 알프레드 예카툼과 파트리스-에두아르 응아이소나에게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유죄판결, 각각 15년과 12년의 징역형 선고¹⁰⁷⁾

ICC Trial Chamber V finds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issona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entences them to 15 and 12 years of imprisonment [2025.07.24.]

1) 개요

- ICC 1심재판부 V는 2025년 7월 24일 알프레드 예카툼과 파트리스-에두아르 응아이소나에게 2013년 9월부터 최소 2014년 2월까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방기 및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알프레드 예카툼에게 총 15년, 파트리스-에두아르 응아이소나에게는 총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2) 주요 내용

- 1심재판부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 셀레카와 안티발라카 간 분쟁 중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 주목하였음
 - 당시 대통령 프랑수아 보지제(François Bozizé)에 반대하던 셀레카는 2012년 8월경 결성되었음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이 주도하여 조직된 이 단체는 주로 무슬림으로 구성되었으나 차드와 수단 출신도 포함되었음
 - 2013년 3월 24일 셀레카는 방기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권력을 장악하였고, 셀레카

107) ICC, ICC Trial Chamber V finds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issona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entences them to 15 and 12 years of imprisonment, 2025.07.24., <https://www.icc-cpi.int/news/icc-trial-chamber-v-finds-alfred-yekatom-and-patrice-edouard-ngaissona-guilty-war-crimes-and> (2025.10.30. 최종방문); ICC, Yekatom/Ngaissona case: summary of judgment, 24 July 2025, <https://www.icc-cpi.int/sites/default/files/2025-07/2025.07.24.%20Yekatom%20and%20Ngaissona%20Judgment%20Summary.pdf> (2025.10.30. 최종방문).

지도자인 미셸 조토디아(Michel Djotodia)가 스스로 대통령을 자칭하였음

- 이후 셀레카는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폭력과 학대를 자행하였는데 특히 프랑수아 보지제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 개인들과 비무슬림(주로 기독교인 및 애니미스트(animists), 기타 종교인) 등에게 이루어졌음

○ 1심재판부는 응아이소나가 셀레카의 폭력에 대응하고 프랑수아 보지제의 권력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카툼은 'Coeur de Lion'으로도 알려진 프레디 우안지오와 하비브 베이나와 함께 그룹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초기에는 별도로 형성된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나의 운동을 진행하다가 공통의 적인 셀레카에 대항하는 활동으로 조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운동이 '안티발라카'로 알려지게 되었음

□ 1심재판부는 응아이소나가 안티발라카의 조직 구조를 공식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재정적 지원도 계속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예카툼이 자신의 단체에 대해 완전하고 제한없는 통제권을 유지하고 행사하였다고 하면서 이 단체는 안티발라카의 일부로 인식되고 이해되었다고 지적하였음

○ 예카툼과 응아이소나는 안티발라카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 무슬림들을 셀레카가 저지른 폭력과 학대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거나 지지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안티발라카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서부 지역의 무슬림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고 설명함

○ 이에 근거하여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특히 2013년 12월 5일 방기와 보상고아에서 발생한 안티발라카의 조직적 공격기간 동안 무슬림 민간인이 표적이었다고 지적함

□ 응아이소나와 예카툼 개인의 형사책임

○ 예카툼은 방기에 대한 공격, 암와라 사건, PK9-Mbaïki 축을 따라 진격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공격, 살인, 강제이주 및 추방,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 지시, 고문, 잔혹한 대우, 기타 비인도적 행위, 구금 및 기타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 박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 그러나 1심재판부는 예카툼에 대한 15세 미만 아동을 강제징집·입대시켜 적대 행위 참여에 동원한 전쟁범죄 혐의는 기각하였음(정창호 재판관 반대의견)
- 응아이소나는 방기와 보상고아에 대한 공격, 암와라 사건, PK9-Mbaiki 축에서 안티발라카 진격 과정 동안 민간인에 대한 공격, 살인, 강제 이송/강제 이주 및 추방,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 지휘, 고문, 잔혹한 대우, 기타 비인도적 행위, 구금 및 기타 심각한 신체의 자유 박탈, 재산 파괴 및 박해 등 다수의 범죄를 방조, 교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원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
- 성 시르((Saint Cyr) 사건과 관련된 전쟁범죄 중 고문 및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중 살인에 대하여 다수의견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음(Kovács 재판관 반대의견)
- 그러나 보상고아 공격과 관련하여 전쟁범죄 중 약탈과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 지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상고아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음

3) 전망 및 평가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2년 이후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판결
 - 동 판결은 로마규정에 따른 핵심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¹⁰⁸⁾
 - 무력 충돌 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원칙을 강조한 동 판결은 피해자 권리를 옹호하며 전장이나 어디에서든 면책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소년병 사용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동 판결은 페이스북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최초의 재판으로 거의 20,000건의 증거물과 174명의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한 매우 복잡한 재판이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ICC 재판과는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¹⁰⁹⁾

108) ICC, Statement of the ICC Office of the Prosecutor on the conviction of Messrs. Yekatom and Ngaïssona, 2025.07.24., <https://www.icc-cpi.int/news/statement-icc-office-prosecutor-conviction-messrs-yekatom-and-ngaissona> (2025.10.30. 최종방문).

109) Alexander Heinze, The Trial Judgment in Yekatom and Ngaïssona: A Judgment of Many Firsts Built on Case Management (Part 1), *Opino Juris*, 2025.08.08.,

- 1심재판부는 로마규정과 증거절차규칙에서 부여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특히 전자증거의 양을 효율적으로 관리(심의 기간 6개월)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음
- 또한 별도의 형량 심리를 개최하는 ICC의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다르게 동 사건 1심재판부는 제74조의 판결과 형량결정에 관한 잠재적 결정(형량절차결정(Decision on Sentencing Procedure¹¹⁰), 2항)을 동시에 내리기로 하는 등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https://opiniojuris.org/2025/08/08/the-trial-judgment-in-yekatom-and-ngaissona-a-judgment-of-many-firsts-built-on-case-management-part-1/> (2025.10.30. 최종방문).

110)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II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Decision on the Sentencing Procedure and Amended Directions on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https://www.legal-tools.org/doc/73dsqsaw/pdf/> (2025.10.30. 최종방문).

12 ICRC, 국제인도법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¹¹¹⁾

Global Initiative on IHL: Good Engagement in First Phase of Consultations [2025.07.31.]

1) 개요

- ICRC는 작년 브라질, 중국, 프랑스, 요르단,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개국과 함께 국제인도법 강화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IHL)를 발족하였음
 -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무력 충돌 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 주요 내용

- 최근까지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제인도법 강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들이 인도적 보호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 및 운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데 광범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4명의 공동의장이 민간 인프라 보호, 분쟁 중 의료지원, 국제인도법과 평화 등 7개 주제별 작업방향(thematic workstreams)에서 각각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음

□ 2025년 상반기 활동 내용

- 1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무력 충돌 중 인간 존엄성의 보존’(Preserving Human Dignity in Armed Conflict)이라는 주제로 8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모였고 국제인도법이 정치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단일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 ICRC 지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요르단은 모든 제네바협약 서명국들이 동

111) ICRC, Global Initiative on IHL: Good Engagement in First Phase of Consultations, 2025.07.31., <https://www.icrc.org/en/article/global-initiative-ihl-first-phase-consultations> (2025.10.30. 최종 방문).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음. 미르야나 스폴야릭 에거(Mirjana Spoljaric Egger) ICRC 총재는 전쟁 속 인류애는 단호하고 집단적인 행동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음

- 2월에는 제네바에서 카자흐스탄과 브라질이 공동주최한 고위급회의에 다수 국가들이 참여하였음
- 4월에는 프랑스 유럽·외교장관과 ICRC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고위급 회의를 공동주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창립국가들과 21명의 공동의장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 6월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인도주의 업무 세그먼트(Humanitarian Affairs Segment, HAS) 에서 민간 인프라와 병원과 관련한 작업방향 공동의장들은 58개국과 1개 지역기구의 지지를 받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첫 번째 협의 라운드에서는 각 작업방향 별 7개의 국가주도 논의, 2개의 지역회의, 3번의 전문가 워크숍, 2번의 고위급 패널이 함께 진행되었음

- 130개 이상의 국가가 이번 협의에 참여했으며, 각 세션에는 약 80개국이 참석하였음
 - 특히 지역 간 참여가 균형있게 이루어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3) 전망 및 평가

□ 최근의 국제인도법 준수 수준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우려가 ‘국제인도법 강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무력 충돌 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도덕적 틀로서 국제인도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음

- 앞으로도 모든 지역과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없이 국제인도법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들의 의지가 공동으로 표명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제별 작업방향 공동의장들은 ICRC와 협력하여 진행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올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개최될 예정인 두 번째 협의라운드의

준비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ICRC와 파트너들 간 포용적인 대화가 계기가 되어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CRC, 특별 호소 2025- 기후변화와 분쟁: 가장 취약한 이의 보호¹¹²⁾

Special Appeal 2025 – Climate change and conflic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2025.08.19.]

1) 개요

- 기후위기는 급속하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36억 명의 인구가 매우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더 빈번하고 심각한 기상현상에 노출되어 있음
 -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 가뭄,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하여 식량, 물,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협받고 있음
 -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폭력과 약화된 제도로 인하여 대처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분쟁 영향 지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피해를 줌으로써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분쟁 그 자체가 환경파괴를 악화시켜 회복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불안전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 분쟁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파괴적인 영향
 -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후위험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은 수십년 간 이어진 폭력사태와 반복되는 가뭄 및 홍수로 인하여 식량불안정과 이주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 이처럼 전 세계 1억 2,200만 명의 강제이주민 중 거의 절반이 분쟁과 심각한 기후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사헬 지역, 아프리카의 뿔, 중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중첩된 위기는 국가의 대처능력을 압박하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응하여 ICRC와 그 파트너들은 분쟁에 민감하고 기후를 고려한

112) ICRC, Special Appeal 2025 – Climate change and conflic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2025.08.19., <https://www.icrc.org/en/article/special-appeal-climate-change-and-conflict> (2025. 10.30. 최종방문).

접근방식(climate-informed approach)을 적용하여 원칙에 기반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CRC의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과 포괄적인 활동

- ICRC는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바에 근거하여 무력 충돌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음
 - 긴급대응과 장기적 해결책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 지속가능한 영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특히 ICRC는 현재 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 지역 파트너 및 각국 적십자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현지에 적합한 해결책을 실행하고 있음
- 또한 ICRC는 민간 인프라, 필수 서비스 및 인간이 의존하는 자연환경에 가해지는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의 촉진: 국가 정규군과 비국가 무장단체, 정책 입안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인도법을 법률 및 교육 체계로의 통합을 진행하여 홍보함
 - 무력 충돌이 민간인과 핵심 인프라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국 및 비국가 무장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국제인도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 전망 및 평가

-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력 충돌 및 기타 폭력 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대처력과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쟁과 관련된 환경 파괴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ICRC가 개별 국가와 인도주의·개발·기후 평화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위험과 환경파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큰 의의가 있음
- 특히 기후변화와 분쟁과 관련한 ICRC의 다양한 역할 중 분쟁과 기후위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 회복력 강화에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하면서 주요 인프라 강화, 식량안보, 보건, 주거 등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의 접근성 보장, 자립 회복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특히 지역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분쟁 피해 지역의 기후정책 및 외교에 지역이 주도하는 통합대응 방식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기후 관련 요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ICRC는 간소화된 거래 구조를 통하여 피해 국가에서 현지 통화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채무전환 메커니즘(Rapid Disbursing Debt Conversion Mechanism, RDDCM)이라는 자금조달모델을 개발하였음
 - 동 자금조달모델의 원활한 실행은 기후 및 인도적 자금을 현지 주도 대응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14 네덜란드 법원 *Mustafa A.* 사건 항소심 선고

ECLI:NL:GHDHA:2025:1715 [2025.08.27.]

1) 개요

- Mustafa A.에 대한 2024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8월 27일 항소법원 판결이 선고됨
 - 1심에서는 Mustafa A.를 네덜란드 형법과 국제범죄법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죄 공모 및 전쟁범죄 공모(심각한 자유 박탈 및 고문), 테러조직 참여 및 지도 역할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피해자 1명에 대한 부분과 테러조직 참여 및 지도 역할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2년 형을 선고 하였음

2) 주요 내용

- 항소법원은 Mustafa A.가 시리아 정부의 친위대인 리와 알 쿠드스(Liwa al_Quds)의 지휘관으로 2013년 1월 알레포 인근 캠프에서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20일간 고문한 혐의를 인정하였음
- 리와 알 쿠드스는 시리아 정부의 지배하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민간인 공격에 가담한 범죄 조직임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도 인정되었음
-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심각한 자유 박탈 및 고문 공모) 및 테러조직 참여 및 지도 역할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음
- 형량은 징역 12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가중되었으며
- 1심에서 기각되었던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해 항소법원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시리아 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40,000유로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음

3) 의의 및 평가

□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및 시리아 내 범죄의 불처벌 종식에 기여

- 사건은 네덜란드 법정에서 아사드 정권과 연계된 조직의 구성원이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국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임
- 네덜란드 형법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이후 개정을 통해 국제형사법 관련 범죄 규정을 강화하여 왔음
- 시리아가 ICC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인 점 및 러시아의 비호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의 핵심 범죄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이러한 사건들은 시리아 내전 기간 중 자행된 핵심 국제범죄를 국내 법원에서 기소하려는 유럽 차원의 확대된 움직임의 일부로 볼 수 있음.¹¹³⁾ 여러 국가가 핵심 국제범죄 기소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국내법 법리들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공백 해결의 노력

-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에게 시리아 민법(Syrian tort law)을 근거로 40,000유로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것은 범죄 발생지의 국내법을 국제 범죄 재판에 통합하여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을 확대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113) Giel Verhagen, EJIL:Talk, Accountability in The Hague: Recent Developments in Dutch Core International Crimes Cases regarding the Syrian Civil War, <https://www.ejiltalk.org/accountability-in-the-hague-recent-developments-in-dutch-core-international-crimes-cases-regarding-the-syrian-civil-war> (2025.10.30. 최종방문).

15 ICC, 알리 무함마드 알리 압드-알-라흐만, 수단 다르푸르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판결¹¹⁴⁾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declared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Darfur, Sudan [2025.10.06.]

1) 개요

- 2025년 10월 6일 ICC 1심재판부 I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수단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등 27건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잔자위드 지도자인 알리 무함마드 알리 압드-알-라흐만(이하 압드-알-라흐만)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 압드-알-라흐만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진해서 투항한 후 2020년 6월 9일 ICC로 이송되었음
 - 소추관은 압드-알-라흐만이 2003년 8월부터 최소 2004년 4월까지 수단 다르푸르에서 저질러진 31건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며 소추하였음
 - 전심재판부 II는 2021년 7월 9일 소추관이 제기한 모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회부하였음
 - 2022년 4월 5일 1심재판부 I에서 재판이 개시된 이후, 소추관측 56명, 변호인 측 18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였음

2) 주요 내용

- 1심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고 논의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잔자위드 지도자인 압드-알-라흐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다음의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확인하였음
 -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로서의 살인과 고문, 전쟁범죄로서의 개인적 존엄성에

114) ICC, Ali Muhammad Ali Abd-Al-Rahman declared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Darfur, Sudan, 2025.10.06., <https://www.icc-cpi.int/news/ali-muhammad-ali-abd-al-rahman-declared-guilty-war-crimes-and-crimes-against-humanity> (2025.10.30. 최종방문).

대한 모욕,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박해에 대한 직접범죄자로서의 책임

- 무크자르와 텔레이그 작전 기간 중 최소 200명의 포로 및 구금자에게 잔자위드 및/또는 수단 정부군과 공동으로 저지른 살인, 살인미수 및 고문(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개인적 존엄성에 대한 모욕(전쟁범죄), 박해(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동범죄자로서의 책임
- 코둠과 빈디시 작전 동안 잔자위드에게 살인과 강간(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민간인 집단에 대한 공격,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 적의 재산 약탈 및 파괴(전쟁범죄), 강제이주,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인도에 반하는 죄)를 명령한 사람으로서의 책임
- 소추관은 압드-알-라흐만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 및 전쟁범죄 등 4건의 혐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범죄행위가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다른 범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았음

3) 전망 및 평가

- 향후 유죄가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압드-알-라흐만에게 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개시될 예정임

ICRC, 국제인도법의 신의성실한 해석을 촉구하는 정부들의 요청을 담은 2025년 진행 보고서 발간¹¹⁵⁾

States call for good faith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new report [2025.10.16.]

1) 개요

-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국제인도법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a global initiative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창립국 6개국(브라질, 중국, 프랑스, 요르단,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동의장 27개국, ICRC는 이니셔티브의 7개 작업반에 대한 첫 번째 협의 라운드를 개최하였음
 - 약 130개국이 논의에 참여한 이번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들의 풍부한 우수사례와 구체적인 제안들이 제시되었음
 - 이후 27개국 공동의장단과 ICRC는 2025년 진행 보고서(progress report)¹¹⁶⁾를 발간하였고 국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강조하였음
 - 동 진행 보고서는 국제인도법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창립국이 국제인도법 위반이 만연한 상황에 대해 모든 국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¹¹⁷⁾한 이후 발간되었음

2) 주요 내용

- 2025년 진행 보고서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현대적 도전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30개국 이상이 글로벌 및 지역협약에 참여했으며,

115) ICRC, States call for good faith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new report, 2025.10.16., <https://www.icrc.org/en/news-release/states-call-protective-interpretation-ihl-new-report> (2025.10.30. 최종방문).

116) Global Initiative to Galvanize Political Commitment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gress report, <https://shop.icrc.org/global-initiative-to-galvanize-political-commitment-on-international-humanitarian-law-progress-report-pdf-en.html> (2025.10.30. 최종방문).

117) World leaders united in defenc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uphold humanity in war, <https://www.icrc.org/en/statement/world-leaders-united-defence-international-humanitarian-law> (2025.10.30. 최종방문).

사람과 민간물자를 보호하는 국제인도법 해석을 공통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함

- 특히 사이버 무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무력 충돌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는 등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 전쟁규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되었음
- 또한 동 보고서에는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제안이 제시되어 있음
 - 군사훈련의 최신화, 강력한 국가책임 메커니즘의 구축, 위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소 식별 및 이를 사전에 또는 발생 시점에 해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또한 평화협정에 국제인도법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료시설에 대한 부당한 공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병원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조치 강화 및 검증방안을 모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됨
 - 추가적으로 각국 정부가 국내에서 국제인도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며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보장할 것, 입법 및 군사·안보 훈련을 통해 국제인도법을 국가 체계에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촉구했으며, 글로벌 국제인도법 이니셔티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였음

3) 전망 및 평가

- 국제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은 ICRC 역시 강조하고 있는 주제로 미르야나 스폴야릭 ICRC 총재 역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음
 - 미르야나 총재는 “제네바협약은 민간인, 전쟁포로, 억류자 및 전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들의 보호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수백만 명의 생명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애의 핵심은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전쟁에서 목격되는 잔혹함이 내일의 분쟁에서 기준이 될 위험이 있다. 전쟁 중 인류애를 지키는 것은 국가들의 권한 내에 있지만, 전쟁규칙 존중의 침식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ICRC는 더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의 보호 정신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민간인, 인도주의 인력 및 필수 인프라를 과도하고 불필요한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군사적 필요성으로 위장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무력 충돌 당사자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쟁규칙을 존중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잔혹행위와 적대행위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도적,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함

- 글로벌 국제인도법 이니셔티브는 2026년 전쟁 중 인류애 수호(upholding humanity in war)를 주제로 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음

17

ICRC, 신의성실에 따른 민간인 보호: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주석서 개정¹¹⁸⁾

Protecting civilians in good faith: The Updated Commentary on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2025.10.22.]

1) 개요

- ICRC는 5년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무력 충돌 및 점령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인도법의 초석인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주석서를 개정 발간하였음¹¹⁹⁾
-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은 국제적 무력 충돌과 점령 시기에 민간인의 보호를 법제화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국제사회가 전쟁의 한계를 설정하고 민간인을 최악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로 다짐하며 탄생하였음
 - 협약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인도적 구호 접근을 보장하며 점령국의 책임을 규제하는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2025년 개정 주석서는 75년 이상의 국가관행, 법적 발전, 사법적 결정, 학계의 논쟁, 실무경험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수록되어 있음
- 분쟁이 진화하면 국제인도법의 이해와 적용방식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도시전, 필수 인프라 공격, 인도적 요구의 강화, 대규모 이주가 특징인 오늘날의 분쟁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협약의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실용적인 지침 역할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었음
 - 이번 개정은 주석서가 권위 있고 실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근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민간인 보호라고 하는 협약의 목적을 현대 분쟁에서 재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118) ICRC, Protecting civilians in good faith: The Updated Commentary on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2025.10.22., <https://www.icrc.org/en/article/updated-commentary-fourth-geneva-convention> (2025.10.30. 최종방문).

119) 2025년 개정 주석서는 ICRC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문과 조항별로 확인가능함. <https://ihl-databases.icrc.org/en/ihl-treaties/gciv-1949> (2025.10.30. 최종방문).

□ 이번 개정에서 민간인 보호에 ‘신의성실’(good faith)의 이해가 필수적인 이유

-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을 ‘신의성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전쟁과 기술의 진화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해석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협약의 보호 대상자를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노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등에서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나 분쟁 당사자들이 의무를 다음과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경우 법의 의미가 무색해질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제네바협약의 문언과 정신 모두를 위반하는 것임
 - 인도적 구호의 통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실제 전달을 방해하는 부담스러운 절차를 부과하는 경우
 - 역류자들에게 건강과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제공하는 경우
 - ‘부당하게 지체없이’라는 기한을 긴급한 것이 아니라 유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 협약 작성자들은 전쟁에 대한 제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만 보호가 실질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러한 제한을 견고하게 하여 인도주의적 목적이 편의보다 항상 우선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개정 주석서의 구성

- 주석서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에 포함된 민간인 보호 의무를 각 조항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도출된 현실적인 예시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전쟁수단 및 방법에 관한 70년 이상의 발전 과정을 통합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하여 제기된 주제들에 대한 추가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용 출처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가장 권위있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조항이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전망 및 평가

- 지난 75년 동안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은 실제 분쟁을 통해 해석되며 그 적용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이번에 개정된 주석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 간의 법적 및 실무적 경험을 집약한 것으로 군사 실무자, 인도주의 정책 입안자, 학자, 판사 등 1949년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적용 주체들의 실용적인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신기술, 디지털 통신부터 현대 전쟁방식까지의 전쟁 양상의 변화, 의학의 발전, 점령·억류, 인도적 구호에 관한 협약 규칙 등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 규정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협약 규칙의 이행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음
 - 상술한 바대로 보호 대상자를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범위를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에도 확장하였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국제형사법의 발전 등도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전쟁에서 보호를 뒷받침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로 더 이상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이번 개정으로 ICRC는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전체 주석서 개정을 완결함으로써 포괄적 재검토를 완성하게 되었음

ICRC, 유엔총회 제80차 회기: 보편적 관할권 원칙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제6위원회 성명 환영¹²⁰⁾

UN General Assembly 80th session: Statement at the Sixth Committee on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2025.10.23.]

1) 개요

- ICRC는 유엔총회가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제6위원회의 성명과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보편적 관할권 원칙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사하며 적절한 경우 기소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임

2) 주요 내용

- 1949년 제네바협약 당사국들은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는 특정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의 용의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수색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은 범죄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등 조사 국가와의 어떠한 연관성도 요구하지 않음
 - 제네바협약은 또한 당사국들이 최소한 범죄혐의자를 기소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을 국내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함

-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대행위 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으로 확대 적용하며 모든 중대한 위반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였음

120) ICRC, UN General Assembly 80th session: Statement at the Sixth Committee on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2025.10.23., <https://www.icrc.org/en/statement/un-general-assembly-80th-session-statement-sixth-committee-scope-and-application> (2025.10.30. 최종방문).

- 다른 국제조약들도 당사국들에게 해당 조약에 포함된 규칙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자국 법원에 일정한 형태의 보편적 관할권을 부여할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예를 들어, 1954년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및 제2추가의정서(1999년),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2006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이 이에 해당함

- 또한, 국제인도법의 다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보편적 관할권을 확장할 권리를 국가들이 가진다는 것은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통하여 관습국제법화 되었음
 - 특히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행위,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보편적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한 조약에 근거한 관할권 외에도 가해자나 장소에 관계없이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책임성을 보장하고 면제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 관할권을 활용하여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무력 충돌에서 저질러진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면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형사책임의 추궁이 단순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약속한 것임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ICRC는 보편적 관할권이 모든 무력 충돌에 균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보편적 관할권의 일관된 적용은 국제인도법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보편적이고 공정하며 편견없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국가들은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내형사입법을 강화하고 국제인도법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

- ICRC는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화된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이 도구들은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기술문서의 형태로 제공되며 모두 국가와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됨
- 또한 ICR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및 기타 국제범죄의 수사 및 기소 협력에 관한 류블라나-헤이그협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국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음
 - 동 협약은 국가들이 핵심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음

3) 전망 및 평가

- ICRC는 국가들이 중대한 위반행위나 기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 적용을 할 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제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어떠한 조건도 국가들이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거나 용의자를 수색하여 기소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관할권 및 기타 모든 분야에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ICRC는 계속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음

19 자율무기체계와 국제인도법에 관한 ICRC 보고서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lected issues. Position paper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25.10.]¹²¹⁾

1) 개요

- ICRC는 자율무기체계(AWS)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무기체계와 국제인도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2025년 10월에 발간하였음
 - 보고서는 국제인도법이 AWS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고, AWS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인도적 및 법적 과제를 조명하며,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국제인도법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임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쟁 기술에 맞서 국가들이 민간인 보호를 보장하고 인도주의 원칙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AWS에 대한 정의와 그 특성에 기인한 우려
 - AWS는 한 번 작동·발사(activate/launch)된 후 인간의 추가 개입 없이 하나 이상의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정의함
 - 이러한 정의하에 AWS는 사용자가 특정 표적이나 폭발 시점·장소를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전 대상이 된 민간인 또는 전투원 모두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높고, 충돌이 확장될 위험성도 있으며, 교전규칙 등 국제인도법 이행에서의 어려움, 생사에 대해 기계가 판단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판단 및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켜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됨
 - ICRC는 무기체계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하기보다, 그 무기를 사용하는 인간이 국제인도법 규정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함

121) ICRC,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media_file/2025-10/ICRC-Position_Paper-Autonomous_Weapon_Systems_and_IHL-Selected_issues_Oct2025.pdf (2025.10.30. 최종방문).

□ AWS에 대한 기존 국제인도법 적용의 조건과 한계

-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AWS에 적용됨을 확인하며, 이는 CCW 당사국 입장과 기존 유엔총회 결의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AWS의 기술적·운용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국제인도법의 분석 적용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AWS에 관해 어떤 조건과 한계가 국제인도법 원칙 및 규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AWS는 국제인도법 준수가 불가능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AWS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서의 구체적 문제와 ICRC의 권고사항

- 예측불가능한 AWS는 금지되어야 함
 - AWS의 예측불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AWS의 고도화된 센서·알고리즘·기계학습 기반 운영으로 인해 AWS 작동 시 사용자가 어떤 표적을 공격할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은 공격 계획 당시의 정보가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사용자가 적절히 개입·중단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책임추궁의 문제도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해당 공격이 이루어진 이유를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곧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예방의 원칙 등의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예측불가능한 즉, 효과가 충분히 이해·예상·설명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AWS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사람을 목표로 하는 AWS(anti-personnel AWS)는 금지되어야 함
 - 윤리적 측면에서는 생사에 관한 결정을 기계에 위임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인간존엄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 법적 측면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표적성여부, 전투원에서 비전투원으로서의 신분 변화, 직접적 참여 여부 등이 매우 빠르게 변화될 수 있어, 기계가 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ICRC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AWS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기타 AWS 운용과 관련한 위험요소
 - AWS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격 계획 당시 유리했던 정보·전제들이 작전 전개 동안 상황 변화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고, 운용지역이 광범위해지고 AWS 체계가 다수의 타격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의 감독·개입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복잡하고 혼잡한 도심지역에서는 민간인·비전투원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데 AWS가 이런

조건에서 운용될 경우 구별 및 예방의 원칙의 이행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일부 AWS 운용체계에 마련된 제어장치 역시 미래에 약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맥락에서 AWS의 설계·운용에는 표적 유형 제한, 운용 지속시간·지리적 범위·규모 제한, 민간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의 제한, 인간-기계 상호작용 요건 등을 포함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기존 국제인도법 규칙이 AWS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들이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규칙들이 기존의 국제인도법이나 무기관련 조약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보완적 역할을 강조함
- 예측불가능한 AWS,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AWS에 대한 전면 금지와 기타 AWS는 표적, 시간, 공간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AWS에 대한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함
- AWS에 대한 국제적 규범 및 운용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국가들이 2026년까지 새 조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함

3) 의의 및 평가

□ **국제인도법 적용의 명확화와 새로운 규범 제정의 필요성 제기**

- 보고서는 AWS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AWS가 새로이 제기하는 인도주의적·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존 국제인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여 새로운 구속력 있는 규범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음

□ **생사 결정에 있어 인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

- 기계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킨다는 근본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데 의의가 있음

□ **금지과 규제라는 규범적 틀을 제시하여 AWS와 관련한 규범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예측 불가능한 AWS 금지와 인간 표적 사용 금지, 금지되지 않은 AWS에 대해서는

표적 유형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라는 틀을 제시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도출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AWS 개발 및 배치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고서의 권고안 실행에 난관이 예상되나, 보고서 내용은 신기술과 미래의 무기 사용 관행이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Obligations of Israel in relation to the Presence and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ird States in and in relation to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dvisory Opinion [2025.10.22.]¹²²⁾

1) 개요

-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가자지구 봉쇄로 인해 구호품 및 필수 물품의 반입이 극도로 제한되며 대규모 기아 및 인도적 재앙 우려가 제기됨

- 2024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결의 A/RES/79/232를¹²³⁾ 채택하여 다음 질문에 대해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음
 - 점령국(Occupying Power)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외에서 유엔(그 산하 기구 포함), 기타 국제기구 및 제3국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 특히 팔레스타인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긴급 물자 공급과 기본 서비스,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원조를 방해받지 않고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촉진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 이 요청은 유엔 헌장 제96조 및 ICJ 규정 제65조에 따른 것으로, 총회가 긴급성과 우선성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음

122) Obligations of Israel in relation to the Presence and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ird States in and in relation to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123) UN Doc. A/RES/79/232(2024.12.19.),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obligations of Israel in relation to the presence and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ird States.

2) 주요 내용

□ 2025년 10월 22일 ICJ가 발표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점령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대해 적시하였음

- 점령국으로서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됨
 -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주민이 식량, 물, 의복, 침구, 주거, 연료, 의료용품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가자지구에서와 같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주민들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한, 유엔 및 그 산하 기관(특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¹²⁴⁾, 기타 국제기구 및 제3국이 제공하는 구호를 포함하여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주민들을 위한 구호 계획을 수락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촉진하며, 그러한 구호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강제 이주 및 추방 금지를 존중할 것
 - 점령국은 일반적인 보안 이유를 내세워 점령지 내 모든 인도적 활동을 중단할 권리가 없음

□ 민간인에 대한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음

□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존중

-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주권적 통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함

3) 의의 및 평가

□ 점령국 의무의 재확인 및 구체화

- 국제인도법이 점령 상황에도 전적으로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점령국 이스라엘이 점령지 내 민간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화한 데 의의가 있음
- 점령국은 점령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관리 및 질서를

124)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ICJ는 권고적 의견에서 UNRWA가 가자지구에서 “생명구호 활동의 중심축(backbone)” 역할을 해 왔다고 보고, 이스라엘이 해당 기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거나 방해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경우 모든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함

□ 국제기구 및 제3국 주둔 활동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함

- 이스라엘이 유엔 기구,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구호 단체 및 제3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 유엔 회원국인 제3국이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 적시

-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1조를 강조하여 제3국이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기여하거나 원조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시함

Ⅲ. 최근 국제인도법 동향 분석 및 평가

-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무력 충돌의 영향을 제한하고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무력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즉,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 당사자들 간에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짐

- 국제인도법은 국제법에서 성문화가 일찍부터 그리고 폭넓게 진행된 분야로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칙(1899년, 1907년 육전과 해전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규칙(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으로 구분됨
 - 국제인도법의 실현을 지탱하는 핵심 원칙으로는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prohibition on the infliction of unnecessary suffering) 등이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국제인도법 동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력 충돌의 양상은 급변하고 있고 국제인도법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을 넘어 내전과 비국가 무장단체가 개입하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 보편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특히 AI가 주도하는 전쟁에서 그 방법과 수단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며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국제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국제인도법 규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1. 새로운 기술 발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 군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AI), 자율무기체계(AWS/LAWS), 사이버 공격 자동화, 데이터 기반 표적 시스템 등 새로운 형태의 무력 충돌 수행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 및 국제인도법의 중요 원칙의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자율무기체계(AWS) 및 AI 기반 무기기술은 초기 활성화 이후 인간의 추가 개입 없이 하나 이상의 표적을 식별, 선택, 교전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의 저하, 인간의 직접적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 책임 귀속의 어려움 등의 특성을 나타냄
-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 인도법적 쟁점
 - 구별(distinction)의 원칙과 관련하여 인간이 민간인과 전투원을 현장에서 구별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AWS가 그 판단을 자동화하면 민간인 피해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비례(proportionality) 및 예방의 원칙(precaution)과 관련하여 공격을 계획·실행할 때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 대비 군사 목표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AWS의 자동화된 결정으로 이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을 높이게 됨
 - 예측가능성 및 책임 적용 면에서 AWS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인간 개입의 정도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불명확한 문제가 제기됨
 - 무기통제 및 확산의 위험이 제기되어 AWS의 배치 및 드론·로봇·AI 병합 무기체계의 상용화 가능성과 빠른 확산이 군비경쟁 및 비국가행위자의 접근 가능성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및 대응
 - 기존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
 - 기존 국제인도법은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규범이 구체적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 우려가 제기됨
 - AWS 규제를 위한 논의 방향

- CCW를 중심으로 한 AWS 논의는 2단계 접근법을 통해 국제인도법 준수가 불가능한 AWS에 대한 금지(1 Tier)와 기타 AWS에 대한 엄격한 규제(2 Tier)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ICRC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AWS와 사람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AWS에 대해 금지하며, 기타 AWS는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음
- 기술 발전 및 적용 속도에 비해 규범 형성이 정체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며 새로운 구속력 있는 규범의 필요성이 강조됨
- 디지털 전쟁 및 사이버 위협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확장
 - 디지털·사이버 전쟁의 맥락에서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체계’, ‘AI 기반 해커 활동’ 및 ‘군사 로지스틱스 자동화’ 등이 인도법 적용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인도법 원칙을 디지털·ICT 활동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기술이 단순히 물리적 무기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사이버 공간에서도 민간인 피해 및 인도적 위기에 직결됨을 보여주며,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도 이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규범체제의 확립과 구속력 있는 규범 도입의 필요성

- AWS의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단순히 기존 국제인도법 원칙의 재확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임
- 유엔과 ICRC는 현재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가 전례 없는 규범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경고하였으며, ICRC는 관련 규범 및 이행체계의 늦은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집단적 실패라고 언급하며 시급한 규범체제 확립을 촉구하고 있음
- AWS에 대해서는 특정 유형 AWS에 대한 금지와 기타 AWS에 대한 엄격한 규제제도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규제 기준에는 인간 통제 원칙과 기준 마련,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 책임 및 보고 메커니즘 등이 제시됨
- AWS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어떤 기준에서 국가·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해 구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 논의를 거쳐 제도화 되어야 함

□ 신기술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역량 강화

- 기술 선진국만이 아니라 군사력이 제한적인 중소국의 경우에도 인도법적 입장을 통해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각 지역 기구 및 인도법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지역 차원의 기술 통제, 인도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기술개발과 인도적·윤리적 고려 간의 균형 유지

-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효율성과 기술혁신 측면과 이에 대응하는 인도적·윤리적 고려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예측 시스템의 발전, 정밀타격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인 보호의 잠재적 이점이 있는 반면, AWS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민간 거주지나 인도 지원 인프라가 자동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제기됨
- 군사 기술이 일반화되면 비국가행위자나 테러 조직이 AWS를 획득할 위험 역시 커지므로 이에 대비한 기술규제·수출통제·검증 메커니즘 등이 병행되어야 함

□ 향후 논의 방향 및 전망

- 국제인도법의 기술적 적응(adaptation)은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근본 원칙(구별·비례·예방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
- 기술적 오류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술의 실제 배치 및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규범체제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됨
- 유엔총회 및 ICRC와 기타 주요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2026년까지의 구속력 있는 규범 채택이 가능할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인간책임 원칙(human accountability)이 향후 모든 AI 군사규범의 핵심 사항이 될 것이며, 기술의 효율성 보다는 인도주의적 보호를 우선시하는 윤리적 전환이 요구됨

[동향보고 참조]

2023년 6, 10, 14, 15, 16, 18

2024년 6, 11, 19

2025년 3, 19

2. 최근 분쟁 사례에서 국제인도법의 위반

- 최근 우크라이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 등에서의 무력 충돌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차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분쟁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 형태

- 민간인 피해의 구조화
 - 지역 봉쇄와 공습, 밀집 지역에서의 폭발무기 사용 패턴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특징을 보임
- 인도적 지원의 접근 차단
 - 인도적 지원 및 물자 접근이 제한되면서 식량·물·연료 등 생존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이 발생했으며, 식량의 무기화 및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음
- 민간시설 파괴 및 수자원 인프라 공격
 -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공격, 식량 생산 기반의 파괴, 수·위생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는 문제 역시 다수 발생함
-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S/2025/271은 “인도주의적 접근 차단과 민간인 살상 증가가 체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구별·비례·예방의 원칙 위반
 - 민간인 주거 구역, 난민 캠프, 학교, 병원 등이 폭격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유엔 조사위원회는 가자지구 내 다수의 공격이 ‘민간인과 민간 물체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무차별적 공격’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점령지에서의 점령국 책임 문제
 - 점령지 내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의 거부,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 및 제한은 점령국 의무 위반에 해당함
 - 가자지구의 수·위생 인프라 파괴는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프라 타격 및 접근 차단을 통해 민간인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는 양상을 띄며 이는 점령 하의 정책 및 관행으로 규정, 관련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됨
 -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장기간의 불법 점령 및 병합 정책 역시 점령국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함
 -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의 러시아 영토로의 아동의 이동 등 강제 이주 문제 역시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위반의 형태로 다수 보고됨

□ 분쟁 사례별 위반 행위 - 우크라이나 전쟁

- ECHR 사건 *Ukraine and the Netherlands v. Russia* (2025)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가 점령지 민간인 대상 공격과 고문, 시설파괴 등으로 국제인도법 및 유럽인권협약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판시함
- 2024년 유럽평의회-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침략범죄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 for the Crime of Aggression)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침략범죄에 대한 사법 공백 해소 및 책임추궁 강화 측면을 나타냄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가자지구)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South Africa v. Israel* (2024-2025) 사건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제노사이드 위험’을 인정하며 잠정적 조치를 명하였으며, 특히 인도적 접근 거부 및 민간인 기아 문제에 집중하여 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 가자지구 관련 총회 결의 A/RES/ES-10/27(2025.6.12.)은 “민간인 보호 및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를 요구하며, 모든 공격행위가 국제인도법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2024년 ICJ 권고적 의견 사건과 2024년 ICRC 팔레스타인 관련 성명에서는 점령 당국의 법적 의무, 특히 인도적 지원 허용 및 민간인 보호의무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2025년 ICJ 권고적 의견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또한 민간인에 대한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레바논 및 시리아 경계 공습(2024)

- 2024년 10월 레바논 공습은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폭발 무기 사용 및 의료 시설 공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UNHCR 및 국제난민기구는 이 공격의 국제인도법 위반을 공식 언급하였음

□ 수단 내전

- 2023년 이후 분쟁에서 수도 하르툼 등지에서 인도적 지원 인력에 대한 공격과 식량 차단 등이 조직적으로 발생하였으며, UN 및 ICRC는 이를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starvation as a method of warfare)로 규정하며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분류하였음

□ 향후 논의 방향 및 전망

- 국제인도법 위반 확대에 따른 제도적 책임 체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채택된 헤이그-류블랴나 협약 등에서 보듯이 조사, 기소를 담당할 국가 및 국제 형사 및 인권 기구들의 협력 강화가 요구됨

- 분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식수·병원 시스템 마비 사례가 증가함에도 민간인 피해의 비가시화, 책임 추적의 어려움 등이 계속됨. “8 Rules for Hackers in War”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비구속적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됨
- 이 외에도 국제인도법 실효성 이행 확보를 위한 각 지역의 이행 사례 확산, 분쟁 예방, 중재 기구 신설, 환경 파괴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 등 새로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동향보고 참조]

2023년 1, 2, 3, 17

2024년 1, 2, 3, 4, 10, 13, 14, 17, 18

2025년 1, 5, 8, 9, 11, 14, 15, 20

3. 국제인도법의 준수와 이행

-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독보적이고 강력한 도구임
 -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인도주의 행위자, 국제재판소 또는 언론이 국제인도법 준수를 언급하면 분쟁 당사자들은 군사 작전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됨
 - 특히 현재 분쟁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주체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관한 정책적 논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규칙 체계인 국제인도법이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국제인도법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규범 체계는 국제인도법 밖에 없음
-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무력 충돌 사례들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국제법의 어느 분야보다도 위반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의 보편적 준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만들어내며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음(필수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사용이 금지된 무기 사용 등 전쟁범죄)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에 대하여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자지구 내에서는 민간인 집단처벌, 식량 및 구호물자 접근 방해,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공격 등 국제인도법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근의 일련의 사례를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준수’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괴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ICRC 역시 현대 무력 충돌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 관련 국제법 규칙의 부재가 아닌 국제인도법의 미준수(non-compliance)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함

-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제법의 왜곡된 해석과 같은 국제법의 ‘정치화’ 현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인도적 재앙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발생하기 전에 존중이 구현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제인도법을 보호하고 적용하여 준수를 강제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국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1949년 제네바협약 당사국은 협약 및 제1추가협약 조항이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행과정을 감독해야 함. 특히 형법 분야에서 국제인도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1949년 제네바협약 제1협약 제49조, 제52조, 제2협약 제50조, 제53조, 제3협약 제129조, 제132조, 제4협약 제146조, 제149조, 제1추가협약 제86조 제1항)

- 이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들은 해당 행위자들의 국적과 무관하게 그들을 추적하여 자국 법정에 회부하거나 다른 관련 당사국에 인도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은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 재판소에서 또는 ICC를 통하여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음

- 국제인도법의 이행은 무력 충돌 발생 이전의 평시 단계에서부터 국제인도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평시 사전 예방조치 의무)

- 국가들은 자국 전역에 특히 군대 구성원들에게 국제인도법 규범과 규칙을 가능한 한 널리 보급할 의무가 있음(제1협약 제47조, 제2협약 제48조, 제3협약 제127조, 제4협약 제144조, 제1추가협약 제83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2추가협약 제19조)
- 이러한 의무는 전시복구, 이익보호국 제도, 국제사실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 제도 등 전쟁 중 활용되는 수단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음

- 1949년 제네바협약 또는 제1추가협약의 중대한 위반 상황에서 국가들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함(제1추가협약 제89조)
- 그리고 국제인도법 위반은 국제인권협약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사례마다 해당 조약들이 제공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인도법이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명시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나 같은 비국가 무장단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인도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와 같은 구조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제인도법이 현대 무력 충돌의 복잡한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법적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이들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모색(법률적 지원, 국제인도법 규정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국제인도법의 존중과 책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메커니즘에만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경험을 통해 확인되어 왔음. 국제인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 국제인도법 국가별 이행보고서 발간과 공개 등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제인도법의 이행은 분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 즉, 국가, 조직, 개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음
 - 특히 국제인도법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책임과 조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2024년 9월 ICRC는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음
 - ICRC와 브라질, 중국, 프랑스, 요르단,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on IHL)를 출범시켰음
 - 최근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올해 상반기 4번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4월-6월까지의 처음으로 협의 라운드가 진행되는 등 모든 지역과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없이 국제인도법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음. 또한 10월 말-12월 초까지는 두 번째 협의 라운드가 개최될 예정임
 - 그리고 올해 10월 발간된 진행 보고서에서는 전쟁 규칙에 대한 재검토, 국제인도법 준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강력한 국가책임 메커니즘의 구축, 평화협정에 국제인도법 규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국내에서 국제인도법 우선정책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9년 제33차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 회의 결의 제1호를 통해 채택된 “국제인도법의 국내 정책: 국제인도법의 국가적 이행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국가들의 상황을 확인 및 권고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인도법의 국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하고 있음
 - 2023년 7월 공개된 ‘국내법 및 정책을 통한 국제인도법의 국내화’에서는 국제인도법 관련 국가위원회의 실천 사례와 국제인도법 이행에 관한 각국의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국제인도법의 국내화를 위해서는 입법·행정 등 실질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국내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내용과 동향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처럼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5년 5월 30일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분쟁의 자발적 조정을 위한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IOMed)의 향후 동향과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ICRC는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거나, 무력 충돌과 폭력 속 인도주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재기구가 필요하며,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중재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국제중재를 위한 새로운 공식 플랫폼인 IOMed는 기존 글로벌 체계를 보완하며 평화적 분쟁

- 해결과 더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론 IOMed의 역할이 주로 정치적·상업적 분쟁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인도법과 관련 있는 무력 충돌 및 국제분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중재를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IOMed의 절차는 평화 협상에서 국제인도법 존중이 핵심이 되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국제적 메커니즘을 보완하면서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동향보고 참조]

2023년 8

2024년 15

2025년 2, 6, 12, 16

4. ICRC 등 국제기구의 역할

-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주권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딪히며 국제인도법 준수 문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ICRC, ICC, UN, ICJ 등 관련 국제기구들은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감시, 처벌, 해석과 권고 등 각 단계별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 ICRC의 역할

- ICRC는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립적·공평적·독립적 인도주의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포로, 부상자, 구금자 면회, 가족 재결합, 구호물자 제공 등 분쟁의 최전선에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구호 활동을 지휘·조정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ICRC는 국제인도법의 수호자 및 감시자로서 국제인도법 실효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인도법 원칙을 국제사회에 널리 보급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국제인도법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법적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분쟁 당사국 정부 및 비국가 무장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인도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함
- 그러나 ICRC의 인도적 지원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특히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 중 하나임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는 단순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분쟁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국제인도법이 명시하는 인도주의 활동과 구호물자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인도적 지원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임

2) ICC의 역할

-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핵심 범죄를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여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실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ICC의 체포영장 청구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과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의 경향을 잘 반영한 것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ICC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실제 체포 가능성은 낮음. 몽골의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및 협력 여부에 ICC의 실효성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처벌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불처벌’(impunity)을 종식시키고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유도하여

국제인도법 실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CC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3) UN 과 ICJ 의 역할

- 유엔은 회원국들이 국제인도법을 채택·이행하도록 권장하고, 분쟁과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법 위반 사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는 ICC에 국제인도법 위반 사건을 직접 회부할 수 있고 각국의 인도적 행동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결의 또한 채택할 수 있음
 -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유엔은 국제인도법의 정치적·제도적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인 ICJ에 2023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제소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월 ICJ가 잠정 조치를 명령한 사건도 국제인도법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ICJ는 제노사이드를 대세적 의무(*erga omnes*)로 판단하였고 제노사이드 협약의 모든 당사국, 특히 분쟁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제소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국가의 제노사이드 행위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제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
 - ICJ는 이스라엘에 3번의 잠정 조치를 내렸는데, 2차 잠정 조치에서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심화에 맞추어 기아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위기를 인정하고 식량과 필수품의 방해없는 대규모 공급을 즉각 보장할 것을 명령하였고, 3차 잠정 조치에서는 국가안보보다 인도적 위기를 우선시하며 군사 작전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음. 잠정 조치의 유연성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ICC와 ICJ, 지역인권재판소 등의 최근 판결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법시스템의 규범적 권위는 강화되고 있음
 - ICC와 ICJ의 역할은 법의 집행을 넘어 국제사회가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또한 2025년 7월 ECHR은 개인 및 개별 행위의 인권협약 위반 문제가 아닌 러시아의 실효적 통제가 행해지는 점령지역에서 러시아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며 유럽인권협약 위반 및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군대와 정부의 체계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국제형사법에서 인정하는 국제범죄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한 것이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하여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연계된 조직의 구성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2025년 네덜란드 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핵심 범죄를 국내법원에서 기소하고 처벌하여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종식시키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실제 집행력 문제에서는 여전히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이상과 실현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동향보고 참조]

2023년 1, 2, 3, 4, 5, 7, 11, 12, 17

2024년 1, 2, 3, 4, 5, 7, 8, 9, 10, 13, 14, 16, 17, 18

2025년 1, 4, 5, 8, 9, 10, 11, 14, 15, 17, 18, 20

IV. 결론

최근 3년간 국제사회는 130건 이상의 무력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동반하는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및 자율무기체계(AW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그 수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력 충돌 확산으로 기존 규범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의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제인도법 준수와 실효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대응 외에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임

□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문제

3년간의 국제인도법의 동향을 분석한 동 보고서에서는 먼저 새로운 무기의 출현과 국제인도법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최근 군사기술(드론, AWS, 사이버 공격 등) 및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국제인도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인간의 추가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AWS의 사용은 국제인도법의 중요 원칙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및 책임 귀속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기계로 이전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경계선’으로 간주되며, 무력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Meaningful Human Control, MHC)’의 유지가 필수적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논의는 비구속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음. 향후 ‘의미 있는 인간 통제’ 개념의 실질화 논의가 계속되어 AI, LAWS에 대한 구조적인 통제 메커니즘 마련과 MHC 원칙과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는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유엔 사무총장과 ICRC 총재의 성명과 같이 논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채택 논의가 2026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정제되어 있는 CCW 정부전문가그룹 차원의 논의도 ICRC가 2025년에 제시한 AWS 규율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함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인도법 규범 강화 및 확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ICRC가 발표한 ‘전쟁 중 민간 해커를 위한 8가지 규칙 및 국가의 의무’ 내용 등이 권고적 차원을 넘어 국가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비국가행위자 등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여 구체적 국제인도법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임

새로운 무기의 출현과 관련한 국제인도법 논의는 국제사회가 기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체계를 유연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범 형성과정에서 ICRC, 유엔, 기타 정책 입안자와 기술기업 등 다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포럼의 강화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국제분쟁에서 나타난 국제인도법 위반의 양상과 문제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수단 분쟁 등 기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충돌 양상은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준수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 사용 등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거부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분쟁지역에서 아사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인도주의 인력에 대한 고의적 살해 행위, 정보전을 통한 인도주의 인력의 활동 방해 등의 행위는 새로이 추가되거나 증가된 유형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적 조치명령과 2건의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엔 헌장의 근본 원칙 침해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하고 중대한 유럽인권협약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무력 충돌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성 무기사용, 기아를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특히 이를 조직적, 구조적 공격으로 실행한 데 대한 전쟁범죄 기소 등 책임추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근의 ICC 또는 특별재판소를 통한 기소 가능성 강화, 류블랴나-헤이그 협약 채택 등을 통한 국가들의 사법공조 강화, 국내 법원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적용을 통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처벌 등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예라 할 것임.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협약 채택 단계에서 나아가 향후 실질적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함

□ 국제인도법의 준수와 이행 강조를 위한 노력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장 독보적이고 강력한 수단임에도 상술한 무력 충돌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법의 다른 분야에 비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사례들을 통해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및 분쟁 당사자들의 준수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무력 충돌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문제가 국제인도법의 미준수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국제법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국제법의 정치화 현상은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관대하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무력 충돌로 인한 인도적 재앙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이전에 국제인도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지금보다 강조되어야 함. 국제인도법의 존중과 책임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으므로,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적용하며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개별 국가가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2024년 9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중국, 프랑스 등 6개국이 참여하여 결성한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모든 지역과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없이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국제인도법 준수와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내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한 각국의 국제인도법 국내화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국제인도법 국가별 이행보고서’임. 우리나라가 이 주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에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가별 이행보고서 등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 역시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ICRC 등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

국제인도법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인도법의 적용과 감시, 처벌, 해석과 권고 등 각 단계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ICRC는 국제인도법의 수호자이자 감시자로서 무력 충돌 현장에서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국제인도법 실효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주의 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공격이 빈번하게 가해지고 있고, 인도적 접근 자체가 전쟁무기로 활용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분쟁 당사자들이 인도적 접근의 차단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주의 활동

보호와 구호물자 보호라는 국제인도법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임.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가자지구에 내린 일련의 잠정조치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국제인도법 실효성을 강화하는 사법적 메커니즘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최근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체포하여 ICC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법의 지배 원칙과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지금처럼 ICC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면 국제인도법 준수를 좀 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엔은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진하고 이행을 감독하는 틀을 제공하여 인도적 지원과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음.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단 사태처럼 ICC에 국제인도법 위반 사건을 직접 회부할 수 있고, 총회와 안보리는 각국의 인도적 행동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결의 또한 채택할 수 있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총회 결의, 수단에 대한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결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안보리 결의 등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광범위한 틀 안에서 유엔은 국제인도법의 정치적 제도적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분쟁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제노사이드를 대세적 의무라고 판단하고 국가안보보다 인도적 위기를 강조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ICC와는 다르게 국제인도법의 규범적 권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밖에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하여 네덜란드 재판소에서 시리아인을 기소하고 처벌한 예나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한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국제인도법의 집행을 넘어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미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이와 같이 최근 3년간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보면 단순히 국제인도법 규범 준수라는 필요성 강조에서 더 나아가 현대 분쟁의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국제인도법 주요 원칙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행방안 강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국제사회는 국제인도법의 준수에 대한 국가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분쟁 주체들의 국제인도법 미준수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임

부록

□ 국제인도법이란?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는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혹은 전쟁법(Law of War)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제공법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ICRC가 말하는 무력 충돌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 충돌로부터 직접 야기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 희생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무력 충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국제조약 혹은 관습법을 말함

□ 국제인도법의 기원과 발전(제네바법과 헤이그법)

국제인도법 초기에는 관습에 기초한 불문법(不文法)이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적용되었으며, 무력 충돌 당사국 사이의 양자조약 형태나, 교전 종료 후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오직 하나의 전쟁 또는 특수한 무력 충돌에만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였음

이후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law of Geneva)과 헤이그법(law of the Hague)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음. 제네바법은 전투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전투원 및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자(특히 민간인)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며, 헤이그법은 무력충돌 행위에 있어서 교전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해적(害敵) 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제네바법은 앙리 뒤낭이 1862년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을 통해 전쟁 희생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호단체 설립과, 이 단체의 전시 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뒤낭을 비롯한 5인 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협약 초안이 작성되어 1864년 8월 22일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최초로 채택되었음. 이후 제네바법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1949년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협약과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 2005년 추가의정서까지 발전하였음

헤이그법은 전쟁수단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폭발성 발사체의 사용 금지를 최초로 합의한 186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을 시초로 1899년과 1907년 만국평화회의를 통해 확립, 발전하게 됨. 1899년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부속서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었으며 1907년에는 14개 관련 협약 및 선언이 채택되었고, 특히 제4협약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과 제5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이 국제인도법의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헤이그협약 전문은 ‘보다 완비된 전쟁법전이 제정되기까지는, 체약국들은 그들이 채택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간인과 전투원이 국가 간에 수립된 관습,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심의 요구로부터 유래하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지배하에 있음을 선언함이 타당하다’는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관습법 원칙으로 간주되며 이후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개정서(1977년) 제1조 제2항에서 구체화 되었음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 및 추가개정서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전시내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개정서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추가개정서 (1977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3추가개정서 (2005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추가적인 식별 표장의 채택에 관한 의정서

1899년, 1907년 헤이그협약 주요 목록	
1899년 헤이그 제2협약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
1907년 제1호 협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
1907년 제2호 협약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약
1907년 제3호 협약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조약
1907년 제4호 협약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
1907년 제5호 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
1907년 제6호 협약	개전시 적상선의 취급에 관한 협약
1907년 제7호 협약 (이하 생략)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일에 관한 협약

□ 기타 국제인도법을 이루는 주요 조약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 채택 이후 국제인도법은 새로운 형태의 무력 충돌과 신무기 개발에 따른 희생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어 왔음

국제인도법 관련 주요 조약(연도별)	
1864년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1868년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성 페테르부르크 선언
1899년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 1864년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한 헤이그협약
1907년	1899년 헤이그협약 개정 및 신협약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1954년	무력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의정서
1972년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BWC)
1977년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1980년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WC)
1993년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 및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 및 이전 금지와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 (오타와 협약)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9년	1954년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 협약에 관한 의정서
2000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5년	1949년 제네바협약 제3추가의정서

□ 관습 국제인도법

조약 당사국들만을 구속하는 조약(예: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기타)과 달리 관습 국제인도법의 규칙들은 모든 국가를 구속하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특히 관습 국제인도법은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도 광범위한

규칙 적용을 가능하게 함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많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들은 관습 국제인도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ICRC가 2005년 발표한 관습 국제인도법(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연구는 조약법의 공백을 메우고, 특히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이 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분석하여 161개의 관습법 규칙을 식별했으며, 이 규칙들은 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구속하는 국제법의 공통 핵심을 구성함

□ 국제인도법의 보호 체계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무력 충돌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 나누어 적용, 보호 체계를 제공함

○ 국제적 무력 충돌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제네바 4개 협약과 제1추가협정이 적용됨. 이는 충돌 당사국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무력 충돌에 가담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모든 개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개인들을 보호함

- 육전 및 해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의무요원
- 전쟁포로
- 민간인(난민, 점령지역의 민간인, 민간인 억류자, 의무요원, 종교요원 등)

○ 비국제적 무력 충돌

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제네바 4개 협약에 공통되는 제3조¹²⁵⁾ 및 제2추가협정이 적용됨.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는 무력 충돌에 가담하는 군대가 정규군이거나 비정규군이거나 관계없이 이들 군대에 적용되며,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없는 모든 개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개인들을 보호함

- 부상자 또는 병자인 전투원

125) 제네바협약(공통) 제3조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 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성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무력충돌의 결과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 민간인(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포함)

□ 국제인도법의 중요 원칙

국제인도법 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된 국제인도법의 중요 원칙으로는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음

○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

무력 충돌 당사자들은 전투원과 민간인, 그리고 군사 목표와 민간 물자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오직 전투원과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48조>

제48조 기본규칙

민간 주민과 민간 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돌 당사국은 항상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 물자와 군사 목표물을 구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군사 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한다.

- 교전자 및 전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1, 2조 및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4조, 제1추가의정서 제44조 3항 등에서 규율하고 있음
- 군대, 정규군(armies)만이 아니라 민병대, 임시적 게릴라, 조직된 저항 단체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투원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헤이그 육전 규칙 제1조 >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됨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시를 가질 것
3.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

-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병원, 주택, 문화재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금지됨
-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민간인, 부상자나 병자인 전투원, 포로 등)은 보호받아야 함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1조 민간 주민의 보호

1. 민간 주민 및 민간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2.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 무차별공격이라 함은,
 - 가.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 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또는,

다.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52조 민간물자의 일반적 보호

1. 민간물자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물자라함은 제2항에 정의한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2.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헤이그 육전규칙 제25조>

제25조 방어되지 않은 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포격은 금지된다.

○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비례의 원칙은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때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해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에 초래할 피해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이는 공격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공격은 금지됨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51조>

5. 그 중에서도 다음 유형의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나.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necessary Suffering)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은 공격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헤이그협약의 근본적 원칙으로, 전쟁의 적법한 목적(적의 격파, 무력화 또는 항복 유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인 무력의 사용만을 허용하며, 불필요한 고통이나 과도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투 수단 및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원칙임

< 헤이그 육전규칙 제23조 >

제23조 특별한 협약으로써 규정한 금지 이외에도 다음 사항은 특히 금지된다.
(e)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발사물, 기타 물질의 사용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35조>

제35조 기본규칙

2.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이 원칙은 무력 충돌 당사자가 목적(적의 항복 또는 군사력 무력화)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공격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임. 그러나 이 원칙은 반드시 인도주의적 고려와 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며 행사 과정에서 구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함

<헤이그 육전규칙 제22조>

교전 당사자는 적을 해(害)할 수단의 선택에 관한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52조>

2.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 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 목표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 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 예방의 원칙(Principle of Precaution)

예방의 원칙은 적대 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민간인의 생명, 부상, 민간 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57조>

제57조 공격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1. 군사 작전 수행에 있어 민간 주민, 민간인 및 민간 물자가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보호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2. 공격에 관하여 다음의 예방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가.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들은,

(2)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및 민간 물자에 대한 손상을 피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 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과도한 모든 공격의 개시를 결정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공격을 계획, 결정, 실행하는 측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 민간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사전 경고를 발령해야 하며, 공격 후에도 민간인 피해가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격을 취소, 중단해야 함

□ 국제인도법의 보호 대상 -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보호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보호를 받음. 포로, 억류된 민간인, 부상병 등은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4조, 제5조>

제4조

1. 본 협약에서 포로라 함은 다음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를 말한다.
 - 가.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중략)
 - 바.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 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 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 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본 협약은 제4조에 말한 자에 대하여 이들이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최종적인 석방과 송환 때까지 적용된다. 교전 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빠진 자가 제4조에 열거한 부류의 1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관할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본 협약의 보호를 향유한다.

- 포로는 교전자 또는 전투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를 말하며, 포로의 대우에 관해서는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서 규율하고 있음. 포로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신분이 관할 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제3협약이 적용됨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금지 및 민간인 기아의 전쟁수단으로의 사용 금지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년) 제54조>

제54조 민간 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1. 전투방법으로서 민간인의 기아작전은 금지된다.
2. 민간 주민 또는 적대국에 대하여 식료품·식료품생산을 위한 농경지역·농작물·가축·음료수 시설과 그 공급 및 관개시설과 같은 민간 주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물건들의 생계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을 공격·파괴·이동 또는 무용화하는 것은 그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즉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거나 그들을 퇴거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여하한 동기에서이든 불문하고 금지된다.

군사 점령 하의 민간인 보호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제46조>

제43조 정당한 권력이 사실상 점령군에게 이관되면 점령군은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 법을 존중하며, 가능한 한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내에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하여 본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5조 점령지의 주민을 강제하여 그 적국에 대하여 충성의 선서를 행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6조 가문의 명예 및 권리, 개인의 생명 및 사유재산과 종교적 신념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몰수될 수 없다.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27조-제34조>

제27조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제 권리,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및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32조

체약국은 그 권력하에 두고 있는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조치를 취함을 금지할 것에 특히 동의한다.(이하 생략)

제33조

피보호자는 그 자신이 행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단체별 및 모든 협박 또는 공갈에 의한 조치는 금지된다.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47조>

제47조

점령지역에 있는 피보호자들은 여한한 경우 및 여한한 방법으로도 점령의 결과로 동 지역의 제도 또는 정치상에 초래되는 모든 변화, 점령지역 당국과 점령국간에 체결되는 모든 협정 또는 점령국에 의한 점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제 혜택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49조>

제49조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 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그러나,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철거는 물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의 경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